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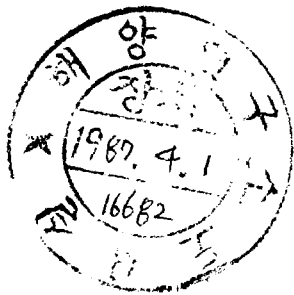
BSPE 00104 - 154 - 6

第 3 次 유엔해양法會議에서의 開發途上國의
立場에 관한 研究

— 新國際經濟秩序와 排他的 經濟水域을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Position of the Developing Countries on the EEZ
under the New International Ocean Regime

1987. 2.



提 出 文

海洋研究所長 貴下

本 報告書を “第3次 유엔 海洋法會議에서의 開發途上國의 立場에
관한 研究”의 最終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87年 2月

韓國科學技術院 海洋研究所

研究責任者：權 文 相

要 約 文

本 研究는 第 2 次 世界大戰 이후 國際社會에 새로운 主役으로 등장하게된 開發途上國들의 經濟的 欲求가 어떠한 過程을 거쳐 國際經濟關係의 形成에 반영되었으며 또, 이러한 開發國의 要求가 地球表面積의 71%를 차지하는 海洋과 그 資源에 대하여는 어떠한 形態로 具現되었는가를 살펴 보았다.

第 1 章에서는 本 研究의 目的, 方法 및 範圍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第 2 章에서는 新國際經濟秩序의 沿革과 主要內容을 유엔의 關聯決議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고, 또 1982년 새로이 채택된 유엔 海洋法協約의 基本理念과 同協約에 반영된 新國際經濟秩序의 理念을 고찰하였다.

第 3 章에서는 排他的 經濟水域의 概念과 成立過程을 검토하고 同制度의 主要規定을 분석함으로써 新國際經濟秩序의 理念이 어떻게 투영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또 各國의 排他的 經濟水域制度和 海洋法協約上의 主要內容을 比較分析하였고, 附錄으로서 新國際經濟秩序에 대한 主要한 國際的 宣言이나 유엔決議를 첨부하였다.

第 4 章에서는 새로운 國際海洋秩序는 國際社會의 構造變遷과 新國際經濟秩序의 要求와 一聯의 연계성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되며, 특히 排他的 經濟水域制度는 北側인 先進國에 대한 抗議概念에서 유래된 南側인 開發國의 海洋管轄權確保와 海洋資源에 대한 主權의 確認節次로서 커다란 意義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排他的 經濟水域制度의 채택으로 만드시, 開發國側이 利益을 增加시켰다고 볼 수는 없으며 開發國側의 目的을 성취키 위해

서는 管轄海域에 대한 管理·開發에 노력하고 技術移轉 등의 분야에서 國際協力을 增進하여야 한다고 結論지었다.

또, 우리나라로서는 半閉鎖海에 隣接한 地理的 不利國인 開途國으로서 海洋法協約의 關聯規定과 新國際經濟秩序의 理念에 입각하여 周邊海洋에 대한 200 海里時代의 도래에 대비하고 正當한 權利를 주장하여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SUMMARY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identify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development of a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NIEO) and the new law of the sea and to examine how the economic needs of developing nations have influenced on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Chapter I includes the objectives and scopes of the study.

Chapter II relates to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major substances of a NIEO, centering on its legal aspects. Chapter II also delineates basic concept of UNCLOS, especially concerning the exclusive economic zone (EEZ).

Chapter III reviews how a NIEO has been reflected in the formation of the EEZ by analyzing provisions set forth in the UNCLOS.

Chapter IV shows the conclusion of the study; a new international marine order, especially establishment of the EEZ is linked with changing structure of international society and with needs of a NIEO.

Further to say, one of plausible means for developing countries to obtain real benefits is to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induce developed countries' capital and technology, considering that the developing countries did not realize any gains such as fishing charges, economic supports from the developed countries which they intended to merely by establishing the EEZ in their adjacent seas.



目 次

表目次

그림目次

第 1 章 序 論	1
1. 研究의 目的	3
2. 研究의 方法 및 範圍	4
第 2 章 新國際經濟秩序와 유엔 海洋法協約	5
第 1 節 新國際經濟秩序의 概念	7
第 2 節 新國際經濟秩序와 第 3 次 유엔 海洋法會議	16
第 3 章 排他的 經濟水域과 新國際經濟秩序	31
第 1 節 排他的 經濟水域의 概念	33
第 2 節 排他的 經濟水域制度의 規定分析	43
第 3 節 各國의 排他的 經濟水域制度 比較分析	73
第 4 章 結 論	83
參 考 文 獻	93
附 錄	101
1. 아시아·아프리카會議 最終聲明書	103
2. 유엔 貿易開發會議 最終議定書	115
3. 新國際經濟秩序 樹立에 관한 宣言	151

4 . 新國際經濟秩序 樹立에 관한 行動綱領	157
5 . 國家의 經濟的 權利 · 義務憲章	181
6 . Summary of Ocean Claims of the World's Nations	195

CONTENTS

Chapter I. Introduction	1
Section 1. Objective	3
Section 2. Methods and Scope	4
Chapter II. The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and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5
Section 1. Concepts of the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7
Section 2. The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and the Third UNCTAD	16
Chapter III. Exclusive Economic Zone and the New Inter- national Economic Order	31
Section 1. Concepts of Exclusive Economic Zone	33
Section 2. Review on the Provisions of Exclusive Economic Zone	43
Section 3. Practices of Exclusive Economic Zone in Major States	73
Chapter IV. Conclusions	83
Bibliography	93
Annexes	101
1. Final Declaration of Afro-Asian Conference	103
2. Final Act of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Geneva 1964)	115

3.	Declar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151
4.	Programme of Ac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157
5.	Charter of Economic Rights and Duties of States	181
6.	Summary of Ocean Claims of the World's Nations	195

表 目 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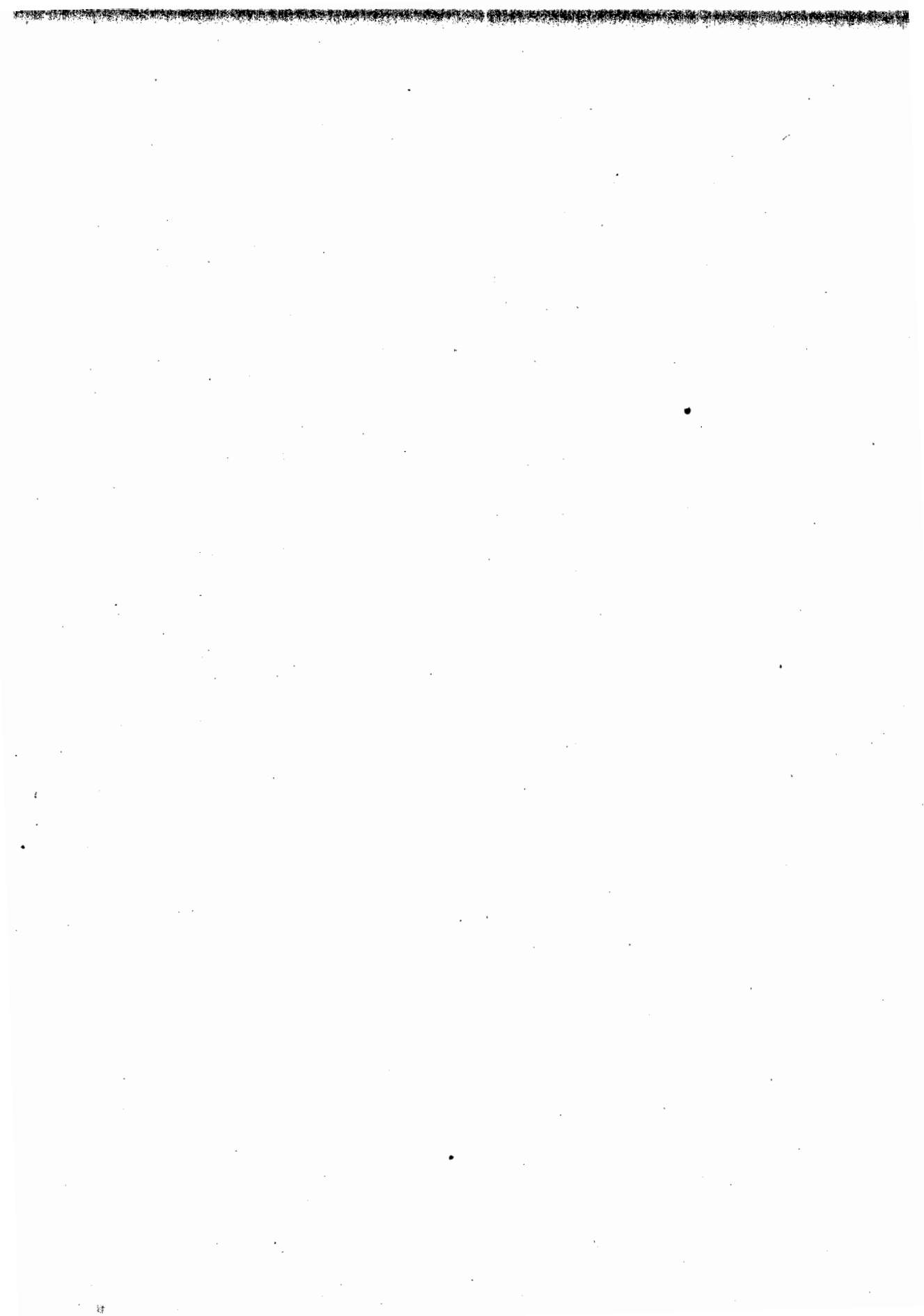
〈表 - 1〉	年代別 EEZ 宣布動向	37
〈表 - 2〉	國家別 EEZ 面積 順位	42
〈表 - 3〉	200 海理 海洋管轄權 宣布動向	43
〈表 - 4〉	EEZ 에 대한 海洋法協約과 各國立法例 比較	75

그림 目 次

(그림 - 1)	年代別 EEZ 宣布國 推移	36
(그림 - 2)	200 海里水域 및 大陸邊界圖.....	41

第 1 章

序 論



1. 研究의 目的

1960年代 40여개 國家들이 植民地에서 獨立하면서 부터 國際社會는 東西의 對立에 추가하여 第三世界 또는 開發途上國이라는 새로운 勢力이 형성되었다.

오늘날 이들은 160여개 國家中 2/3를 넘는 壓倒的 多數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政治的 獨立 뿐만 아니라 經濟的 獨立도 주장하면서 國內資源에 대한 管轄權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 經濟開發에 全力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의 要請에 따라 資源 및 經濟開發問題를 협의하기 위하여 1974년 4월 9일부터 同年 5월 2일까지 第6次 유엔特別總會가 開催되었다.

이 會議에서 開發國들의 主張에 따라 이른바 新國際經濟秩序의 樹立에 관한 宣言과 그 行動綱領을 採擇하였다.

이 宣言에 따르면 새로운 經濟秩序란 各國의 經濟·社會體制와는 관계없이 國家間的 衡平, 主權平等, 相互依存的 共同利益 및 協力을 바탕으로 現存의 不平等과 不義를 시정하고 先進國과 開發國間에 深化되고 있는 格差를 해소함으로써 現在 및 將來 世代를 위한 經濟社會發展을 건실하게 촉진시키려는 經濟秩序이다.

그러므로 이 宣言의 本質的 意味는 開發國의 經濟的 獨立을 確立하고 先進國과 開發國間的 格差를 줄여가며 均衡있는 世界經濟發展을 추구하는데 있는 것이다.

이러한 新國際經濟秩序(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NIEO)의 理念은 1973년부터 開催된 第3次 유엔海洋法會議의 開催와 討

議過程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새로운 國際海洋秩序의 形成을 초래하였다. 즉, NIEO에 思想的 근거를 둔 開途國들이 중심이 되어 주장된 深海底에 대한 人類共同遺産概念은 人類歷史上 最初로 國際機構를 통한 共同開發과 利益分配라는 深海低開發制度를 설립하였으며, 마찬가지로 NIEO의 주요내용인 天然資源에 대한 永久的 主權宣言은 資源民族主義와 결합하여 海洋에 있어서 海域自體는 물론 그 資源에 대한 管轄權을 擴大·強化케 하였고 급기야는 200海里 排他的 經濟水域(Exclusive Economic Zone; EEZ)이라는 制度를 設立케 하였던 것이다.

이에 國際政治的으로는 開途國이면서, 漁業, 海運 등의 分野에서는 先進隊列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位置鼎立과 對應策의 檢討에 本研究의 目的이 있다.

2. 研究의 方法 및 範圍

本 研究는 國際經濟學的 또는 國際政治學的 概念인 NIEO의 法的 概念을 海洋法協約상의 人類共同遺産概念과 연계시켜 분석하고, 第3次 유엔海洋法會議에서의 討議過程을 검토함으로써 NIEO의 理念이 EEZ 制度에 어떻게 투영되었는 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本 研究에서는 NIEO의 概念과 內容 EEZ 制度의 成立背景과 各國의 立法例, 그리고 EEZ 制度에 관한 유엔海洋法協約의 主要規定을 各條項別로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國際海洋秩序의 形成過程을 살펴보았다.

第 2 章

新國際經濟秩序와 유엔海洋法協約

第 1 節 新國際經濟秩序의 概念

1. 新國際經濟秩序의 沿革

제 2 차 世界大戰以後 新生獨立國들을 중심으로 1950 년대까지의 反植民·政治的 獨立에 대한 鬪爭과 1960 년대의 非同盟運動을 거쳐 1970 년대 이후 經濟的 自立을 표방하는 新國際經濟秩序 樹立에 대한 요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NIEO의 요구는 海洋 및 海洋資源에 대한 國家管轄權 行使와 開發의 領域에도 예외없이 밀어 닦였으며, 1973 년부터 개최된 제 3 차 유엔 海洋法會議에서 「人類共同遺產」(Common Heritage of Mankind) 概念과 함께 새로운 國際海洋秩序를 수립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NIEO를 둘러싼 근래의 활발한 논의는 開發途上國家들이 國際經濟秩序의 構造的 改革을 주창하고 나온데서 비롯된 것이다. 제 2 차 世界大戰後 敗戰한 樞軸國(獨, 伊, 日)의 植民地였던 韓國, 이디오피아 그리고 2 차大戰 발발에 앞서 獨立이 약속된 印度,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의 몇 나라를 제외한 많은 植民地들은 獨立을 위한 思想的·軍事的 鬪爭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물론 中南美諸國은 2 次大戰 前에 政治的 獨立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라틴유럽 여러 나라들과의 資本主義的 유대관계가 매우 밀착된 상태였으며 世界經濟의 무대에서 독자적인 사고와 행동을 시작할 처지는 못되었다.¹⁾

그러므로 제 2 차大戰이 종료된 후에도 제 3 세계는 여러모로 獨自的 群象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東南亞 및 아프

리카의 일부지역은 이른바 新植民主主義의 陷穽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이집트 등 몇몇 아랍國家들은 王朝體制下에 있었으며, 또한 韓半島地域은 美·蘇 冷戰의 激戰地下에 놓여 있어서 獨立國으로서 浮上이 크게 지연되고 있는 상태였다.

제 2 차大戰의 종식으로 國際社會는 적어도 政治的으로는 植民地解體期에 들어 갔다. 그러나 과거의 支配國들은 前植民地地域國家의 經濟的弱點을 이용하고 投資된 資本을 조작함으로써 심한 경제적 착취를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經濟的으로 新植民主主義가 대두된 것이다.²⁾

이와 같이 開途國들은 政治的·經濟的 虛弱性으로 因하여 國際經濟關係의 管理에 發言權을 갖지 못하였는 바, 2 차大戰 이후 약 20 년간은 첫째, 小數國家들에의 勢力集中 둘째, 이러한 국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일련의 共通利益 세째, 指導的 役割을 맡을 意思와 能力을 갖춘 先進國 중심의 브레튼우즈(Bretton Woods) 체제에 의해 世界經濟는 주도되어 왔다. 그러나 先進國들이 주도해 가는 國際經濟體制는 先·後進國間의 經濟的 格差가 심화됨에 따라 國際經濟의 管理에서 소외되었던 開途國들의 NIEO 수립에 대한 강력한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다.

NIEO에 대한 論議는 여러 측면에서 성숙되어 왔는 바, 開途國에서는 가난한 국민들의 생활여건이 大衆媒體의 발달에 따른 期待增加를 따르지 못함으로써 불만이 높아지게 되었고, 이러한 불만은 종전의 國際經濟秩序를 변혁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한편 國際的인 힘의 均衡도 美國을 중심으로 하는 先進工業國들의 세력이 약화되는 반면에 77 그룹, 石油輸出國機構(OPEC) 및 기타 原資材生産國들의 입김이 강화되었다.

先進工業國 내부에서도 美國의 經濟力이 EC 諸國과 日本의 등장으로 상대적 약화를 나타냄으로써 경제의 多極化現狀을 보여주는 한편, 世界經濟가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 GATT와 브레튼우즈 체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費用은 점점증하는데 반하여 美國 以外の 他先進國들이 費用負擔을 꺼림으로써 브레튼우즈체제가 崩壞하게 되었고 主要先進諸國間의 政策不調和도 점차 심화되었다.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新生獨立國들이 과거의 經濟的 依存性을 탈피하고 經濟發展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77 그룹을 중심으로 단결하게 되었다. 이러한 각종 여건의 변화와 함께 汎世界的인 相互協力の 必要性이 증대됨으로써 NIEO의 수립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게 되었다.

가존 國際經濟秩序의 변혁에 대한 開途國들의 주장은 1955년 반등에서 開催된 아시아·아프리카會議 (Afro-Asian Conference)에서 비롯되었다. 반등會議의 정신은 그후 수차례 걸친 非同盟會議 (1961년 베오그라드, 1964년 카이로, 1970년 루사카, 1973년 알제리)에서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1964년 제1차 유엔貿易開發會議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에서 開途國들로 구성된 77 그룹이 탄생하여 國際經濟秩序의 변혁에 관한 요구를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

1961년 유엔總會에서 결정한 「유엔 1次開發戰略 10년」에서 유엔은 1961년부터 10년간 會員國들로 하여금 貧困, 飢饉, 無知, 疾病을 퇴치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1964년에는 開途國을 중심으로 UNCTAD가 창립되었고, 4년마다 總會를 갖기로 결정하였다. 제1차 UNCTAD創立總會는 1964년 제네바에서 15개의

一般原則, 13개의 特別原則, 8개의 通過貿易에 관한 原則을 채택하였는데, 13개의 特別原則에는 開途國의 工業化, 一次產品의 市場安定, 金融支援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GATT 제 4편(36조 8항)을 채택하여 開途國의 特殊事情을 반영하였다(附錄 2 參照).

1968년 제 2차 UNCTAD 總會는 뉴델리에서 GSP 制度(一般特惠關稅制度) 채택을 결정하였고, 1970년 UNCTAD 特別委員會에서 GSP 制度가 具體化되어, 1975년, 1979년 Lomé 協約³⁾에서 원용되었다.

1970년 10월 24일 유엔 總會는 1971년부터 10년간을 「유엔 2次開發戰略 10년」으로 정하면서 1차에 비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開發目標와 達成期間을 설정하였으며, 世界商品市場의 構造 및 運營改革에 역점을 두었다. 1972년 산티아고의 제 3차 UNCTAD 總會에서는 멕시코의 에체베리아 대통령이 「經濟的 權利·義務憲章」을 제안하였다.

1973년 9월에는 알제리에서 非同盟頂上會議을 열고 資源 및 開發을 위한 유엔 特別總會 召集을 요구하였으며, 여기서 최초의 公式的인 NIEO의 樹立要求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74년 4월 9일로부터 5월 2일까지 열린 제 6차 유엔 特別總會에서 「新國際經濟秩序樹立에 관한 宣言」 및 「行動綱領」을 결의하고, 1974년 12월의 29차 유엔 總會는 「國家의 經濟的 權利·義務憲章」을 채택하였다. 또, 1975년 9월 7차 유엔 特別總會는 6차 유엔 特別總會의 「行動綱領」을 再確認하고 開途國을 위한 金融支援, 技術移轉, 國際通貨改革, 開途國間의 協力 등을 決議하였다.

이밖에도 최근까지 NIEO의 樹立 및 南北問題의 改善에 관한 國際的 勞力은 계속되어 왔으나 本 研究에서는 NIEO의 沿革에

관련된 주요한 유엔決議의 내용만을 쟁을 바꾸어 살펴보기로 한다.

2. 新國際經濟秩序의 主要內容

유엔을 중심으로 한 NIEO에 대한 논의중 주요한 것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유엔決議 1710(XVI), 1961.12.19 : 제 1 차 유엔開發戰略 10년
- 유엔決議 1803(XVII), 1962.12.14 : 天然資源에 대한 永久主權宣言
- 유엔決議 2088(XX), 1965.12.20 : 開發國을 위한 技術 및 資本援助
- 유엔決議 2565(XXIV), 1969.12.13 : 國際通貨改革
- 유엔決議 2626(XXV), 1970.10.24 : 제 2 차 유엔開發戰略 10년
- 유엔決議 3016(XXVII), 1972.12.18 : 開發國의 天然資源에 대한 永久的 主權宣言
- 유엔決議 3201(S-VI), 3202(S-VI), 1974. 5. 1 : 新國際經濟秩序樹立 宣言과 그 行動綱領
- 유엔決議 3281(XXIX), 1974.12.12 : 國家의 經濟的 權利·義務憲章
- 유엔決議 3362(S-VII), 1975. 9.16 : 開發과 國際經濟協力
- 유엔決議 31/158, 1976.12.21 : 開發國의 負責問題

이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엔決議 3201인 新國際經濟秩序 樹立宣言(Declar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과 유엔決議 3202인 新國際經濟秩序樹立 行動綱領(Programme of Ac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 New Internat-

ional Economic Order) 및 유엔決議 3281인 國家의 經濟的 權利·義務憲章(Charter of Economic Rights and Duties of States) 으로서 이들을 중심으로 NIEO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新國際經濟秩序樹立宣言

NIEO의 主要內容은 NIEO 樹立宣言에서 規定하고 있는 20개 基本原則을 살펴봄으로써 파악할 수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宣言 제4항).

- 1) 主權平等, 民族自決, 武力에 의한 領土獲得의 不承認
- 2) 衡平의 原則에 입각한 國際共同體의 全構成國의 폭넓은 協力, 不平等의 일소, 全人類의 繁榮確保
- 3) 國際經濟政策決定過程에 開途國을 포함하는 모든 國家의 平等의 原則에 입각한 完全하고도 效果的인 參與
- 4) 自國에 최적의 社會經濟體制를 선택할 權利, 여하한 差別도 強要받지 않을 權利
- 5) 天然資源과 모든 經濟活動力에 관한 永久主權의 行使
- 6) 植民支配 및 人種差別下에 있는 모든 國家, 地域과 그 國民은 資源착취, 고갈, 손상에 대한 반환과 完全한 補償에 대한 請求權 保有
- 7) 多國籍企業의 規制 및 監視
- 8) 植民支配 및 人種支配로 부터의 解放과 天然資源 및 經濟活動에 대한 主權回復
- 9) 植民支配 및 人種差別下에 억압되고 있는 開途國들과 地域 및 國民에 대한 援助의 확대

- 10) 여하한 政治的, 軍事的 伏線이 없는 開途國에 대한 援助의 積極적 확대
- 11) 開途國의 開發促進과 資金流通의 원활화를 위한 國際通貨制度의 개혁
- 12) 合成代替品과의 競爭에 직면하고 있는 天然資源의 競爭力 改善
- 13) 開途國에 대한 一般的 特惠의 확대
- 14) 開途國에의 資金移轉에 대한 유리한 조건 확보
- 15) 開途國의 새로운 科學技術成果에 대한 접근과 經濟規模에 적합한 技術의 移轉 및 土着技術創造의 촉진
- 16) 食糧을 포함한 天然資源의 節約
- 17) 開途國은 모든 資源을 開發을 위하여 集中的으로 투입할 것
- 18) 開途國間의 貿易, 技術開發, 財政 및 經濟協力 등에 관한 協力強化
- 19) 國際協力の 테두리 안에서 生産者組合의 役割 促進과 開發 促進
- 20) 開途國의 불리한 交易條件의 지속적 개선과 世界經濟의 擴大

이와 같은 20개 항목의 基本原則은 첫째, 開途國이 先進國과 모든 면에서 平等, 互惠, 對等의 權利를 가지며 둘째, 國際經濟政策 決定過程에 南과 北이 平等하게 참가할 수 있는 權利가 있고 셋째, 先進國이 開途國에 대한 착취와 수탈관계를 지양하고 天然資源에 대한 開途國의 主權을 확신하여야 하며 넷째, 開途國의 經濟的

主權確立을 위하여 交易條件의 개선과 國際通貨制度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고 다섯째, 開途國의 主體的 開發戰略路線을 확립하고 國際經濟體制를 개혁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要約할 수 있다(趙淳, 韓國經濟의 現實과 進路, 서울:比峰出版社, 1981, pp.291 ~ 302).

나. 新國際經濟秩序樹立 行動綱領

新國際經濟秩序樹立宣言의 실천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택된 行動綱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開途國의 輸出增大, 開途國의 輸出入均衡改善 및 이들 國家의 輸出入商品價格의 적절한 關係유지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아울러 開途國이 필요로 하는 量의 食糧輸入을 보장할 것.
- 2) 先進諸國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이의 開途國에 대한 파급을 방지하며, 先進諸國의 인플레이션이 開途國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IMF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또한 特別引出權(SDR)의 추가배정을 통해 적절하고도 새로운 流動性을 창출할 것.
- 3) 先進國은 開途國의 工業生産計劃, 특히 輸出産業을 위한 投資를 장려할 것.
- 4) 對開途國 技術提供을 위한 國際規約을 제정하며, 또한 開途國에 적합한 固有技術의 研究개발을 위해 先進諸國은 援助를 확대할 것.
- 5) 多國籍企業이 營業을 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內政干涉을 방지하고, 開途國의 經濟計劃 및 目標을 수립할 수 있도록

當該國內에서의 多國籍企業의 활동을 規制하고 아울러 필요하다면 이미 체결된 協定을 再檢討 修正할 것.

- 6) 國家의 經濟的 權利·義務에 관한 憲章은 主權平等 및 先後進國間 利益의 상호의존에 입각한 國際經濟關係의 새로운 體制確立을 위해 效果的인 手段이 되어야 함.
- 7) 開途國은 輸出商品價格의 보호, 輸出市場의 확대 및 안정을 위한 적절한 機構의 設立내지 既存機構의 改善을 위하여 域內外에서 協力을 증진할 것.
- 8) 天然資源에 대한 完全하고도 永久的인 主權行使를 방해하는 어떠한 企圖도 분쇄하며 유엔기구는 高유화된 生産手段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開途國에 협조할 것.
- 9) 유엔總會는 본 行動綱領의 우선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방법을 검토할 것.
- 10) 經濟的 위기로 인하여 심각한 타격을 받은 開途國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總會는 긴급조치를 포함한 特別計劃을 마련할 것.

다. 國家의 經濟的 權利·義務憲章

國家의 經濟的 權利·義務憲章은 前文과 4個章의 本文 34個條로 구성되어 있는 바, NIEO 確立宣言의 主要概念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憲章은 開途國의 의존성을 제거하고 世界經濟에 平等과 均衡을 가져올 수 있도록 國際協力を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開途國의 불리한 여건제거와 先進國과 동등한 地位에서 經濟的 利益

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前提條件으로서 天然資源에 대한 開途國의 主權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이 憲章은 開途國의 天然資源에 대한 主權, 國有化, 多國籍 企業規制, 生産者組合, 國家主權의 同等性 등을 法的 側面에서 보강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각국의 領海밖에 있는 海底資源은 人類共同의 遺産으로서 平和的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모든 國家의 이익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하여 共同管理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第 2 節 新國際經濟秩序와 第 3 次 유엔 海洋法會議

1. 人類共同遺産概念

제 3 차 유엔 海洋法會議의 開催經緯를 살펴보면, 全地球表面積의 71%를 차지하는 海洋을 규율하는 새로운 國際體制 (international regime)를 형성하고자 하는 시도가 NIEO의 理念으로부터 연유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제 3 차 유엔 海洋法會議를 개최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1967년 Malta의 駐유엔 大使인 Arvid Pardo가 제 22 차 유엔 總會 연설에서 海底資源의 平和的 共同開發과 利用에 관한 提議를 하면서 深海底와 그 資源을 「人類의 共同遺産」으로 규정할 것을 주창한데서 비롯된다.⁴⁾

그리고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제 2 차 大戰 이후의 國際社會의 構造的 變化와 資源民族主義의 대두 및 南北間의 經濟問題에서 유래된 NIEO의 理念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NIEO의 理念이 海洋 및 海洋資源에 관한 國際法秩序에 투영되는 것은 必然的인 것으로, 陸上資源의 有限性과 科學技術의 급진적 발달은 人類에게 海洋 및 海洋資源에 대한 새로운 認識을 부여하는 동시에, 海洋活動에 관한 規制를 海洋自由論을 포함하는 先進國들의 意思에만 맡길 수 없다는 開途國들의 意志와 團結을 굳게 하였던 것이다.

人類의 共同遺産概念은 제 3차 유엔 海洋法會議를 통하여 國際海洋秩序의 基本理念이 되었으나, 주로 深海底와 그 資源에 관한 國際的 規制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발전되어 왔다.

人類의 共同遺産概念은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Pardo의 提案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提案에 따라 제 3세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多數의 支持勢力들의 찬성으로 1968년 12월 21일 제 23차 유엔總會에서 決議 2467을 채택하여⁵⁾ 「國家管轄權 밖의 海底 및 海床의 平和的 利用에 관한 委員會」를 設置하기로 하였으며 1969년 12월 25일 제 24차 유엔總會에서 決議 2574에 의하여 深海底를 規律하기 위한 國際體制가 條約으로 확정되기까지는 深海底資源의 探查 및 開發을 禁止하기로 하였다.⁶⁾

이어서 1970년 12월 17일 제 25차 유엔總會에서 決議 2749로서 「國家管轄權 밖의 海底 및 海床과 그 下層土를 支配하는 原則宣言」을 채택하여 人類의 共同遺産概念을 海洋 특히 深海底에 관한 基本原則으로 선언하였다.⁷⁾ 이어서 決議 2750을 채택하여 1973 人類全體의 信託者로서 國際組織에 의한 直接管理를 주장하고 있다.

2. 제 3 차 유엔 海洋法會議에서의 新國際經濟秩序의 要求

가. 會議의 範圍問題

1969 년 유엔總會 決議 제 2574 는 海洋法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룰 國際會議의 개최에 관한 會員國의 견해를 확인할 것을 事務總長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西歐先進國들과 共產圈國들은 「總括적인 會議」에 반대하였다. 1968, 1969 년 海底委員會에서 美國과 蘇聯을 중심으로 하는 이들 국가들은 제 3 차 유엔 海洋法會議의 범위를 제 1 차, 제 2 차 유엔 海洋法會議에서 解決하지 못했거나, 다루지 않았던 문제들 즉, 領海의 範圍, 海洋環境保全, 深海底開發과 漁業問題 등에 국한시킬 것을 주장하였다.⁹⁾

이에 반해 開途國들의 입장은 深海底問題 등 제한된 문제나 선택된 문제 뿐만 아니라 海洋法全般에 관한 再檢討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海洋의 全般的인 問題를 검토하기 위한 國際會議의 개최는 거의 모든 開途國들에 의해 받아들여졌는 바, 여타 地域的 國際會議에서도 海洋에 관한 法體系의 전반적 再檢討를 위한 國際會議을 개최할 것이 合意되었다.¹⁰⁾

이러한 開途國 특히 아프리카諸國의 주장은 그들이 제 1 차 및 제 2 차 海洋法會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자신들이 참여치 않았던 海洋法協約을 부인하고 그들의 利益이 반영된 새로운 海洋法秩序를 요구하였던 것이다.¹¹⁾

이에 반하여 先進國들은 總括的 會議에 대하여 그리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을 뿐 아니라, 政府間海洋科學委員會(IOC)나 다른 소

규모의 研究委員會를 설립하여 海洋法에 관한 문제에 접근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會議의 範圍問題에 관한 양 그룹의 대립은 海洋法會議의 진행이 상당히 어려울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제 25 차 유엔總會는 海洋法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룰 제 3 차 유엔 海洋法會議의 開催를 결의하였다.¹²⁾ 이 會議는 準備委員會格인 海底委員會의 난항으로 1년간 연기되었다.¹³⁾ 결국 제 28 차 유엔總會에서 제 3 차 유엔 海洋法會議를 1973년 12월 뉴욕에서 개최할 것을 결의하였다.¹⁴⁾

나. 議事規則의 問題

會議組織과 관련하여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는 政策決定過程의 문제였다. 基本的인 問題는 모든 국가그룹들이 合意할 수 있는 條約이 합당한 기일내에 완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海洋法會議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領海問題, 國際海峽의 自由航行問題, 內陸國問題 등 여러 요인에 따라 原則과 利害關係를 달리하고 있다. 開途國들도 다양한 이익에 따라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통일된 그룹은 아니었다. 그러나, 開途國들의 수는 全體 參加國의 2/3에 달하였으며 이는 유엔總會나 主要國際會議에서라면 特別多數를 이룰 수 있는 세력이었다. 따라서 海洋法會議가 어떠한 표결방법을 채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다.¹⁵⁾

政策決定過程의 問題는 海底委員會에서부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일반적으로 유엔의 委員會에서의 결정은 투표에 의하여 이루어지나, 제 3 차 유엔 海洋法會議의 경우에 200海里 排他的 經濟水域을 주장하는 라틴아메리카국가 그룹은 투표에 의한 결정을 할 경

우 經濟水域問題에서는 명백한 소수인 자신들이 패배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라틴그룹은 어떠한 票決節次에도 반대하는 콘센서스 (consensus)에 의한 政策決定을 지지하였다.¹⁶⁾

海洋法會議의 議事規則의 문제는 1973년 3,4월 海底委員會를 거쳐 10,11월의 제 28차 유엔總會에서도 심층적으로 논의되었으며, 1973년 12월 3일부터 15일에 걸친 제 3차 유엔海洋法會議 (뉴욕)에서도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¹⁷⁾

海洋法會議를 요구하는 유엔總會의 決議는 海洋法會議가 가능한 한 콘센서스의 기초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¹⁸⁾ 콘센서스 방식에 의해 제 1회기 (뉴욕)에서 채택되어진 議事規則은 “紳士協定”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기 위한 모든 노력이 시도되어졌다는 결의가 이루어진 연후에야 그 문제에 관하여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海洋法會議가 가능한 한 콘센서스 방식의 기반 위에서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하였다.¹⁹⁾

제 3차 유엔海洋法會議가 議事進行方式으로 多數決方式을 거부하고 콘센서스 방식을 채택하였다는 점은 先進國그룹과 開發國그룹 사이의 타협에 의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1950년대 유엔은 美·蘇冷戰의 상황에서 그 冷戰의 한 장으로서 美國이 기계적 다수를 확보하고 蘇聯은 이에 拒否權行使로 대결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1960년 이후 開發國들의 대거 등장으로 유엔은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는데 이들은 다수의 횡포로 유엔總會를 장악하였으며 安全保障理事會에서의 強大國의 拒否權行使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하였다. 1970년대 국제관계의 다양성은 다수의 횡포도, 소수의 拒否權 행

사도 國際協力を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으로 나타난다. 소수의 입장에서는 수적 열세를 바라지 않았으며, 다수의 입장에서는 자그룹의 입장이 多數決에 의하여 결정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질적 소수인 경우에는 効力を 발생할 수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다. 또한 새로운 협력의 國際社會에서 傳統的인 投票方式은 國際協력에 부적합함이 모두에게 인식되었다.

해양에 관한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海洋法會議에 대하여 여러 이익그룹들은 會議進行의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우려에 더하여 投票에서의 불필요한 대결을 피하고 相互協力하는 체제를 수립하려는 욕구가 반영되어 콘센서스 방식이 채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65년경부터 國際會議의 議事進行方式으로 모습을 나타낸 콘센서스방식은 세부적인 사항에서의 불필요한 대립을 제거하고 보다 넓은 분야에서의 合意에 만족함으로써 협상의 결렬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물론 콘센서스에 의한 결정이 일반적인 성격만을 띠거나 法的拘束力이 없는 勸告에 불과하다는 약점도 지적되어 진다.²⁰⁾

여하튼 제 3차 유엔 海洋法會議의 議事規則으로 콘센서스방식이 채택되었다는 것은, 國際法 발달에서 평화적 변화를 가능케 하는 法的 장치로서의 國際法 政策決定過程을 정립하는데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²¹⁾

다. 海洋平和化의 要求

軍事的 意味에서 海洋의 重要性은 일찍부터 강조되어 왔으며



현대에도 그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 核潛水艦, 核武器實驗, 核廢棄物
의 처리 문제, 海底에의 大量殺傷武器의 설치, 監視追跡裝置의 설치
등 현대화한 海洋에서의 軍事活動은 海洋의 使用·統制, 그 地域에
서의 타국의 權利 등과 관련하여 더욱 복잡한 문제들 야기시켰다.
海洋의 軍事的 이용은 갈등을 고조시키고 海洋을 紛爭의 광장으로
만들 소지가 충분하였다. 이러한 추세를 인식하여 Pardo의 제안²²⁾
에서도 “深海底는 오직 平和의 目的을 위해서만 保存”되어야 함
을 언급하고 있다.

開發途上國들은 海底의 平和化에 관한 문제가 全世界的인 軍縮의
관점에 입각하여 海底委員會에서 토론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先進國들은 제한적인 토론을 원하였으므로 제네바 軍縮委員會
에서 토론할 것을 주장하였다.²³⁾

유엔總會의 決議, 兩者 또는 地域的 合意, SALT 등에서의 論議²⁴⁾
는 深海底에서의 核武器 배치와 軍事活動禁止에 관한 노력들을 완
성시켰는데, 그 예로서 대표적인 것은 「大氣圈·外氣圈 및 水中에
서의 核武器實驗 禁止條約(일명, 部分的 核實驗 禁止條約)」과 「核
武器 및 기타 大量 破壞武器의 海底에 있어서의 設置禁止에 관한
條約(일명, 海底 非軍事化條約)」이다.²⁵⁾ 前者는 條約의 대상 지역
이 國家管轄權 내의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어 모든 深海底 地域에
대한 全般的인 核實驗 禁止를 規定하고 있지는 않다. 後者의 條約
은 國家管轄權을 넘어서는 海底에서의 大量破壞武器의 배치, 實驗
構造物設置 등을 禁止하고 있으나, 深海底에서 활동하는 潛水艦이나
在來式武器는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효과적인 確認體制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렇듯 제한적이기는 하나 이들 條約은 深海底의 平和

화에 대한 발전을 대표하는 것이다.

해양의 평화화와 관련하여 제 3차 유엔해양법會議에서 沿岸開發途上國들은 強大國들의 海洋軍事活動을 제한하기 위하여 대체로 여섯 가지 의제로 의견을 開陳하였다.²⁶⁾

- 1) 軍艦과 商船의 법적인 구별에 관한 문제인데, 協約은 沿岸國에게 軍艦을 구별할 수 있는 특별한 權利를 規定하고 있지 않다.
- 2) 國際海峽의 通航問題로, 協約에서는 새로운 제도인 通過通航權과 群島水域에서의 海路(sea lanes)通航權을 制定하였다.
- 3) 沿岸國들은 EEZ에서의 타국 軍艦의 活動을 제한하려 하였으나, EEZ 상에서도 公海와 같은 航海의 自由가 보장되었다.
- 4) 타국의 大陸棚이나 EEZ 상에 軍事的 施設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條項을 協約에 삽입시키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 5) EEZ이나 大陸棚 상에서의 科學調查의 活動을 제한하려는 沿岸國들의 主張은 關切되어 協約은 海洋科學調查의 제한적 體제를 포함하고 있다.
- 6) 海洋에서의 軍事活動과 關連된 紛爭에 關해 強制解決方式을 채택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와 같이 이 분야에서의 沿岸開發途上國들의 立場은 先進海洋國들의 강력한 主張으로 別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니 先進國들은 12海里 領海, 群島水域 등의 제한 外에는 종래 公海自由의 原則하에서 누렸던 자유로운 海洋活動이 인정되었다.

제 3차 유엔해양법會議는 先進國의 航海에 대한 無制限的 自由의

主張과 沿岸國들의 資源에 대한 管轄權 擴大의 對立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沿岸開發途上國들은 EEZ, 深海底體制 등을 관철시킨 대신 先進國들의 자유로운 航行과 海洋活動에 대한 주장을 받아 들였던 것이니 이는 제 3차 유엔 海洋法會議 최대의 타협이라 할 것이다.²⁷⁾

라. 內陸國·地理的 不利國의 問題

제 3차 유엔 海洋法會議의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이익 그룹의 하나는 內陸國과 地理的 不利國 그룹이었다.²⁸⁾ 이 그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들은 海洋에의 出入權問題(通過權), EEZ와 深海底 資源開發에의 參與問題 등이었다. 유럽의 內陸國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內陸國이나 地理的 不利國들이 抵開發國들임을 勘案할 때 新海洋法協約이 그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함은 중요한 문제였다. 특히 아프리카대륙의 경우, 51개국 중 14개국이 內陸國이고 7개국이 地理的 不利國이었으며 특히, 14개국의 內陸國중 10개국은 UNDTAD와 世界銀行이 분류한 抵開發國家 중에서도 가장 抵開發 國家들이었다.²⁹⁾

이들 國家들의 抵發展은 그들 국가 나름대로의 抵發展의 要因이 있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國際通商, 貿易으로부터 소외되어진 內陸國이라는 地理的 位置라 할 수 있다. 특히 深海底의 鑛物開發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鑛物의 主要輸出國인 아프리카의 內陸國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임을 감안할 때 海洋法에 대한 內陸國의 立場은 死活問題와도 같은 중요 문제였다.

傳統 海洋法秩序에서도 內陸國의 問題가 무시되어진 것은 아니었

다. 1958년 公海協約은 無海岸國에 대하여 「相互主義에 의거하여 自由領域」을 자유로이 통과시켜 줄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³⁰⁾ 內陸國이 海洋에로의 자유로운 出入의 權利를 갖는다 함은 20세기에 들어와 國際法의 一原則으로서 兩者 또는 多者條約에 의하여 제정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진전에는 1921년 航行의 自由에 관한 Barcelona條約, 1958년 제네바 協約, 1965년 內陸國의 通過貿易에 관한 뉴욕協約 등이 있다.³¹⁾

그런데 Barcelona條約이 유럽국가들에 제한된 것이었고, 제네바協約은 애매한 「相互主義」原則이라는 弱點이 있었으며, 뉴욕協約은 광범위하게 內陸國의 問題를 취급하고는 있으나 1970년까지 21개국만이 이를 批准하였으며 21개국 중 Nigeria만이 유일한 아프리카 沿岸國이었던 것이다.³²⁾

內陸國의 문제에 대한 초기의 시도들이 주로 利害當事國 相互間의 合意에 의해 通航, 通航設備 등 제한된 영역에 국한하여 여러 多者的, 兩者的 合意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內陸國의 權利는 확보되지 못하였다. 특히 海底에 대한 內陸國의 利害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였다. 大陸棚制度가 인정되어 가면서 沿岸國들은 광대한 富에의 접근이 가능해졌으나 內陸國이나 地理的 不利國들은 海洋에서의 資源開發에서 疎外되었다. 內陸國들은, 大陸棚 原則에 입각한 沿岸國들의 일방적인 國家管轄權의 擴大宣言은 公海와 國家管轄權을 넘어서는 海底에 대한 他國과의 平等의 原則에 어긋나는 것이며 國際法原則에도 위배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³³⁾

따라서 內陸國들은 「人類의 共同遺産」이란 概念이나, 一般原則의 宣言³⁴⁾, 모라토리움 선언³⁵⁾ 등을 적극 지지하였다. 內陸國의 입장에

서 볼 때 이 宣言들은 沿岸國들의 海洋으로의 일방적 팽창을 저지하는 것이었고 海底領域에서의 內陸國의 權利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또한 內陸國들은 가능하면 보다 넓은 영역의 國際海底地域을 주장하였으며, 海底에 대한 沿岸國의 管轄權擴大는 「人類의 共同遺産」의 의미를 상실시키는 것이라 우려하였는데 이는 總會의 決議에도 나타나 있다.³⁶⁾ 1970년, 앞으로의 海洋法會議에서 南美諸國들의 團結을 선언하였던 Lima 宣言에 반대한 볼리비아와 파라과이의 태도도 이러한 內陸國의 입장이라는 측면에서 이해가 가능한 것이다.³⁷⁾

이렇듯 제 3차 유엔 海洋法會議에 임하는 內陸國의 입장은, 이會議가 이전의 방식처럼 內陸國에게 不均衡的 負擔을 안겨주는 제한적인 방식을 취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종래의 內陸國의 問題가 海洋에의 出入權 問題에 제한되었는데 반해, 새로운 海洋法會議는 이에 더하여 인접 沿岸國家의 EEZ 資源開發에의 參與와 利益配分에의 參與問題, 深海底 領域의 開發·探查 參與問題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볼 때 內陸國問題에 대한 開途國의 立場은 상이한 것이었다. 대부분의 國家가 沿岸國(볼리비아, 파라과아이만이 內陸國)이며 海岸線의 길이도 비교적 길어 「地理的 利益國」이라 할 수 있는 라틴아메리카諸國의 경우 地域的會議나 宣言이³⁸⁾ 주로 沿岸國의 權利宣言에 주력하고 內陸國의 問題는 거의 무시하고 있는 형편인데 비하여, 內陸國과 地理的 不利國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아프리카諸國의 地域會議나 宣言³⁹⁾의 경우 內陸國 問題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Kampala 宣言은 아프리카 內

陸國들의 立場을 밝힌 것이었다.⁴⁰⁾

라틴諸國의 宣言이 內陸國의 權利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비하여 OAU 宣言은 內陸國의 海洋에의 出入權을 인정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海洋法協約에 이를 삽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EEZ의 開發에 있어서도 內陸國이나 地理的 不利國의 利益을 고려해야 함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더 나아가 Kampala 선언은 內陸國의 海洋에의 자유로운 出入權과 地理的 不利國의 公海로의 자유로운 出入權은 國際法이 인정하는 기본적인 權利 중의 하나라고 주장하며, 通過國은 內陸國의 通過權을 自國과 평등하게 인정할 것은 물론, 領海를 넘어서는 EEZ 地域에서의 資源開發에 있어서도 內陸國은 隣接 海岸國과 同等한 權利를 향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⁴¹⁾

이렇듯 內陸國이나 地理的 不利國의 問題에 있어서 開途國 내에서도 라틴諸國과 아프리카 국가의 立場이 구별되었고, 아프리카 大陸內에서도 沿岸國의 立場과 內陸國의 立場이 상이하였다.

OAU 宣言은 內陸國의 海洋에의 出入權을 인정할 뿐 아니라 EEZ의 資源開發에 있어서도 沿岸國과 같은 조건으로 참여할 權利를 가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EEZ 概念을 지지하는데 있어서 沿岸國과 內陸國을 막론한 開發途上國들의 地域的 聯合을 가능하게 하였다.⁴²⁾

OAU 宣言이나 14 개국 提案⁴³⁾이 內陸國의 權利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반하여, 아프리카 沿岸國의 대표라 할 수 있는 修正前의 Nigeria 提案⁴⁴⁾이나 Kenya 대표의 발언⁴⁵⁾ 등은 EEZ에서의 內陸國의 權利問題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內陸國의 海洋出入權 問題에 대하여도, 自由航行은 제네바 協約의 「相互主義」의

기반아래 인정되는 것이며 인정 여부도 沿岸國(通過國)의 善意와 自由裁量에 달린 문제라 하였다.

EEZ 資源에 대한 內陸國의 權利問題에 이르면 아프리카 國家사이의 논의는 더욱 치열해진다. 內陸國들은 우선 大陸棚制度가 대다수의 아프리카 國家들이 植民支配下에 있었던 시기에 國際慣習化 하였으며 그 제도의 역사가 겨우 40년 정도에 그친다는 사실에서 大陸棚制度에 대한 수정부터 요구하고 나섰다.⁴⁶⁾

아프리카의 內陸國과 沿岸國사이의 論議은 內陸國의 EEZ 資源探査 開發權은 인정하되, 그 한계와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되었다. 內陸國들은 領海를 넘어서는 地域의 모든 資源에 대하여 內陸國도 沿岸國家와 同等한 權利와 管轄權을 주장한다. 즉, 生物資源은 물론 無生物資源의 開發·探査權도 주장하는 것인데 이것은 大陸棚에 대한 內陸國의 權利도 주장하는 것이었다.⁴⁷⁾ 이와 같이 內陸國은 EEZ에서의 無生物資源에 대한 開發과 利益配當에 참여할 權利까지도 주장하였는데 이는 沿岸國의 많은 반발을 받았다. 이에 內陸國 그룹은 다른 戰略을 채택하였는데, 이것은 그 지역 모든 國家에게 開發權이 개방된다는 地域的 經濟水域制度의 設立 주장이었다.⁴⁸⁾ 이에 반해 沿岸國들은 內陸國의 權利는 生物資源에 국한되며, 無生物資源에 대한 어떠한 權利나 鑛物資源 開發에서의 利益配當 등은 해당되지 않음을 주장하였다. OAU 宣言과 Yaoundé 決議도 內陸國에게 生物資源에 대한 開發權만을 주도록 언급하고 있다.⁴⁹⁾

이렇듯 內陸國의 問題는 주로 아프리카國家 사이에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결국 內陸國의 權利는 地域的 또는 兩者間的 合意方式에

따라 좌우된다는 점이 문제였다. 內陸國의 通過權이 인정되는 경우, 그것이 通過 沿岸國의 領土主權과 어떻게 조화될 것인가가 문제였으며, 이웃 沿岸國의 EEZ에 대한 開發權이 인정되는 경우 「이웃하는」 國家가 어느 國家인가도 문제가 되는 것이었다.⁵⁰⁾

海洋法協約은 第 10 章(제 124 ~ 132 조)에서 內陸國의 海洋出入權과 通過의 自由에 대하여, 第 5 章에서 EEZ에 대한 內陸國의 權利(제 70 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⁵¹⁾ 內陸國이나 地理的 不利國은 沿岸國 EEZ에서의 生物資源 開發參與權을 가지는데 그 參加條件은 關係國간의 兩國간 小地域 혹은 地域協定을 통해 결정된다. 內陸國이나 地理的 不利國의 權利에 대한 海洋法協約의 규정은 權利의 行使方式이 아주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協約이 실제로 실행되어질 경우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⁵²⁾ 또한 EEZ의 無生物資源에 대한 權利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대다수의 內陸國이 가장 가난하고 抵開發된 國家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결함은 海洋法協約의 未備點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⁵³⁾

第 3 章

排他的經濟水域與新國際經濟秩序

第 1 節 排他的 經濟水域의 概念

지금까지 NIEO의 成立過程과 內容 그리고 NIEO가 海洋法の 變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본 것은 바, 제 3 차 유엔 海洋法會議의 特征적인 2개의 制度 즉, 深海底開發制度和 200海里 排他的 經濟水域制度가 NIEO와의 연계하에 발전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兩制度는 前者가 各國의 管轄權 밖에 있는 無主의 海域을 대상으로 하는데 반하여 後者는 各國의 管轄權下에 있는 海域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제 3 차 유엔 海洋法會議의 討議過程을 살펴볼 때, 深海底開發制度가 NIEO理念의 대표적 투영사례로 보이나 EEZ制度 또한 NIEO理念과 깊은 关联性이 있는 것이다. 즉, 開途國이 海洋管轄權을 확대하고 그 水域 및 資源에 대하여 他國의 접근을 허용치 아니하고 獨占的 支配權을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深海底開發制度보다도 NIEO理念에 가까운 주장이라는 감마저도 있다.

따라서 本章에서는 EEZ制度和 NIEO의 연계성, EEZ에 대한 開途國들의 입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1. 排他的 經濟水域의 沿革

유엔 海洋法協約 제 55 조 및 제 57 조에 의하면 排他的 經濟水域은 領海에 접속한 領海밖의 領海測定基線으로부터 200海里까지의 特定法的 制度下의 水域이라고 定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엔 海洋法協約 第 5 章(제 55 조~제 75 조: 21 個條)에 의해 創設된 排他的 經濟水域制度는 沿革的으로 보아 開途國들

의 資源民族主義에 대한 主張이 海洋에 미친 것이라고 하겠다. 理念的으로 天然資源에 대한 永久主權宣言 등 NIEO 樹立에 관한 요구와 그 根據를 같이 하고 있다. 즉, 先進國과의 經濟的 格差를 해소하고 經濟的·社會的 正義의 실현을 이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構想된 것이다.

歴史的으로 排他的 經濟水域制度는 1945년 美國의 트루만宣言 以後 1952년의 산티아고宣言(칠레, 에쿠아도르, 페루)에서 이들 3個國이 200海里內的 天然資源에 대하여 獨占的 主權과 管轄權을 주장한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러나 보다 直接的이고 本格的인 經濟水域 概念의 成立은 1970年代初에 발표된 一聯의 宣言들에 의한 것으로, 1970년의 中南美諸國의 몬테비데오宣言, 1972년의 야운데會議에서 아프리카諸國의 經濟水域 주장, 同年 카리브海諸國의 世襲海域 주장, 1973년 美洲機構法律委員會의 200海里 領海 勸告, 아프리카 統一機構(OAU) 關係理事會의 200海里 經濟水域宣言 등의 要求가 決定的인 公認을 하였다.

排他的 經濟水域制度의 최대의 특징은 資源開發에 관해서 전통적인 公海自由의 原則을 排除한 것이다. 1958년 海洋法에 관한 제네바協約에서 接續水域과 大陸棚制度를 창설하였지만 接續水域과 大陸棚의 上部水域을 公海로 定義함으로써 海洋에 있어서 領海가 公海라는 二元構造를 유지하였다. 排他的 經濟水域制度는 同水域의 法的 地位를 領海도 아닌 제3의 水域으로 정의함으로써 同水域에서의 公海自由의 原則을 배제하였다. 단지 航行의 自由는 인정하고 있다.

公海自由의 原則은 특히, 資源開發에 관해서는 自由競爭을 보장하는 原理로서 이는 실제로 技術과 資本을 보유한 일부 先進國의 이익에 봉사하여 온 것이다. 開途國의 입장에서 볼 때 資源開發에 있어서의 自由의 原則은 資源의 衡平한 分配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排他的 經濟水域制度는 先進國에 대한 抗議概念을 나타낸 制度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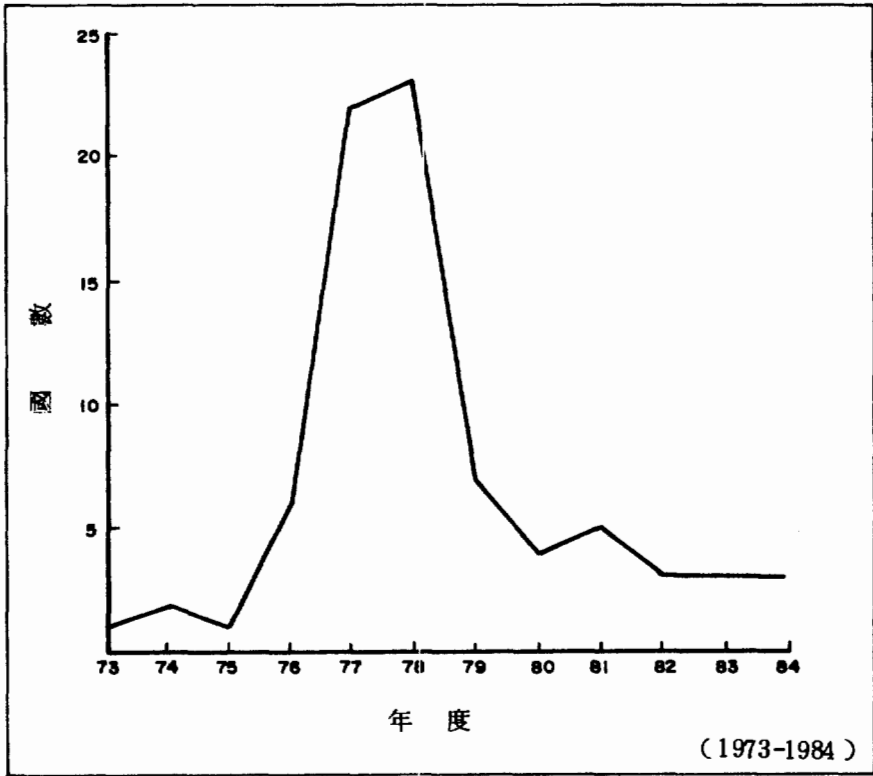
이와 같이 排他的 經濟水域制度는 深海底開發制度和 함께 公海自由의 原則을 排除하였다는데 공통점이 있다.

2. 排他的 經濟水域 宣布에 대한 各國의 動向

排他的 經濟水域 (Exclusive Economic Zone) 이란 用語를 國內法에 사용하여 EEZ 을 宣布한 것은 1973 년의 Madagascar 이 최초이다. 물론 1982 년에 채택된 유엔 海洋法協約上的 EEZ 概念과는 差異가 있는 것이었다.

EEZ 制度는 1945 년 美國의 트루만 宣言이나 1952 년의 Santo Domingo 宣言에서 유래한다는 것은 前述한 바 있거니와 各國이 EEZ 制度를 채택한 것은 제 3 차 유엔 海洋法會議의 開催를 전후한 1970 년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 과 같다.



(그림 1) 年度別 EEZ 宣布國 推移

한편 全世界 沿岸國들이 모두 EEZ 을 宣布하게 된다면 天然漁場의 대부분이 沿岸國 管轄下에 놓이게 되며, 그림 2 는 沿岸國에 속하게 될 200 海里까지의 水域을 나타내고 있다. 또 表 2 는 200 海里 排他的 經濟水域의 면적에 대한 國家別 순위를 15 位까지 표시하였다.

(表1) 年代別 EEZ 宣布 動向

<u>1970</u>	
Dec. 17	UN Resolution 2750: Decision to Convene UNCLOS III
<u>1973</u>	
Sept. 28	Madagascar
Dec. 3-15	1st Session of UNCLOS III (New York)
<u>1974</u>	
April 13	Bangladesh
June 2	Qatar
June 20- Aug. 29	2nd Session of UNCLOS III (Caracas-Main Trends Papers)
<u>1975</u>	
Mar. 17- May 9	3rd Session of UNCLOS III (Geneva-Single Negotiating Text)
May 20	Costa Rica
<u>1976</u>	
Mar. 15- May 7	4th Session of UNCLOS III (New York-Revised Single Negotiating Text)
June 15	Comoros
July 1	Guatemala
31	Mexico
Aug. 2- Sept. 17	5th Session of UNCLOS III (New York)
Aug. 19	Mozambique
Dec. 5	Maldives
31	Pakistan
<u>1977</u>	
Jan. 1	Norway
15	India
15	Sri Lanka
Feb. 11	France
22	French Guiana (Fr.)
25	St. Pierre & Miquelon (Fr.)
26	Cuba
Apr. 1	Dominican Republic
8	Haiti
9	Burma
May 12	Vietnam
May 23- July 15	6th Session of UNCLOS III (New York- Informal Composite Negotiating Text)

May 28	Portugal
June 30	Guyana
Aug. 1	Korea, North
1	Mauritius
1	Seychelles
16	Togo
25	Western Samoa
Nov. 14	Cook Islands (N.Z.)
17	Ivory Coast
Dec. 23	Tokelau((N.Z.)
31	Cape Verde

1978

Jan. 15	Yemen (Aden)
Feb. 3	Clipperton I. (Fr.)
3	French Polynesia (Fr.)
3	Mayotte (Fr.)
3	New Caledonia (Fr.)
3	Reunion (Fr.)
3	Islands of Tromelin. Glorious Archipelago. Juan-de-Nova. and the Europa and Bassas-da-India (Fr.)
3	French Southern and Antarctic Lands (Fr.)
3	Wallis and Futuna Islands (Fr.)
20	Spain
28	Mauritania
March 6	Guadeloupe (Fr.)
6	Martinique (Fr.)
March 28-	7th Session of UNCLOS III (Geneva)
July 15	
March 31	Papua New Guinea
April 1	New Zealand
1	Niue (N.Z.)
May 19	Guinea-Bissau
June 11	Suriname
16	Sao Tome & Principe
July 26	Venezuela
Aug. 1-	7th Session-Resumed (New York)
Sept. 15	
Aug. 4	Colombia
Oct. 5	Nigeria
Nov. 1	Grenada

1979

Jan. 1	Barbados
9	Djibouti

Feb. 28 Kenya
 March 19- 8th Session of UNCLOS III (Geneva-
 April 27 Informal Composite Negotiating Text. Rev. 1)
 June 1 Iceland
 25 Tonga
 July 11 Philippines
 14 Solomon Islands
 July 19- 8th Session-Resumed (New York)
 Aug. 24

1980

March 3- 9th Session of UNCLOS III (New York-
 April 4 Informal Composite Negotiating Text. Rev. 2)
 March 21 Indonesia
 June 13 Honduras
 July 28 9th Session-Resumed (Geneva-Draft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nformal Text)
 30 Guinea
 Aug. 25 United Arab Emirates

1981

Feb. 20 Oman
 23 Thailand
 March 9- 10th Session of UNCLOS III (New York)
 April 24
 April 8 Morocco
 Aug. 1-28 10th Session-Resumed (Geneva-Draft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25 Dominica
 Dec. 1 Fiji

1982

March 8- 11th Session of UNCLOS III (New York-
 April 30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dopted)
 July 31 Cambodia
 Sept. 1 Antigua and Barbuda
 Sept. 22-24 11th Session-Resumed (New York)
 Oct. 6 Vanuatu
 Dec. 10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signed by 119
 states (Kingston)

1983

March 10 United States
 May 16 Kiribati
 May 27 Trinidad and Tobago
 June 8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Aug. 26 Egypt

1984

Jan. 1 Tuvalu

March 1 USSR

July 12 Gabon

July 18 St. Luc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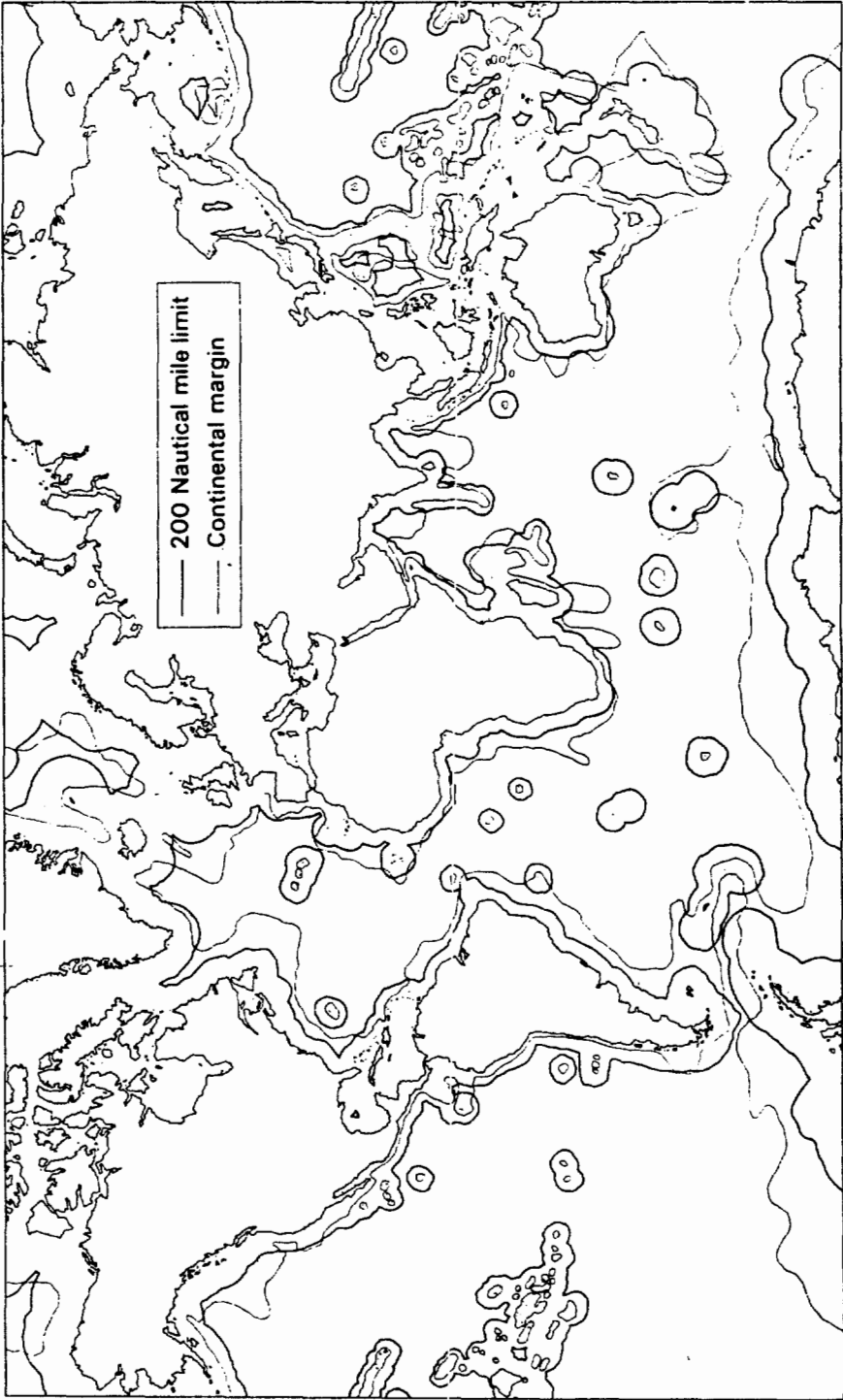
Aug. 31 Saint Christopher and Nevis

Nov. 24 Equatorial Guinea

1985

Sept. 21 Madagascar

資料) Robert W. Smith, Exclusive Economic Zone Claims,
1986, pp.30-31.



(그림 2) 200 海里水域 및 大陸邊界圖

(表 2) 國家別 EEZ 面積 順位

國 名	面積 (sq.n.miles-'000s)
1. United States	3,107.0*
2. France	2,100.0*
3. New Zealand	1,792.8*
4. Indonesia	1,577.3
5. USSR	1,309.5
6. Mexico	831.5
7. Norway	590.5
8. India	587.6
9. Philippines	551.4
10. Portugal	517.4
11. Papua New Guinea	504.0
12. Solomon Islands	445.0
13. Seychelles	393.4
14. Madagascar	376.8
15. Spain	355.6*

* 海外領土 및 保護領 포함.

資料) R.W.Smith, Exclusive Economic Zone Claims, p. 32.

(表 3) 200 海里 海洋管轄權 宣布動向

地 域	沿岸國數	200 海里 宣布動向			
		小 計	領 海	EFZ	EEZ
아 시 아	32	17	-	3	14
아 프 리 카	37	31	7	4	20
아 메 리 카	33	29	8	5	16
유 럽	27	16	-	8	8
오 세 아 니 아	12	11	-	1	10
計	141	104	15	21	68

第 2 節 排他的 經濟水域制度的 規定分析

本 節에서는 유엔 海洋法協約 제 5 장 排他的 經濟水域制度的 主要 條項에 대한 分析을 통하여 NIEO와 EEZ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排他的 經濟水域의 法的 性格 및 沿岸國의 權利

가. 排他的 經濟水域의 特定法的制度 (제 55 조)

排他的 經濟水域은 本章에 設立된 特定法的制度에 따르는 領海 밖의 領海와 隣接한 水域으로서, 沿岸國의 權利와 管轄權 및 他國의 權利와 自由는 本 協約의 關係 規定에 의하여 規律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EZ 概念은 NIEO 概念과 思想的 · 經濟的으로 기반을 같이 하고 있으며, 開途國들의 先進國들에 대한 鬭爭概念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EEZ 制度가 단지 開途國의 요구만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美國을 비롯한 先進國들이 開途國들의 海洋管轄權 擴大傾向을 저지하고 國際海峽에서의 通過通航權을 確保하며 領海範圍를 12 海里로 制限하려는 목적과의 妥協의 產物인 것이다.

한편 EEZ의 法的 性格에 대해서 제 3차 유엔海洋法會議時에 3가지 입장이 있었던 바, 첫째, 經濟的 目的을 위하여 國家主權이 행사되는 水域이라는 說(케냐) 둘째, 沿岸國의 限定된 機能的 權利가 미치지만 水域自體는 公海라는 說(핀란드, 네덜란드) 셋째, 主權이 미치는 領海도 아니지만, 沿岸國의 重要한 權利가 인정되는 水域으로서 公海와도 다른 兩者의 中間的 水域이라는 說(베네주엘라) 등을 들 수 있다.

EEZ의 法的 性格에 대하여 海洋法協約은 분명히 領海 또는 公海와 다른 地位를 부여하고 있다. 즉, 本條에서 特定法的 制度 (the specific legal régime)임을 명시하면서 領海와 區分을 명확히 하였고, 水域自體는 公海라는 立場에 대해서는 協約 제 86조 前但이 「本章(公海)의 規定은 어느 國家의 排他的 經濟水域, 領海, 內水 또는 群島國家의 群島水域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모든 海域에 적용된다」고 규정함으로써 EEZ이 公海가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다.

나. 排他的 經濟水域에서의 沿岸國의 權利, 管轄權 및 義務

1. 排他的 經濟水域에서 沿岸國은 다음 權利를 갖는다 ;

가. 海底, 下層土 및 上部水域의 生物 또는 無生物 天然資源의 探查, 開發, 保存 및 管理를 目的으로 하는 主權的 權利와 海水, 海流 및 海風을 利用한 “에너지” 生産과 같은 同水域의 經濟的 開發 및 探查를 目的으로 한 其他 活動에 관한 主權的 權利 ;

나. 다음 事項에 관하여 本 協約의 關係規定에 따른 管轄權 ;

- (1) 人工 島嶼, 施設 및 構造物의 設置와 使用
- (2) 海洋의 科學的 調査
- (3) 海洋環境의 保護 및 保存

라. 本 協約에 規定된 其他 權利와 義務

2. 排他的 經濟水域에서 本 協約에 따라 權利를 行使하고 義務를 履行함에 있어서 沿岸國은 他國家의 權利 및 義務를 正當히 考慮하여야 하며, 本 協約의 諸規定에 모순되지 아니하게 活動하여야 한다.

3. 海底 및 下層土에 관하여 本條에 規定된 權利는 第 6章에 따라 行使되어야 한다.

(1) 主權的 權利

主權的 權利의 概念은 1958년의 大陸棚協約에서 처음으로 使用된 것으로 大陸棚에 대한 沿岸國 權利의 排他性·獨占性·原始性 등을 나타내기 위한 用語로서 채택된 것이었다.

1982년 유엔 海洋法協約의 EEZ 制度에서도 同一한 用語가 사용되었는 바, EEZ에 대한 沿岸國權利의 排他性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된다.

主權的 權利는 원래 天然資源을 探查·開發하기 위한 機能的 權利로서 國家의 構成要素인 主權과는 區別된다. 그러나 大陸棚에 대한 權利가 追後의 解釋에 의하여 領域的 性格이 농후해진 것처럼 EEZ에 대하여서도 程度의 差異는 있을지라도 같은 상황이 전개되리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본다.

특히, 開途國들이 EEZ에 대한 權利를 天然資源에 대한 永久主權概念의 具現으로 受容하는 경향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즉, 1972년 유엔總會 決議 3016 (XXVII) 「自國 管轄權內的 海底, 下層土 및 上部水域에 있는 모든 天然資源」에 대한 永久主權을 확인하고 있음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2) 大陸棚에 대한 主權的 權利와의 比較

EEZ에 대한 主權的 權利와 大陸棚에 대한 主權的 權利는 다음 3가지 면에서 相違하다.

첫째, 그 權利의 承認根據가 되는 自然的 事實이 다르다. 大陸棚에 대한 主權的 權利는 陸地本土와의 一體性·接續性에 근거하고 있다. 國際司法裁判所의 「陸地의 自然延長說」도 이와 같은 견해의 표시이다. 또 大陸棚에 대한 權利는 領土主權의 海底로의 延長이라는 인식과 더우기 그 權利는 原初的으로 存在한다는 規定(大陸棚協約 제 2조 3항, 유엔 海洋法協約 제 77조 3항)에 의해 한층 領域的 性格을 강조하는 해석을 가능케 하였다.

한편, EEZ은 自然的 事實로서 陸地本土와 一體性을 이루지 못하

고 있다. 따라서 EEZ에 沿岸國의 主權的 權利를 인정하는 경우 大陸棚에서와 같은 論理는 적용되지 않는다. 領海를 사이에 두고 陸地本土와의 隣接性 소위 近接性이 인정되는데 그친다. 이와 같은 隣接性을 근거로 領海밖의 生物資源에 대해서 沿岸國의 優先權 (preferential right)을 인정하는 制度는 존재하였지만, EEZ 制度는 優先權과는 質的으로 다른 沿岸國의 權利를 설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EEZ에 대해서 大陸棚과 같이 陸地의 自然延長論을 근거로 權利의 領域性을 부여하는데는 限界가 있다.

둘째, 새로운 유엔海洋法協約에서의 定義에 관한 차이점이다. 大陸棚에 대한 主權的 權利에 대하여는 大陸棚協約과 같이 이 權利의 排他性·獨占性·原始性을 강조하고 있다(協約 제 77 조 2 항, 3 항). 그러나 EEZ에 대한 主權的 權利를 인정한 제 56 조에는 이러한 定義가 없으며, 大陸棚에 관한 제 77 조를 準用하는 규정도 없다.

따라서 EEZ에 대한 主權的 權利가 大陸棚에 대한 主權的 權利에 비해 排他性·獨占性·原始性이 약하다고 解釋될 수도 있다.

셋째, 구체적인 開發制度가 다르다. 즉, EEZ의 生物資源을 開發하는데는 特別한 制度가 설정되어 있다. 沿岸國은 自國 EEZ에서의 總許容漁獲量에서 自國漁獲量을 공제한 剩餘分에 대하여 他國의 入漁를 인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高度廻遊性魚種의 경우 등에 關聯國 또는 國際機構와 協力하여야 한다. 따라서 EEZ에 대한 沿岸國의 權利는 排他性이 制限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전통적인 公海漁業의 自由가 미묘하게 투영된 제도라고 할 수도 있다.

(3) 沿岸國의 其他權利

本條 1項 나號의 人工島嶼 및 海洋構造物의 設置, 海洋

科學調查, 海洋環境保全에 관한 管轄權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管轄權이란 用語가 假號의 主權的 權利와 法的 性格이 어떻 게 다른지 명확치 않다.

한편, 이러한 事項에 대해서는 별도의 具體的 規定(人工島嶼 등 제 60 조, 科學調查 제 13 장, 環境保全 제 12 장)을 두고 있어, 本號는 一般原則을 규정한 것으로 종래에 公海自由의 原則에 포함되던 것을 沿岸國의 管理下에 두는 것임을 宜言한 것으로 인식된다.

本條 第 1 項 假號와 本號의 關係가 분명치 않은 바, 本號의 管轄權은 假號의 權利를 實現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인지, 假號와 無關係하게 존재하는 것인지 명확치 않다.

假號와 本號의 關係에 대한 規定이 없어 각각 獨立的 地位를 갖는 것으로 인식되어, 海洋構造物의 경우 沿岸國은 資源開發과 無關係하게 그 設置에 대한 排他的 權利를 갖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協約 제 60 조 1 項 本號에 따르면 이러한 排他的 權利는 資源開發과 經濟的 目的 때문에 인정되는 것으로 規定되어 있고, 또 海洋科學調查도 資源開發目的이 아닌 경우는 통상적으로 沿岸國의 同意가 부여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沿岸國은 同意를 거부할 權利가 인정되고 있어(協約 제 246 조), 이러한 關係를 인식한다면 일반적으로 本號의 權利는 假號의 活動과 연계되어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4) 大陸棚制度와의 關係

本條 제 3 항은 海底 및 下層土에 관한 權利는 제 6 장(大陸棚制度)에 따라 行使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이는 實質적으로 EEZ는 生物資源의 開發에 관한 制度로서 그리고 大陸棚은 海底

資源開發을 규율하는 制度로 區分되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더우
기 兩制度의 主權의 權利의 法的 性格이 다르다는 점은 이러한
가능성을 더욱 높여 주고 있다.

다. 排他的 經濟水域의 幅 (제 57 조)

排他的 經濟水域은 領海의 幅을 測定하는 基線으로부터
200 海里를 超過할 수 없다.

本條는 EEZ의 外側限界를 규정한 것으로, 領海測定基線으로부터
200 海里 範圍內에서 沿岸國의 國內措置로 設定하는 것이다. 이러
한 점에서 별도의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고 原初的으로 沿岸國에
귀속되는 大陸棚制度和 差異가 있다.

나. 排他的 經濟水域에서의 他國의 權利·義務 (제 58 조)

1. 排他的 經濟水域에서 沿岸國이나 內陸國에 關係없이
모든 國家는 本 協約의 規定에 따라 第 87 條에 規定된
航海, 飛行 및 海底電線과 導管敷設의 自由, 그리고 船
舶, 航空機 및 海底電線과 導管의 運用 등 本 協約의
其他 規定에 모순되지 아니하는 其他의 合法的인 國際的
海洋利用의 自由를 享有한다.

2. 第 88 條 내지 第 115 條 및 其他 國際法의 적절한
規定은 本章과 矛盾되지 아니하는 限 排他的 經濟水域에
適用된다.

3. 排他的 經濟水域에서 本 協約에 따라 權利를 行使

하고 義務를 履行함에 있어서 各 國家는 沿岸國의 權利와 義務를 正當히 考慮하여야 하며, 本 協約의 諸規定 및 本章의 規定과 矛盾되지 않는 限 其他 國際法 規定에 따라 沿岸國이 採擇한 法令을 遵守하여야 한다.

(1) 排他的 經濟水域에서 認定되는 自由

개괄적으로 EEZ에서는 資源開發 및 經濟的 目的에 대한 權利는 沿岸國에 귀속하고, 그 밖의 利用 특히, 交通·通信·輸送關係의 活動에는 모든 國家에게 自由가 인정된다. 결국 이러한 活動에는 特別한 制度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公海에서와 같은 自由가 인정되는 것이다. 단지 海底電線과 導管의 부설은 大陸棚에 관한 제 79 조의 制約을 받게 된다.

本條 제 1 항은 이러한 自由 외에도 이에 관련된 기타의 自由, 예를 들면 船舶運航 및 海底電線의 運用에 부수되는 自由 등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제 1 항 後但은 軍艦의 活動을 포함한 船舶 및 航空機의 運航에 관련된 自由가 公海의 自由와 同一한 것임을 確認하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⁵⁴⁾

그 밖에 協約 제 88 조 내지 제 115 조의 公海에 관한 規定은 원칙적으로 EEZ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旗國主義原則, 衝突 등의 刑事管轄權, 奴隸輸送, 海賊行爲의 禁止, 繼續追跡權 등은 EEZ 制度와 接觸이 없는 한 公海에서와 같이 適用된다.

(2) 航海의 自由와 沿岸國의 管轄權

EEZ에서 모든 國家는 航海의 自由가 있다. 그러나 沿岸國의 法令이 적용되는 水域으로서 法令의 施行에 따른 약간의 制

約을 받아야 한다.

첫째, 沿岸國에 인정되는 繼續追跡權이다. 이 權利는 1958년 公海協約에서 沿岸國의 法令을 위반한 外國船舶이 領海 또는 接續水域에 있을 때에 한하여 行使할 수 있었으나, 海洋法協約은 여기에 더하여 EEZ 과 大陸棚에 적용되는 法令違反과 同水域에 있는 外國船舶에 대해서도 이 權利를 인정하고 있다(協約 제 111조 2항).

즉, EEZ에서 漁業法令 또는 海洋構造物의 관리에 관한 法令 등을 위반한 外國船舶에 대하여 沿岸國은 追跡權을 行使할 수 있다. 더우기 被追跡船舶이 旗國 또는 第3國의 領域에 들어가지 않는 한, 他國의 EEZ에서도 이 權利를 행사할 수 있다. 이는 EEZ이 公海로서의 性格을 가진다기보다 沿岸國의 主權이 미치는 水域은 아니라는 측면에서의 해석이다.

둘째, 海洋汚染防止에 관한 事項으로 沿岸國은 EEZ에서의 海洋環境 保全에 관한 管轄權을 가지며(協約 제 56조 1항), 船舶으로부터의 汚染을 방지하기 위해 沿岸國은 일반적으로 受諾된 國際基準과 일치하는 法令을 制定·施行할 수 있다(協約 제211조 5항).

따라서 이러한 沿岸國 法令에 의해 EEZ에서의 海洋汚染行爲는 旗國主義가 어느 정도 制限되고 沿岸國 또는 入港國의 權限이 미치는 경우가 있다.

마. 排他的 經濟水域에서의 權利와 管轄權의 歸屬에 관한 紛爭의 解決을 위한 基本原理(제 59조)

本 協約이 排他的 經濟水域內에 있어서의 權利나 管轄權이 沿岸國 또는 他國家에 歸屬함을 定하지 아니하고

그 沿岸國과 他國家間에 利害關係를 둘러싼 紛爭이 發生하는 경우 그 紛爭은 國際社會 全體로서 뿐만 아니라 當事國에 關聯된 各 利害關係의 重要性을 考慮하여 衡平의 原則에 입각하고 또한 모든 關係狀況에 비추어서 解決되어야 한다.

本條는 EEZ에서의 權利가 沿岸國 또는 他國에 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紛爭이 發生한 경우, 이것을 衡平의 原則에 입각하여 해결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 一方으로의 一般的 歸屬推定을 피하려는 취지이다.

協約 採擇過程에서 EEZ는 여하한 형태로든 「國家水域」으로 보는 견해가 開途國側에서 강하게 대두되었던 바, 未歸屬權利에 대하여 沿岸國에 有利하게 해석하려는 경향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本條는 그 可能性을 방지하려는 의미를 가진 것이다.

바. 排他的 經濟水域에서의 人工島嶼, 施設 및 構造物 (제 60 조)

1. 沿岸國은 排他的 經濟水域에서 다음 것을 建設하고 그 建設, 運用, 利用을 許可하고, 規制하는 排他的 權利를 가진다.

가. 人工島嶼 ;

나. 第 56 條에 정한 目的과 그밖의 經濟的 目的을 위한 施設 및 構造物 ;

다. 排他的 經濟水域에서의 沿岸國이 權利行使에 妨害가 될 수 있는 施設 및 構造物

2. 沿岸國은 關稅, 財政, 衛生, 安全, 出入國管理法令에 관한 管轄權을 包含하여 上記 人工島嶼, 施設 및 構造物에 대한 排他的 管轄權을 가진다.

3. 上記 人工島嶼, 施設 및 構造物의 建設은 正當히 公示되어야 하며, 그 存在에 대한 警告를 위한 恒久的 手段을 維持하여야 한다. 放棄하거나 使用되지 아니하는 施設 또는 構造物은 航行의 安全을 위하여 權限있는 國際機構가 정한 一般的으로 승인된 國際基準을 고려하여 撤去하여야 한다. 撤去에 있어서 漁業, 海洋環境保護 및 他國의 權利·義務에 타당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完全히 撤去되지 않은 施設 또는 構造物은 水深, 位置 및 規模를 適當하게 공포하여야 한다.

4. 沿岸國은 必要한 경우 航海와 人工島嶼, 施設 및 構造物의 安全을 保障하기 위하여 적절한 措置를 取할 수 있는 合當한 安全水域을 人工島嶼, 施設 및 構造物의 주위에 設定할 수 있다.

5. 沿岸國은 適用할 수 있는 國際基準을 考慮하여 安全水域의 幅을 決定하여야 한다. 이러한 安全水域은 人工島嶼, 施設 또는 構造物의 性格 및 機能에 비추어 合理的으로 設定되어야 하며,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基準 또는 權限있는 國際組織에 의한 권고에 따라 認定된 경우를 除外하고는 人工島嶼, 施設 또는 構造物의 外延의 各點으로부터 測定하여 500 m를 超過할 수 없다. 安全水域은 適當히 公示되어야 한다.

6. 모든 船舶은 上記 安全水域을 尊重하여야 하며, 人工島嶼, 施設, 構造物 및 安全水域 周邊에서의 航海에 관한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基準을 遵守하여야 한다.

7. 人工島嶼, 施設, 構造物 및 그 주위의 安全水域은 國際航行에 緊要하다고 認定된 航路帶의 利用에 妨害될 만한 場所에 設置할 수 없다.

8. 人工島嶼, 施設 및 構造物은 島嶼의 地位를 갖지 아니하며, 그 自體의 領海를 갖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 存在는 領海, 排他的 經濟水域 또는 大陸棚의 境界劃定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本條는 領海 밖에 설치되는 構造物에 대한 沿岸國의 法令 適用에 대한 國際法的 根據를 제공하고 있는 規定이다. 또 安全水域은 1958년 大陸棚協約에서 채용된 것으로 當該 構造物의 保護 및 船舶의 安全을 위한 제도이다.

2. 排他的 經濟水域의 生物資源

가. 生物資源의 保存 (제 61 조)

1. 沿岸國은 自國의 排他的 經濟水域에서의 生物資源의 許容漁獲量을 決定하여야 한다.

2. 沿岸國은 入手 가능한 最善의 科學的 證據를 考慮하며, 過剩開發로 인하여 排他的 經濟水域에서의 生物資源의 維持가 위태롭게 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保存 및 管理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조 當한 경우 沿岸國과 小地域

的, 地域的, 全世界的임에 關係없이 權限있는 國際組織은 이 를 위하여 相互 協力하여야 한다.

3. 上記 措置는 또한 沿岸漁業社會의 經濟的 必要성과 開發途上國의 特別한 要求를 包含한 關聯 環境的, 經濟的 要因에 의하여 確定되고, 또한 漁撈形態, 魚族間的 相互依 存性 및 小地域的, 地域的, 全世界的임에 關係없이 一般的 으로 권고된 國際最少基準을 考慮하여 最大持續的 生産量 을 生産할 수 있는 수준으로, 漁獲되는 魚族의 資源量이 維持 또는 回復되도록 計劃되어야 한다.

4. 上記 措置를 취함에 있어서 沿岸國은 關聯 또는 依 存 魚族의 資源量을 그 再生産에 대하여 현저한 威脅을 방지하기 위한 水準 以上으로 維持·回復시키기 위하여 魚 獲魚族과의 關聯 또는 依存魚族에 미치는 影響을 考慮하 여야 한다.

5. 入手 可能한 科學的 情報, 漁獲 및 漁業活動 統計, 水産資源의 保存에 關聯된 其他 資料는 적절한 경우 小 地域的, 地域的 또는 全世界的인 權限있는 國際組織을 통 하여 또한 所屬國民이 排他的 經濟水域에서 入漁가 許容 된 國家를 包含한 모든 關係國家의 參與下에 定期的으로 提供되고 交換되어야 한다.

本條는 表題가 「保存」으로 되어 있고 EEZ에서의 總許容漁獲 量을 결정하는 것은 이 目的을 위한 것으로 解釋되지만 실제적으 로는 제 62 조의 관계에서 意味를 갖는 規定이다. 그리고 「最大

持續的 生産量」이란 概念은 제 2 차 世界大戰 이후에 대두된 概念으로서 여러 漁業關聯條約에서 채택되고 있으나 沿岸國의 恣意的인 裁量이 개입될 우려가 크다.

여하튼 資源保存의 義務는 EEZ의 性格을 규정하는 하나의 概念으로서, 初期의 EEZ 提案(1972년 케냐案, 1973년 카리브海諸國案)에서는 保存概念은 희박하였지만, EEZ 制度에 關係 消極적이었던 美國, 蘇聯 및 東歐諸國 등이 EEZ 制度의 前提條件으로서 첫째, 資源保存의 明確化 둘째, 完全利用原則의 確認 셋째, 國際委員會에 의한 規制措置의 決定 등을 요구하면서부터 保存概念이 채택되었다.⁵⁵⁾

따라서 EEZ 制度는 資源의 獨占만을 강조하던 初期의 構想에서 保存의 義務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變質되게 되었다.

나. 生物資源의 利用(제 62 조)

1. 沿岸國은 第 61 條의 規定을 害하지 아니하고 排他的 經濟水域에서의 生物資源의 最適利用 目標을 促進시켜야 한다.

2. 沿岸國은 排他的 經濟水域에서의 生物資源에 대한 自國의 漁獲能力을 決定하여야 한다. 沿岸國이 全體 許容 漁獲量을 漁獲할 能力이 없는 경우에는 第 69 條 및 第 70 條의 規定, 특히 그 規定에 언급된 開發途上國家에 관한 特別考慮를 하고, 合意 또는 그밖의 約定 그리고 第 4 項에 規定된 條件, 法令에 따라 許容 漁獲量의 剩餘分에 대한 他國의 入漁를 認定하여야 한다.

3. 本 條에 따라 排他的 經濟水域에 他國의 入漁를 認

定하는 경우, 沿岸國은 모든 關係要素를 考慮하여야 한다. 특히 同水域 生産資源의 關係沿岸國의 經濟 및 그밖의 國際의 利益에 대한 重要性, 第 69 條와 第 70 條의 規定, 剩餘分 漁獲에 대한 小地域 또는 地域內의 開發途上國의 要求, 所屬國民이 同水域에서 慣習적으로 漁撈行爲를 行하여 왔거나, 魚族의 調査 및 識別에 實質的 努力을 行한 國家에 있어서의 經濟的 混亂을 極小化할 必要性을 考慮하여야 한다.

4. 排他的 經濟水域에서 漁撈行爲를 하는 他國의 國民은 沿岸國의 法令에 의하여 確立된 保存措置 및 條件을 지켜야 한다. 上記 法令은 本 條約에 따라야 하고, 特히 下記 事項과 關聯되어야 한다.

가. 入漁者, 漁船 및 裝備의 許可, 開發途上沿岸國의 경우에는 水産業에 관한 財政, 裝備 및 技術分野에 있어서 적절한 補償이 되는 入漁料 및 그밖의 形態의 料金の 支給에 대한 許可를 包含한다;

나. 漁獲 가능한 魚種의 決定, 그리고 特定 魚族, 魚群 또는 一定期間동안의 漁船當 漁獲量이나 特定期間동안 어느 國家의 國民에 의한 漁獲量에 관한 漁獲量 “쿼타”의 決定;

다. 漁撈期와 漁撈水域, 漁具의 形態, 規模, 量 및 利用 가능한 漁船의 形態, 規模, 數의 規制;

라. 漁獲 가능한 魚類 및 其他 魚種의 나이, 크기의 決定;

마. 漁獲量과 漁業活動統計 및 漁船의 位置報告를 包含한 漁船에 대하여 要求되는 情報의 明示 ;

바. 沿岸國의 許可와 統制에 따른 特定漁業調査計劃의 實施要求 및 漁獲物의 見本作成, 見本의 處理 및 關聯科學資料의 報告를 包含한 上記 調査의 實施에 대한 規制 ;

사. 沿岸國에 의한 監視員 또는 訓練員의 乘船配置 ;

아. 沿岸國 港口에서의 上記 船舶에 의한 漁獲物의 全部 또는 一部の 揚陸 ;

자. 合作投資 또는 그밖의 相互協力 約定에 관한 條件과 期間

차. 漁撈調査의 遂行을 위한 沿岸國의 能力強化를 包含한 要員의 訓練 및 漁撈技術의 移轉에 대한 要求 ;

카. 施行節次

5. 沿岸國은 保存 및 管理關係法令을 正當히 公示하여야 한다.

(1) 資源의 最適利用

資源의 最適利用 (optimum utilization) 概念은 初期의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諸國案에서는 없었던 것으로, 1974년 美國案의 完全利用 (full utilization), 蘇聯·東歐案의 最大利用 (maximum use) 주장을 緩和시켜 채택한 것이다.

그러나 그 概念의 具體的 內容 특히 제 61 조의 總許容漁獲量과의 關係 등이 協約規定上 명확치 않다. 1976년 美國의 漁業保

存·管理法은 「最適」이란 資源의 最大持續的 生産量에 기초를 두고 國民에게 最大의 全面的 利益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定義하고 있다(同法 第3節(18)).

(2) 剩餘分에 대한 入漁

最適利用의 原則은 自國이 이용하지 않는 資源에 대하여 他國에 의한 이용을 許容하는 것으로, 제2항에 규정된 剩餘分에 대한 他國의 入漁는 이 原則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剩餘分은 總許容漁獲量에서 自國漁獲能力을 공제하여 얻어지는 바, 協約에서는 自國漁獲能力의 決定基準을 설정치 않고 있고 또, 이러한 決定에 대한 國際機構와의 協議義務도 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自國漁獲能力決定에는 沿岸國의 主觀的 裁量이 개입될 여지가 많고 自國의 能力이란 外國의 資本 및 技術을 도입하여 개발하는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에 剩餘分이 消滅되는 國家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剩餘分”이라는 概念은 各國의 提案에서 共通的으로 주장된 것은 아니다. 蘇聯·東歐案에는 許容漁獲量중에서 沿岸國은 自國分과 他國分을 각각 결정하도록 제안하였으며, 이 경우 他國分도 반드시 剩餘分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여하튼 이 概念은 EEZ에 대한 主權的 權利의 排他性을 약화시키는 하나의 요소이다.

하지만 剩餘分에 대한 他國入漁制度는 첫째, 剩餘分이 流動的이며 전혀 없을 수도 있다는 점 둘째, 他國의 入漁는 協定에 의해서 행해지는 바 本條 4項의 諸條件에 따라야 하는 등 상당히 制限的이라는 점 셋째, 他國의 入漁에는 本條 第3項에서 沿岸國의 經濟 기타 國家利益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沿岸國의 漁業

또는 經濟政策과 얽혀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外에, 沿岸國의 總許容漁獲量, 自國漁獲能力, 剩餘分割當의 決定에 대한 他國의 效果的인 救濟節次가 없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실효적인 制度로서의 가능성이 우려된다.

다. 2個 以上 沿岸國의 排他的 經濟水域內에 또는 排他的 經濟水域 內外에 걸쳐 棲息하는 魚族(제 63 조)

1. 2個 以上 沿岸國의 排他的 經濟水域內에 同一魚族 또는 關聯魚種의 魚族이 棲息하는 경우, 關係 沿岸國은 本章의 다른 規定을 侵害하지 아니하고 上記 魚族의 保存 및 開發을 相互 調整하고 確保하는데 必要한 措置를 直接 또는 적절한 小地域 또는 地域組織을 통하여 合意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2. 排他的 經濟水域內의 同水域의 以遠 및 隣接한 水域의 양쪽에 걸쳐 同一 魚族 또는 關聯 魚種의 魚族이 棲息하는 경우, 沿岸國 및 그 隣接水域에서의 上記 魚族의 漁撈國家는 그 隣接水域內에 있는 上記 魚族의 保存에 必要한 措置를 直接 또는 적절한 小地域 또는 地域組織을 통하여 合意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本條는 隣接國間的 EEZ에 同一魚種이 서식하는 경우 또는 EEZ과 그 外側에 걸쳐 同一魚種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保存과 開發에 關係國들이 協力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이다. 이는 海洋生物資源의 특성인 移動性を 고려한 것이나, 關係國間的 合意가 開發의

前提條件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즉, 「합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은 합의가 엄격한 法的要件이 아닌 것처럼 解釋된다.

라. 高度回遊性 魚種(제 64 조)

1. 第1附屬書에 記載된 高度回遊性 魚種이 있는 水域에서 그 所屬國民이 漁撈을 하는 沿岸國과 他國家는 排他的 經濟水域內와 그 以遠의 水域에 걸쳐 同魚種의 保存을 確保하고 最適利用 目標을 促進시키기 위하여 直接 또는 적절한 國際組織을 통하여 相互 協力하여야 한다. 적절한 國際組織이 없는 地域에서는 沿岸國과 그 水域에서 所屬國民이 同魚種을 漁獲하는 他國家는 上記 組織의 設立을 위하여 相互 協力하고 또한 그 業務에 參與하여야 한다.

2. 第1項의 規定은 本章의 다른 規定에 追加하여 適用된다.

本條는 高度回遊性 魚種에 대하여 EEZ 内外를 불문하고 各國의 自由로운 開發을 制限하고 關聯國 또는 國際機構間의 協力을 규정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美國은 1974년 EEZ 法案 제 19 조에서 EEZ 内에서는 沿岸國이 EEZ 外에서는 國際機構가 規制基準을 정할 것을 규정하였고, 同年 高度回遊性 魚種에 관한 改正草案에서 호주·뉴질랜드·印度는 國際機構에 의한 規制를 주장한 바 있다.

마. 海洋哺乳動物 (제 65 조)

本 協約의 어떠한 規定도 本章에 規定된 것보다 더 嚴格하게 海洋哺乳動物의 捕獲을 禁止, 制限 및 規制하는 沿岸國의 權利 또는 적절한 경우, 國際組織의 管轄을 制限하지 아니한다. 各 國家는 海洋哺乳動物의 保存을 위하여 相互 協力하여야 하며, 고래의 경우에는 그 保存, 管理 및 研究를 위하여 적절한 國際組織을 통한 特別事業에 相互 協力하여야 한다.

本 條는 海洋哺乳動物에 대하여는 最濫利用의 原則을 적용치 않는 것을 明示한 것으로서 資源利用의 效率性보다는 保存을 강조한 것이다. 단지 本 條에서 規制水域을 明示하지 않고 있는 바, 沿岸國이 管轄權을 넘어서 一方的 措置를 취한다는 것은 非合理的인 것으로 그 規制水域은 EEZ에 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바. 遡河性 魚族 (제 66 조)

1. 遡河性 魚族이 發生하는 母川國은 이들 魚族에 대한 1次的 利益과 責任을 진다.

2. 遡河性 魚族의 母川國은 그 排他的 經濟水域의 外側限界의 陸地側 水域에서의 漁撈과 第3項 第4號에 規定한 漁撈에 대하여 적절한 規制措置를 確立함으로써 그 保存을 確保하여야 한다.

母川國은 第3項과 第4項에 規定된 其他 이들 魚族 漁

撈國과 協議한 後 自國의 母川에서 發生하는 魚族의 全體 許容漁獲量을 確立할 수 있다.

3. 가. 遡河性 魚族의 漁獲은 排他的 經濟水域의 外側 限界의 陸地側 水域에서만 行하여진다.

단, 本 規定이 母川國 以外의 國家에 經濟的 混亂을 超來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排他的 經濟水域 外側 限界 밖의 漁獲에 관하여는 關係國은 保存要求 및 上記 魚族에 관한 母川國의 必要性을 正當히 考慮하여 漁獲活動의 條件에 대한 合意에 到達하기 위하여 繼續 協議 하여야 한다.

나. 母川國은 遡河性 魚族의 其他 漁獲國家의 通常 漁獲量과 操業形態 및 漁獲이 行하여지는 모든 地域을 考慮하여, 이들 國家의 經濟的 混亂을 極小化시키는데 相互 協力하여야 한다.

다. 第나號에 規定한 國家中 母川國과의 合意에 의하여, 特히 該 經費를 分擔하는 등 遡河性 魚族을 再生시키는 措置에 參與한 國家는 母川國의 母川에서 發生한 同魚族의 漁獲에 있어서 母川國에 의하여 特別히 配慮를 받는다.

라. 排他的 經濟水域 以遠의 遡河性 魚族에 관한 規則의 施行은 母川國과 그밖의 關係國間의 合意에 의한다.

4. 遡河性 魚族이 母川國 以外 國家의 排他的 經濟水域의 外側 限界의 陸地側 水域을 回遊하는 경우, 該 國家

는 同魚族의 保存 및 管理에 關하여 母川國과 相互 協力하여야 한다.

5. 遡河性 魚族의 母川國과 그 魚族의 他漁獲國은 本條의 規定을 實施하기 위하여 必要한 경우, 地域組織을 통하여 約定을 締結하여야 한다.

本條에서 遡河性 魚族에 대하여 母川國에 「第1次的 利益과 責任」을 인정하는 것은 母川國에 「排他的 獨占權」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他國 漁業權의 存在를 당연한 前提로 하는 종래의 「優先權」 概念과도 다르다. 이는 兩概念의 中間的 地位를 가지는 特別한 概念으로 인식된다.

「第1次的 利益」은 資源의 開發 및 利用에 關한 母川國의 優越的 立場을 말하고 「責任」은 주로 資源保護의 義務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母川國에 優越的 地位를 인정하는 것은 遡河性 魚族의 育成·保存을 위해서는 母川國이 當該 河川에 대한 措置를 취해야 하고 이에 많은 經費가 所要되며 또한 다른 용도로의 河川利用에 制約을 준다는 이유에서 이다.⁵⁶⁾

그리고 遡河性 魚族은 원칙적으로 EEZ內에서만 漁獲할 수 있다. EEZ에서의 他國漁業은 당연히 母川國과의 協定에 따라 行하여지고, EEZ 外側에서의 漁業은 이를 認定치 않으면 他國의 經濟的 混亂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이 때 母川國은 當該國의 經濟的 混亂을 最少化하기 위해 協力하여야 하고 특히, 그 國家가 資源再生産을 위한 費用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特別한 考慮를 하여야 한다. 이는 實績國 또는 傳統的 漁業國의 繼續的

漁業을 도모하는 취지의 규정이다. EEZ 外側에서 遡河性 魚族의 漁業禁止는 이 魚族의 育成에 母川國의 特別한 經費와 施策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漁業水域을 制限하는 것이다.⁵⁷⁾

사. 降河性 魚種(제 67 조)

1. 降河性 魚種이 그 生活遷의 大部分을 보내는 水域의 沿岸國은 그 魚種의 管理에 대한 責任을 지며, 그 回遊魚의 出入을 保證하여야 한다.

2. 降河性 魚種의 漁獲은 排他的 經濟水域의 外側限界의 陸地側 水域에서만 行하여진다. 排他的 經濟水域에서 漁獲이 行하여지는 경우, 그 水域內의 漁獲에 관한 本條의 規定 및 本 協約의 其他 規定에 따라야 한다.

3. 降河性 魚種이 다른 國家의 排他的 經濟水域을 回遊하는 경우, 그 魚種이 稚魚이든 成魚이든 漁獲을 包含한 同魚種의 管理는 第1項에서 規定한 國家와 關係國間의 協定에 의하여 規制된다.

上記 協定은 그 魚種의 合理的 管理를 保障하여야 하며, 同魚種을 維持하기 위한 第1項에 規定된 國家의 責任을 考慮하여야 한다.

降河性 魚種도 遡河性 魚種과 같이 EEZ 內에서만 漁獲이 可能하다. 단지 遡河性 魚種의 경우 EEZ 外側에서의 漁業禁止가 특정 국가의 경제적 混亂을 초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協議를 통하여 漁業이 인정되나 降河性 魚種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例外條項이 없다.

또한 降河性 魚種에 대하여 沿岸國이 갖는 權限도 溯河性 魚種
에서와 같이 「第1次的 利益」이 부여되지 않고 「管理의 責任」
만이 부과되어 있는 바, 溯河性 魚種의 育成·保存에 소요되는 特
別한 經費나 努力이 溯河性 魚種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인 것이다.

아. 定着性 魚種(제 68 조)

本章의 規定은 第 77 條 第 4 項에서 定義한 定着性 魚種
에는 適用되지 아니한다.

定着性 魚種은 1958 年 大陸棚協約(제 2 조 4 項) 이래 大陸棚
資源으로 인식되어 왔다. 本條는 이러한 立場을 수용한 것으로
定着性 魚種에는 資源의 最適利用原則, 剩餘分에 대한 他國入漁, 內
陸國 및 地理的 不利國의 參加權 등이 排除되고 排他性·獨占성이
강한 大陸棚에 관한 主權的 權利가 適用된다.

3. 內陸國 및 地理的 不利國의 權利

가. 內陸國의 權利(제 69 조)

1. 內陸國은 모든 關係國의 經濟的, 地理的 環境을 考
慮하고 本條 및 第 61 條와 第 62 條의 規定에 따라 衡平
의 原則 위에서 同一 小地域 또는 地域 沿岸國의 排他
的 經濟水域의 生物資源 剩餘分の 적절한 部分의 開發에
參與할 權利를 갖는다.

2. 上記 參與의 條件 및 樣式은 特히 下記 要因을 考
慮하여 兩者, 小地域 또는 地域協定을 통하여 關係國에
의하여 確立된다.

가. 沿岸國의 漁業地域社會 또는 水産業에 有害한 影響의 回避 必要性 ;

나. 本條의 規定에 따라 內陸國이 既存 兩者, 小地域 또는 地域協定에 의하여 다른 沿岸國의 排他的 經濟水域의 生物資源開發에 參與하거나 할 權利가 주어져 있는 範圍 ;

다. 他內陸國 및 地理的 不利國이 沿岸國의 排他的 經濟水域의 生物資源開發에 參與하는 範圍 및 어느 單一 沿岸國 또는 그 沿岸國 一部에 대한 特別한 負擔을 回避할 結果的 必要性 ;

라. 各國 人口의 營養上 必要

3. 沿岸國의 漁獲能力이 排他的 經濟水域에 있는 生物資源의 總許容漁獲量을 漁獲할 수 있는 경우에, 沿岸國 및 他國家는 兩者, 小地域 또는 地域的 基礎에 입각하여 環境에 적절하고 모든 當事國이 만족하는 條件 위에서 同一한 小地域 또는 地域 開發途上 內陸國이 同一 小地域 또는 地域 沿岸國의 排他的 經濟水域의 生物資源開發에 參與하는 것을 許容하는 約定을 締結하도록 相互 協力하여야 한다. 本 規定의 施行에 있어서 第2項에 規定된 諸要因이 또한 考慮되어야 한다.

4. 先進內陸國은 沿岸國이 그 排他的 經濟水域의 生物資源에 他國의 入漁를 許容함에 있어서 漁業地域社會에 대한 有害한 影響 및 그 所屬國民이 慣習的으로 그 排他的 經濟水域에서 漁獲活動을 하여 온 國家의 經濟的 混

亂을 極小化할 必要性을 考慮하는 정도를 參酌하여, 本條의 規定에 의하여 同一 小地域 또는 地域 先進沿岸國의 排他的 經濟水域에 限하여 生物資源 開發에 參與할 權利가 있다.

5. 上記 規定은 沿岸國이 排他的 經濟水域의 生物資源 開發에 대한 同等한 또는 優先的인 權利를 同一 小地域 또는 地域 內陸國에게 부여하는 小地域 또는 地域에서 合意된 約定을 侵害하지 아니한다.

內陸國이란 海岸이 없는 國家를 말하며,⁵⁸⁾ 本條는 協約 제 62 조의 特別規定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內陸國의 入漁權을 明白히 규정 한 것이다.

一般的인 他國入漁에 비해 內陸國의 入漁가 우선하거나 유리하게 許容되는 것으로 生物資源만을 對象으로 한다. 이에 대하여 內陸國 및 地理的 不利國들은 無生物資源에 대한 參加權까지도 주장하였는 바, 그 근거로서 大陸棚은 沿岸國의 背後에 있는 內陸國도 포함된 大陸全體의 延長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결국은 채택되지 못하였다.

한편 海洋에로의 通行權은 1953년 公海協約(제 3 조)에서 一般的 規定을 두고 있으나 새로운 海洋法協約에서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第 10 章에 「內陸國의 海洋出入權과 通過의 自由」를 규정하고 通過國의 領域에 있어서 모든 運送手段(항공기 제외)에 의한 通過의 自由를 인정하였다.

또한 本條는 內陸國을 開途國과 先進國으로 구분하여 開發參加

의 形態를 구별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서 1974년 아프리카 18 個國의 EEZ案은 他國의 生物資源에 대한 參加權은 「開發途上內陸國 또는 기타 地理的 權利國」으로 한정하였고, 東歐 6個國案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本條에서는 NIEO의 要求를 강력히 반영하여 開發途上內陸國과 先進內陸國을 다음과 같이 區分하고 있다. 즉, 開發途上內陸國은 沿岸國이 總許容漁獲量에 가까운 漁獲能力을 가지고 있더라도 生物資源의 開發參與에 대한 衡平한 協定の 締結 등 그 參加權을 인정하고 있다(3항). 반면 先進內陸國은 同一 地域의 先進沿岸國의 EEZ에만 참가할 수가 있도록 규정하였다(4항).

나. 地理的 不利國의 權利(제 70 조)

1. 地理的 不利國은 모든 關係國의 關聯 經濟的 및 地理的 環境을 考慮하고 本條, 第 61 條 및 第 62 條의 規定에 따라서 衡平의 原則 위에서 同一 小地域 또는 地域 沿岸國의 排他的 經濟水域의 生物資源 剩餘分의 적절한 部分에 대한 開發에 參與할 權利를 갖는다.

2. 本 協約의 適用上 “地理的 不利國”은 그 地理的 狀況이 國家人口 또는 一部 人口의 營養攝取 目的에 적합한 魚類供給을 小地域 또는 地域的 他國의 排他的 經濟水域의 生物資源開發에, 依存하는 閉鎖海 또는 半閉鎖海 國家를 包含한 沿岸國 및 그 自體의 排他的 經濟水域을 주장할 수 없는 沿岸國을 뜻한다.

3. 上記 參加의 條件 및 樣式은 특히 下記 要因을 考

慮하여 兩者, 小地域 또는 地域協定을 통하여 關係國에 의하여 確立된다;

가. 沿岸國의 漁業社會 또는 水産業에 有害한 影響의 回避 必要性;

나. 本條의 規定에 따라 地理的 不利國이 既存 兩者, 小地域 또는 地域協定에 의하여 다른 沿岸國의 排他的 經濟水域의 生物資源開發에 參與하거나 參與할 權利가 주어져 있는 範圍;

다. 他 地理的 不利國 및 內陸國이 沿岸國의 排他的 經濟水域의 生物資源開發에 參與하는 範圍 및 어느 單一沿岸國 또는 그 沿岸國의 一部에 대한 特別한 負擔을 回避할 結果的 必要性;

라. 各國 人口의 營養上 必要

4. 沿岸國의 漁獲能力이 排他的 經濟水域에 있는 生物資源의 總許容漁獲量을 漁獲할 수 있는 경우에, 沿岸國 및 他國家는 兩者, 小地域 또는 地域的 基礎에 입각하여 環境에 적절하고 모든 當事國이 만족하는 條件 위에서 同一 小地域 또는 地域에 있는 開發途上地理的 不利國이 同一 小地域 또는 地域 沿岸國의 排他的 經濟水域의 生物資源開發에 參與하는 것을 許容하는 公平한 約定을 締結하도록 相互 協力하여야 한다. 本 規定의 施行에 있어 第3項에 規定된 諸要因이 또한 考慮되어야 한다.

5. 先進地理的 不利國은 沿岸國이 그 排他的 經濟水域의 生物資源에 他國家의 入漁를 許容함에 있어서 漁業地

域社會에 대한 有害한 影響 및 그 所屬國民이 慣習적으로 그 排他的 經濟水域에서 漁獲活動을 하여 온 國家의 經濟的 混亂을 極小化할 必要性을 考慮하는 정도를 參酌하여, 本條의 規定에 의하여 同一 小地域 또는 地域先進 沿岸國의 排他的 經濟水域에 限하여 生物資源 開發에 參與할 權利가 있다.

6. 上記 規定은 沿岸國이 排他的 經濟水域의 生物資源 開發에 대한 同等한 또는 優先的인 權利를 同一 小地域 또는 地域 內陸國에 賦與하는 小地域 또는 地域에서 合意된 約定을 侵害하지 아니한다.

本條의 基本的 內容은 內陸國에 관한 第 69 條와 同一하다. 단, 內陸國과는 달리 地理的 不利國은 그 定義가 明確치 못하다. 제 2 항은 그 目的上 定義를 두고 있는데, 閉鎖海 및 半閉鎖海 沿岸國을 포함하여 그 地理的 狀況이 國民들의 營養供給上 他國의 生物資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國家 또는 自國의 EEZ을 주장할 수 없는 國家를 규정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地理的 要素뿐만 아니라 營養供給이란 要素가 규정되었다는 점이다.

다. 內陸國 또는 地理的 不利國의 權利의 適用除外(제 71 조)

第 69 條 및 第 70 條의 規定은 그 經濟가 排他的 經濟水域의 生物資源開發에 현저하게 依存하고 있는 沿岸國의 경우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本條는 內陸國 또는 地理的 不利國의 開發參加權을 特別한 沿岸國의 경우에 排除하는 것이다. 이러한 例로서는 아이슬랜드가 예시된다.⁶⁰⁾ 그리고 漁業大國이라고 반드시 本條의 沿岸國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本條에서의 문제는 沿岸國은 他國의 入漁를 인정할 義務에서 완전히 면제되는 것인가이다. 즉, 入漁權이 강하게 보장되는 內陸國조차 開發參與가 배제되는 경우라면 기타의 國家에게도 당연히 인정되지 않게 되는 것으로, 一切의 入漁가 배제된 것으로 해석하면, 이들 沿岸國에는 剩餘分이 存在치 않는다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따라서 他國入漁에 관한 一般規定인 協約 제 62 조가 適用되지 않는다. 그러나 本條는 제 69 조와 제 70 조의 규정에 한하여 適用을 排除하여 解釋上的 문제점을 남기고 있다.

라. 權利移轉의 制限 (제 72 조)

1. 生物資源의 開發에 관하여 第 69 條 및 第 70 條에 의하여 規定된 權利는 關係國에 의한 다른 合意가 없는 限 貸貸借 또는 免許, 合作投資의 設立 또는 移轉의 效果를 가져오는 其他 方法으로 第 3 國이나 그 國民에게 直接 또는 間接으로 이를 移轉할 수 없다.

2. 第 1 項의 規定은 關係國이 第 69 條 및 第 70 條에 따르는 權利의 行使를 促進시키기 위하여 第 3 國 또는 國際組織으로부터 技術的 또는 財政的 援助를 받는 것을 排除하지 아니한다. 또, 第 1 項에 規定된 效果를 招來하여서는 아니된다.

本條는 內陸國 또는 地理的 不利國에 인정된 開發參加權이 實質的으로 제 3국에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고 沿岸國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단, 合作事業 등에 대하여 그 自體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方法을 통하여 內陸國 또는 地理的 不利國의 權利가 실질적으로 제 3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第 3 節 各國의 排他的 經濟水域制度 比較分析

EEZ 宣布에 대한 各國의 慣行을 고찰함에 있어 任意的으로 모든 국가의 태도를 하나의 큰 그룹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부정확한 것이며 때로는 그릇된 판단을 내리게 할 수도 있다. 1985년 5월 까지 68 個의 沿岸國과 16 個 이상의 保護領이 EEZ을 선포했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그때까지 발표된 法律, 布告, 宣言의 數로 한정된 것이다. EEZ 宣布의 형태는 다양하며 또한 各國이 그들의 EEZ를 주장하는 방법도 다르다. 法的 文書의 형태도 간략한 宣言文이나 布告文에서부터 EEZ를 몇개의 管轄海域중의 하나로서 규정한 立法例도 있다.

모든 EEZ 宣言을 同一次元에서 고찰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며, 現行 法律文書에 대한 면밀한 분석없이 한 國家의 EEZ 宣言이 海洋法協約上的 규정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도 오류를 범하기 쉽다. 대부분의 各國立法이 一般的으로 海洋法協約上的 EEZ 規定을 따르고 있지만 통례적으로 몇가지 다른점이 발견된다. 이 중에서 몇개의 사소한 단어의 변경이 解釋上的 紛爭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EEZ의 영향 특히, 海洋資源의 利用에 대한 包括的인 分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國家 慣行도 겨우 10年밖에 안되는 初期段階에 머물러 있으며, EEZ에 대한 法規定이 國際적으로 처음 등장한 것이 1982년 海洋法 協約이다. 各國 EEZ 宣言의 主要內容을 表-4에서 비교·분석하였다.

海水, 海底 및 下層土의 生物 및 無生物資源에 대한 主權的 權利에 관하여 各國은 EEZ에 관한 각종 權利를 실제로 행사하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단지 國際法에 따라 미래에 그러한 權利를 주장할 수 있는 權威를 표현한 것인지를 區分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면 Western Samoa는 1977년 200海里 EEZ를 宣言한 상세한 漁業規制條項을 둔 EEZ法을 制定하였는 바, 援權條項으로서 「당분간 그와 비슷한 目的을 위한 어떠한 立法에 다른 규정이 없을 때에 國家首班 (the Head of State)은 內閣의 諮問에 따라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現在 EEZ을 설정하고 있는 68個國과 保護領을 包含한 87個 EEZ 宣言中 66%에 달하는 57個 宣言이 海水, 海流 및 海風으로부터 에너지 생산을 포함한 여타의 經濟活動에 관한 管轄權에 대하여 독특한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71%에 달하는 62個 宣言이 人工島嶼, 施設 및 構造物의 설치 및 사용을 통제하는 權限을 포함하고 있다. Burma, Guyana, Honduras, India, Indonesia, Maldives, Mauritius, Pakistan, Philippines, Seychelles, Sri Lanka, Vanuatu, Yemen (Aden) 등의 13個國은 海洋法協約下에서 沿岸國에게 부여된 權利를 暫定的으로 초과하는 내용의 立法을 하고 있다.

(表-4) EEZ에 대한 海洋法協約과 各國立法例 比較

State	LOS Convention Claims ²					EEZ and Other Claims ³			Comments
	Natural resources	Production of Energy, etc.	Artificial Islands, etc.	Scientific Research	Protection of Environment	Special Areas	Security Claim in Contiguous Zone	Possible Imprisonment	
Antigua and Barbuda	X	X	X	X	X	-	-	Y	
Bangladesh	X	-	X	X	E	-	Y	Y	Claims to artificial islands and scientific research made within continental shelf limits.
Barbados	X	X	X	X	X	-	-	Y	
Burma	X	X	E	X	X	-	Y	Y	
Cambodia	X	X	X	X	X	-	Y	-	
Cape Verde	X	-	X	X	X	-	-	Y	
Colombia	X	-	-	X	X	-	-	-	
Comoros	X	X	-	X	X	-	-	-	
Costa Rica	X	-	-	-	X	-	-	-	
Cuba	X	X	X	X	X	-	-	-	
Djibouti	X	X	X	X	X	-	-	-	
Dominica	X	X	X	X	X	-	-	-	
Dominican Republic	X	X	X	X	X	-	-	-	
Egypt	X	X	X	X	X	-	-	-	
Equatorial Guinea	X	-	X	X	X	-	-	-	
Fiji	X	X	X	X	X	-	-	-	
France	X	-	-	-	X	-	-	-	
Clipperton	X	-	-	-	X	-	-	-	
French Guiana	X	-	-	-	X	-	-	-	
French Polynesia	X	-	-	-	X	-	-	-	
French Southern and Antarctic Lands	X	-	-	-	X	-	-	-	
Guadeloupe	X	-	-	-	X	-	-	-	
Martinique	X	-	-	-	X	-	-	-	
Mayotte	X	-	-	-	X	-	-	-	
New Caledonia	X	-	-	-	X	-	-	-	
Reunion	X	-	-	-	X	-	-	-	
Saint Pierre and Miquelon	X	-	-	-	X	-	-	-	
Tromelin, et al.	X	-	-	-	X	-	-	-	
Wallis and Futuna	X	-	-	-	X	-	-	-	
Gabon	X	X	X	X	X	-	-	-	
Grenada	X	X	X	X	X	-	-	Y	

State	LOS Convention Claims ²					EEZ and Other Claims ³			Comments
	Natural resources	Production of Energy, etc.	Artificial Islands, etc.	Scientific Research	Protection of Environment	Special Areas	Security Claim in Contiguous Zone	Possible imprisonment	
Guatemala	X	X	X	X	X	-	-	-	Claims right to participate in certain navigation and communication activities in EEZ.
Guinea	X	-	-	-	-	-	-	-	
Guinea-Bissau	X	-	-	-	-	-	-	Y	
Guyana	X	X	E	X	E	E	-	Y	Unclear whether EEZ has been implemented
Haiti	X	X	X	X	X	-	Y	-	
Honduras	X	X	E	X	X	-	-	-	
Iceland	X	X	X	X	X	-	-	-	
India	X	X	E	X	E	E	Y	Y	
Indonesia	X	X	E	X	X	-	-	-	
Ivory Coast	X	X	X	X	E	-	-	-	
Kenya	X	X	X	X	X	-	-	-	
Kiribati	X	X	X	X	X	-	-	-	
Korea, Dem. People's Rep. of	X	-	X	X	-	-	-	-	Based on a report of a decree
Madagascar	X	X	X	X	X	-	-	-	
Malaysia	X	X	X	X	E	-	-	-	
Maldives	X	X	E	X	-	-	-	Y	Foreign fishing vessels require consent prior to entering EEZ
Mauritania	X	X	X	X	X	-	-	-	
Mauritius	X	X	E	X	E	E	-	Y	
Mexico	X	X	X	X	X	-	-	-	
Morocco	X	X	X	X	X	-	-	-	
Mozambique	X	-	-	-	-	-	-	-	
New Zealand	X	X	X	X	X	-	-	-	Detailed fishing regulations.
Cook Islands	X	X	X	X	X	-	-	-	Detailed fishing regulations.
Niue	X	X	X	X	X	-	-	Y	Detailed fishing regulations.
Tokelau	X	X	X	X	X	-	-	-	Detailed fishing regulations.
Nigeria	X	-	X	X	-	E	-	Y	
Norway	X	X	X	X	X	-	-	-	
Oman	X	-	-	-	-	-	-	-	
Pakistan	X	X	E	X	E	E	Y	Y	Possible added restrictions may include consent to lay cables and pipelines.

State	LOS Convention Claims ²					EEZ and Other Claims ³			Comments
	Natural resources	Production of Energy, etc.	Artificial Islands, etc.	Scientific Research	Protection of Environment	Special Areas	Security Claim in Contiguous Zone	Possible Imprisonment	
Papua New Guinea									Unclear whether National Seas Act 1977 establishes exclusive economic zone.
Philippines	X	X	E	X	X	-	-	Y	
Portugal	X	X	X	X	X	-	-	Y	May establish regulations with regard to pipelines and submarine cables.
Qatar	X	-	-	-	-	-	-	-	
Saint Christopher and Nevis	X	-	-	-	-	-	-	-	
Saint Lucia	X	X	X	X	X	-	-	-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X	X	X	X	X	-	-	-	
Sao Tome and Principe	X	X	X	X	X	-	-	-	Laying of pipeline or submarine cables subject to agreement.
Seychelles	X	X	E	X	E	E	-	Y	
Solomon Islands	X	X	X	X	X	X	-	-	
Spain	X	-	-	-	X	-	-	-	Possible restrictions to navigation of fishing vessels.
Sri Lanka	X	X	E	X	E	E	Y	-	Pollution prevention zone extends to EEZ limits.
Suriname	X	X	X	X	X	-	-	Y	
Thailand	X	X	X	X	X	-	-	-	
Togo	X	-	-	-	-	-	-	-	
Tonga	X	X	X	X	X	-	-	-	
Trinidad and Tobago	X	X	X	X	X	-	-	-	
Tuvalu	X	X	X	X	X	-	-	-	
UAE	X	-	X	X	X	-	-	-	
US	X	X	X	-	X	-	-	-	
USSR	X	X	X	X	E	E	-	-	
Vanuatu	X	-	E	X	X	-	-	Y	
Venezuela	X	X	X	X	X	-	-	-	
Vietnam	X	X	X	X	X	-	Y	-	
Western Samoa	X	X	X	X	X	-	-	-	Detailed fishing regulations.
Yemen, People's Dem. Rep. of	X	X	E	X	X	-	Y	Y	

X: Claims that generally follow the LOS Convention

E: Claims that exceed the LOS Convention

Y: Claims made that are not provided for in the LOS Convention

資料) R.W. Smith, Exclusive Economic Zone Claims, pp.35-37.

海洋法協約 제 60 조에서 施設 및 構造物에 대한 管轄權을 명백하게 EEZ 내에서의 經濟活動과 관련 지우고 있다. 위에서 열거한 13 個國들은 국내법에 그것들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들면, Burma는 제 18 조(b)항에서 「國家는 生物 및 無生物 天然資源의 探查·開發 또는 航海의 安全, 其他의 目的에 필요한 人工島嶼, 近海 터미널, 施設 및 다른 構造物과 裝置 등의 建設, 維持 또는 運用에 대한 排他的 權利와 管轄權을 갖는다」고 규정하였다.⁶¹⁾ 裝置 (device)라는 단어와 其他의 目的 (for any other purpose)이라는 문구의 添加는 중요한 意味가 含蓄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Guyana, India, Maldives, Mauritius, Pakistan, Seychelles, Vanuatu 등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Honduras, Indonesia, Philippines 과 Yemen 의 경우는 약간 다르다.

科學的 調査와 環境保護에 대한 管轄權을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것들을 海洋法協約上的의 내용과 일치시키고 있다. 많은 國家들의 法律이 海洋環境保護에 관한 排他的 管轄權을 주장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이들 國家들의 法律이 근거로 한 海洋法協約의 初期 草案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排他的 管轄權을 規定하였기 때문이다. 이 단어는 후에 沿岸國과 旗國이 EEZ內에서의 海洋汚染을 감소시키고 통제하기 위한 國際基準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책임을 分擔한다는 事實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정된 것이다.

環境保護와 관련하여 海洋法協約上的의 내용을 초과하는 宣言은 Bangladesh와 Ivory Coast에 의해 행해졌다. Ivory Coast 「國家는

資源과 關係없이 海洋環境의 汚染을 防止, 減少 또는 統制하기 위한 어떠한 措置도 採擇·執行할 수 있는 權利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Bangladesh는 海洋汚染을 防止하고 統制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權利를 主張한다. 海洋法協約은 제 194 조 1항에서 國家에게 「使用可能한 最善의 方法과 各國 單獨이건 合同이건 그들의 能力에 따라 여하한 海洋環境汚染의 防止, 減少 및 抑制를 위하여 同 協約과 일치되는 모든 措置를」 취할 수 있도록 許用하고 있다. 海洋法協約과 Bangladesh 또는 Ivory Coast가 행한 宣言의 適用間에는 重大한 差異點이 있을 수 있다.

Malaysia의 EEZ 法案도 또한 海洋法協約의 內容을 초과한 몇몇 規定을 두고 있다. 즉, 「어떠한 油類 또는 油類汚染物質이 포함된 合成물이 船舶, 陸上汚染源, 施設, 裝置 또는 航空機로부터 大氣 또는 海洋投棄를 통하여 EEZ에 버려지거나 流入되는 경우」를 언급하고 있다. 油類나 油類汚染物質의 定義가 일반적으로 수락된 國際基準보다 넓으며 동시에 EEZ내의 船舶通航에 대하여 官吏에게 強制權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規定들이 엄격하게 적용된다면 航行과 飛行의 自由를 과도하게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海洋法協約 제 194 조 4항은 特別히 「國家들은 同協約과 일치하게 그들의 權利를 實行하거나 義務를 履行함에 있어 다른 國家들에 의해 수행되는 活動을 不公正하게 妨害하는 것 등을 삼가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表-4의 6번째 項目은 EEZ內에 特定 또는 指定水域을 設定하는 宣言과 關係된 것이다. 다음의 9個國은 그러한 水域의 設定

을 허락하는 規定을 두고 있다.

Bangladesh, Guyana, India, Mauritius, Nigeria, Pakistan,
Seychelles, Sri Lanka, U.S.S.R.

Seychelles 는 EEZ 法 제 9 조에서 大統領에게 大陸棚 또는 排他的 經濟水域내의 어떠한 水域에 指定水域을 선포할 수 있는 權限을 주고 있다. 이 指定水域 범위내에서 大統領은 海洋法協約 제56 조에 열거된 많은 項目들에 대한 管轄權을 선언할 수 있고 그 위에 : (v) 指定水域과 관련된 關稅와 다른 財政問題, (vi) 指定水域에 대한 外國船舶의 出入 및 通過에 관한 規則, (vii) Seychelles 의 國益을 손상시키지 않는 航海의 自由를 保障하기 위한 航路帶, 分離通航制度 또는 기타 方法의 設置 등에 대해서도 大統領이 管轄權을 主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宣言들은 海洋法協約에서 許容하고 있는 權利를 초과한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EEZ내의 特別水域 設定은 安全水域이나 特殊狀況 아래에서의 汚染規制와 관련된 水域으로 制限된다. 만일 Seychelles 과 같은 유형의 法律이 수용된다면 EEZ에서 他國의 活動에 대하여 領海보다도 엄격한 規制가 가해질 可能性이 있고 그 결과로서 航行權이 심각하게 危脅받게 된다. Guyana, India, Mauritius, Nigeria, Pakistan 및 Sri Lanka 도 同一한 規定을 갖고 있다.

表- 4 의 마지막 두 項目은 海洋法協約에 의해 附與되지 않은 主權 또는 管轄權에 관한 사항이다.

表-4 의 7 번째 項目은 接續水域 (Contiguous Zones)에서의 安全保障 (Security)을 주장하는 國家들을 열거한 것이다. 海洋法協約

은 國家가 領海의 基線으로부터 24 海里를 초과하지 않는 範圍에서 接續水域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⁶²⁾

이 接續水域內에서 沿岸國은 다음과 같은 事項에 대하여 필요한 措置를 취할 수 있는 바, 그 첫째가 沿岸國의 領海內에서의 關稅, 財政, 出入國管理 또는 衛生法規의 違反防止를 위한 경우이고, 둘째는 沿岸國의 領土 또는 領海內에서 發生한 前記 法規違反에 대한 處罰이 필요한 경우이다. 海洋法協約은 接續水域內에서 安全을 이유로 管轄權을 인정한 條項은 없다. 그러나 Bangladesh, Burma, Cambodia, Haiti, India, Parkistan, Sri Lanka, Vietnam, Yemen (Aden) 등의 9 個國은 安全을 이유로 한 管轄權을 自國法上에 認定하고 있는 國家들이다.

이들 중에서 Haiti 와 Yemen 을 제외한 7 個國이 모두 西南 또는 南東아시아 國家라는 뚜렷한 地域的 特徵을 가지고 있다.

끝으로 表-4 의 8 번째 項目에 열거한 國家들은 그들 國家의 EEZ 法에 同法을 違反한 者를 禁錮에 처할 수 있는 規定을 두고 있는 國家들이다. 이 規定은 自國의 漁業規制를 위반한 者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海洋法協約은 제 73 조 3 항에서 沿岸國이 關係當事國의 同意없이 法規違反者를 禁錮刑에 처하는 것을 명백하게 禁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20 個國은 法規違反에 대하여 禁錮刑 등을 규정하고 있다.

Antigua and Barbuda, Bangladesh, Barbados, Burma, Cape Verde, Grenada, Guinea-Bissau, Guyana, India, Maldives, Mauritius,

Niue, Nigeria, Pakistan, Philippines, Portugal, Seychelles, Suriname, Vanuatu, Yemen (Aden).

비록 表-4에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들 중 몇몇 국가들은 自國 官吏들에게 보다 넓은 團束權限을 부여하는 一般 援權規定을 됴으로써 EEZ내에서의 制限을 強化하고 있다. 一例로써, Barbados는 EEZ法 제 8 조에 「總督은 命에 의하여 그 命에 特 定되어 있는 例外와 制限을 고려하여 EEZ 또는 그에 관련된 水域에 대하여 어떠한 法律의 適用도 확장시킬 수 있으며, 그 擴 張된 法律은 이것이 本法에 의해 制定된 것과 같이 EEZ과 關 련하여 効力を 갖는다」는 包括的인 援權規定을 두고 있다. 비록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의 規定을 두고 있는 國家는 적어도 10餘個國에 이른다.

비록 國家들이 地理的으로 EEZ을 넓히지는 않겠지만, 현존하는 水域의 限界內에서 추가적인 管轄權이나 團束規定을 들 可能性이 높다. 第2次 世界大戰 以來 海洋에 대한 閉鎖運動이(Eclosure Movement) 일어나 隣接海洋에 대한 沿岸國의 管轄權이 擴大되어 왔 다. 海洋法協約에서 EEZ을 公式化함에 있어 國際社會는 傳統的인 公海自由의 原則을 유지하고 동시에 沿岸國의 權利를 既存의 것과 調和시켜야 하는 米묘한 狀況에 놓여있다.

第 4 章

結 論



지금까지 새로운 國際秩序의 形成에 대한 두개의 分野 즉, 國際經濟分野와 國際海洋法分野에서의 新秩序의 制度的 發展過程과 그 內容을 살펴 보았다.

NIEO는 제 2차 世界大戰 이후의 國際社會를 再編成하는데 주요한 思想的 背景을 제공한 것으로, 1970年代 중반 이후의 國際社會는 흔히 第3世界로 분류되는 開途國들을 排除하고는 어떠한 문제도 論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유엔總會, UNCTAD 및 第3次 유엔海洋法會議 등 일련의 國際會議에서 開途國의 영향력이 크게 부각되었고,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石油 등의 天然資源의 힘으로 아랍어가 유엔共用語로 채택되는 등 開途國들의 實質的인 國際的地位向上에 관한 예는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NIEO의 要求가 國際經濟的인 측면에서 實地적인 利益을 獲得할 수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단지, 國際社會에서 開途國 간의 連帶性을 유지하면서 既存의 國際秩序를 점진적으로 수정하고, 南北問題에 관한 解決策을 모색하는 것이 전망된다.

한편 NIEO는 國際海洋秩序의 再編成에 대하여 第3次 유엔海洋法會議의 開催經緯와 討議過程을 통하여 深海底에 대한 人類共同遺產概念과 EEZ 賦存資源에 대한 沿岸國의 主權的 權利의 부여라는 두가지 대표적인 特徵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특히, EEZ에 대해서는 그 資源에 대한 沿岸國의 權利賦與와 管轄水域의 範圍擴張이 NIEO의 理念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러나 EEZ 制度의 채택으로 美國·蘇聯·日本 등 海洋先進國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 갔으며 資本과 技術이 부족한 開途國들의 경우

에 自國 EEZ의 開發·管理 등에 대두되는 문제점이 적지 않다.

따라서 海洋法協約상의 EEZ 制度는 開途國 입장에서 볼 때 先進國과의 資本 또는 技術協力を 통한 效率的 利用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先進開途國으로서 新海洋秩序의 실제적인 가동에 開途國과의 協력으로 원활한 海洋進出을 도모하는 한편, 半閉鎖海로 둘러싸인 地理的 不利國으로서 周邊海洋에서의 200 海里 時代에 대비하여 海洋法協約상의 地理的 不利國에 대한 特惠條項의 適用과 傳統的 漁業國으로서의 考慮를 中共 및 日本에 要求하여야 할 것이다.

즉, 東北아시아의 海洋地域的 協力關係에 있어서 韓國은 유엔 海洋法協約에서 규정하고 있는 地理的 不利國인 開途國으로서, 그 權利를 保障받기 위한 對備策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 對備策으로서의 첫째, 開途國 및 先進國의 海洋政策 및 海洋法에 관한 持續的인 研究 둘째, 各種 國際會議에서 韓國의 地理的 不利國으로서의 地位 主張 및 開途國들과의 連帶感 維持 셋째, 周邊海洋에 대한 資源量 把握과 境界劃定方式 檢討 넷째, 海洋地域協力 增進을 위한 周邊國家 간의 地域的 國際機構 設立 推進 등을 提示하고자 한다.

脚 註

- 1) 閔萬植, 中南美의 政治와 經濟 (서울: 日新社), 1982, pp.24~25.
- 2) D.K. Frildhouse, Economic Aspects of Colonialism, in D.L. Sills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 Nationalism, Vol.II (New York: Irwin), 1963, p.11.
- 3) Lomé 第1次 協約은 Lomé 第2次 協約으로 擴大되었는 바, 이 協約에는 1979年 11月 EC國家와 ACP 57個國(46個國에서 增加)간에 署名되었으며 이것은 1984年까지 有效하였음. Africa Research Bulletin,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Series, 1980. 2.15, p.5531.
- 4) Arvid Pardo in U.N. Doc. A/C. 1/PV 1515 (November 1, 1967), pp.1-15.
- 5) U.N. G.A. Res. 2467 (XXIII) (1962. 12. 21).
- 6) U.N. G.A. Res. 2574 (XXIV) (1969. 12. 15).
- 7) U.N. G.A. Res. 2749 (XXV) (1970. 12. 17).
- 8) U.N. G.A. Res. 2750 (XXV) (1970. 12. 17).
- 9) U.S. Department of State, U.S. Position on Convening o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aw of the Sea,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I.L.M.), Vol.9, No.4, 1970, pp.833-837.
- 10) Declaration on the Latin American States on the Law of the Sea: Lima 宣言, 1970. 8.8., I.L.M., Vol.10, No.1, 1971, pp.207-214; Statement on the Seabed, NAC/CONF.3/RES.11, Lusaka, 1970. 9.8 - 10; I.L.M., Vol.10, No.1, 1971, p.219.

- 11) Nasila S. Rembe, Africa and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Alphen aan den Rijn: Sijthoff & Noordhoff), 1980, pp.41-42.
- 12) U.N.G.A. Res. 2750 (XXV) (1970. 12. 17).
- 13) S. Oda, The Law of the Sea in Our Time-II: The United Nations Seabed Committee, 1968-1973 (Leyden: Sijthoff), 1977, p.153.
- 14) U.N.G.A. Res. 3029B (XXVII) (1972. 12. 11).
- 15) J.R. Stevenson & B.H. Oxman, The Thi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f the Law of the Sea; The 1974. Caracas Session,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J.I.L), Vol.69, 1975, pp.3-4.
- 16) Reynaldo Galindo Pohl, Latin America's Influence and Role in UNCLOS III,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O.D.I.L), Vol.7, 1979, p.75.
- 17) D. Vignes, Will the Third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Work According to the Consensus Rule?, A.J.I.L., Vol.69, 1975, pp. 123-124.
- 18) U.N.G.A. Res. 3067 (XXVIII) (1973. 11. 16).
- 19) Rules of Procedures 은 Doc. A/CONF. 62/30/Rev. 1을 참조할 것 .
- 20) Consensus에 관해서는 Erik Suy, The Meaning of Consensus in Multilateral Diplomacy, Festschrift Roling, 1977, pp.259-274.

- 21) Consensus란 公式的인 反對意見의 不在를 意味한다.
- 22) U.N. Doc. A/C. 1/PV1515, pp.1-15.
- 23) N.S. Rembe, op. cit., pp.77-78.
- 24) U.S. Proposal on Prohibiting Emplacement of Nuclear Weapons on Seabed and Ocean Floor, I.L.M., Vol.9, No.2, 1970, pp.392-395.
- 25) 金楨鍵, 國際條契集(서울:博英社), 1981, pp.254~255, pp.258~259.
- 26) Barry Buzan, Naval Power, the Law of the Sea, and the Indian Ocean as a Zone of Peace, Marine Policy, Vol.5, No.3, 1981, p.195.
- 27) Ibid., p.194.
- 28) 이에 대해 깊이 있는 分析은, Lewis M. Alexander, The 'disadvantaged' States and the Law of the Sea, Marine Policy, Vol.5, 1981, pp.186-193.
- 29) 10個國은 Botswana, Burundi, Chad, Lesotho, Mali, Malawi, Niger, Rwanda, Uganda, Upper Volta. N.S. Rembe, op. cit., p.143.
- 30) 「公海에 관한 Geneva 協約」, 제 3 조.
- 31) 이에 대한 概要는, U.N. Doc. A/CONF. 62/C.2/L. 29 in UNCLOS III Official Records Vol.III, pp.206-207.
- 32) R.P. Anand, Legal Regime of Seabed and the Developing Countries (Leyden: Sijthoff), 1976, p.158.
- 33) Ibid., p.159.
- 34) 「國家管轄權 範圍 밖의 海底, 海床 및 下層土를 規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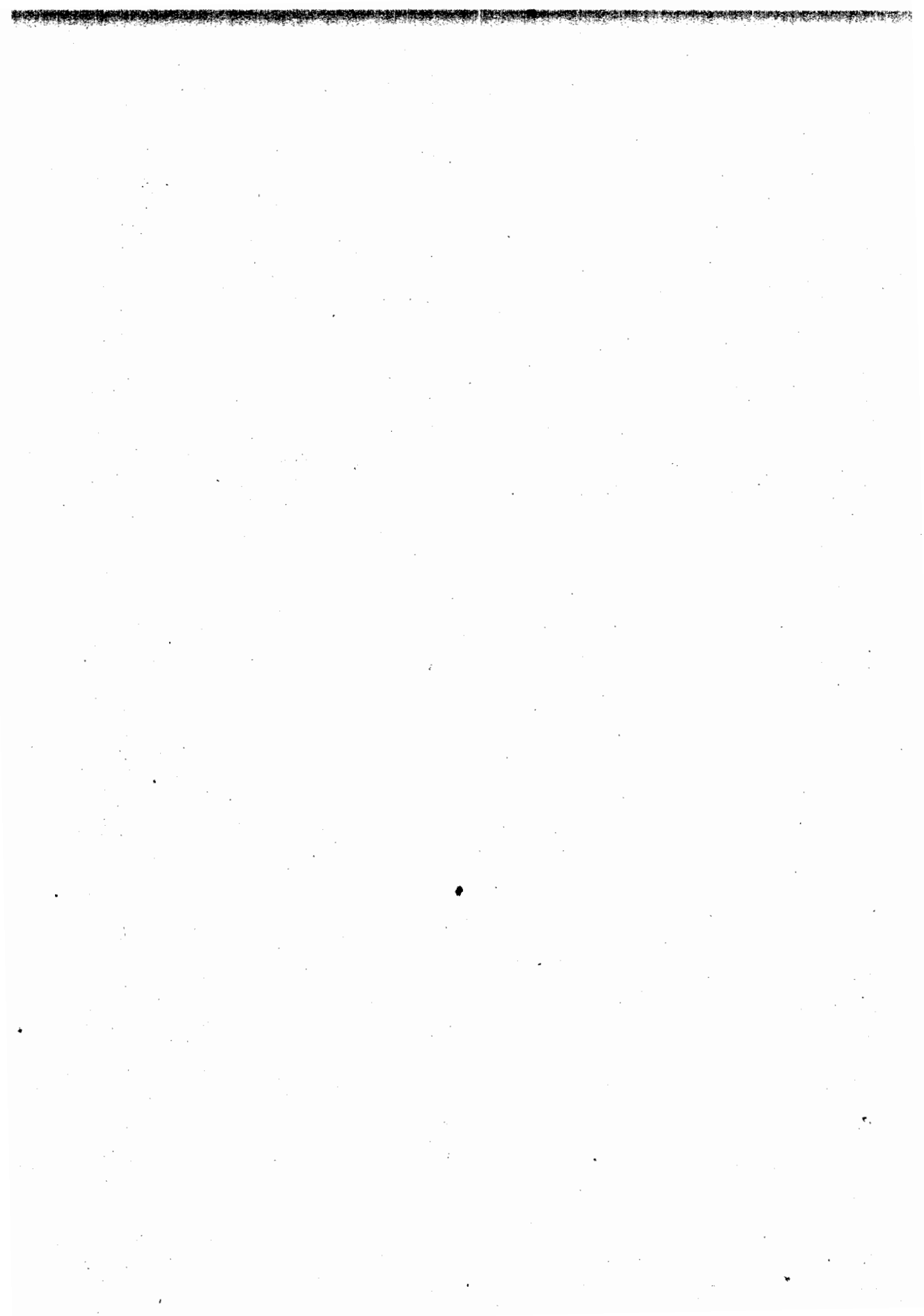
하는 原則의 宣言」이라고 불리우는 이 宣言은 1970年 12月 17日 採擇된 것으로서 沿岸國 主權下에 있는 大陸棚 外側에 어느 國家의 管轄에도 속하지 않는 深海底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人類의 共同遺產”이라는 새로운 概念에 의하여 深海底와 그 資源이 人類全體의 利益을 위해 開發될 수 있도록 새로운 國際制度和 國際組織을 設立할 것을 제창하고 장차 設立될 國際制度의 基礎가 되는 15項目의 原則을 宣言했다.

- 35) 1969年 유엔總會에서 「深海底開發의 Moratorium에 관한 決議」로서 채택된 이 決議를 적당한 國際機構를 포함한 國際制度가 設立되기까지는 어느 國家, 自然人 그리고 法人도 深海底의 資源에 대하여 開發活動을 할 수 없으며 그 資源에 대하여 權利를 主張할 수 없다는 것을 그 內容으로 한다.
- 36) U. N. G. A. Res. 3029 B (XXVII) (1972.12.11).
- 37) Lima 宣言의 全文은 I. L. M., vol. 10, 1971, pp. 207~214.
- 38) Latin 諸國의 地域的 宣言은 Lima 宣言외에, 「沿岸國의 權利에 관한 Montevideo 宣言」, 「카리브海 沿岸國家들의 Santo Domingo 宣言」 등이 있다.
- 39) Africa의 地域的 會議나 宣言에는, 「海洋法에 관한 YAOUNDE 세미나」, 「海洋法 諸問題에 관한 OAU 宣言」 등이 있다.
- 40) U.N. Doc. A/CONF. 62/23 in UNCLOS III, Official Records, Vol. III, p. 3.
- 41) U.N. Doc. A/CONF. 62/C. 2/L. 29 in Ibid., pp. 206-209;
U.N. Doc. A/CONF. 62/C. 2/L. 39 in Ibid., p. 216.
- 42) N.S. Rembe, op. cit., p. 145.

- 43) U.N. Doc. A/AC. 138/SC. III/L. 40.
- 44) U.N. Doc. A/CONF. 62/C. 2/L. 21.
- 45) UNCLOS III, Official Records, Vol.I, Second Committee, p.253, para. 10.
- 46) Zambia 代表의 發言, Ibid., 34th meeting, p.258, para. 66.
- 47) U.N. Doc. A/CONF. 62/L. 23; U.N. Doc. A/CONF. 62/L. 39.
- 48) UNCLOS III, Official Records, Vol.I, Plenary meeting (42nd meeting), p.185, para. 32.
- 49) Supra note 39.
- 50) Lewis M. Alexander, op. cit., pp.191-192.
- 51) 海洋法協約에서 內陸國에 대한 언급은 이밖에도, i) ISA 理事會構成에서의 特殊代表權(제 161 조), ii) 深海底의 開發과 관련된 條項(제 148, 152, 160 조)이 있다.
- 52) Lewis M. Alexander, op. cit., p.193.
- 53) Robert H. Manley, Developing Nation Imperatives for a New Law of the Sea: UNCLOS I & III as Stages in the International Policy Process, O.D.I.L., Vol.7, 1979, p.14.
- 54) 中村 洸, 排他的 經濟水域의 法的性質, 法學教室, 第34號 p.15~16.
- 55) 川上健三, 國際漁業制度의 動向と對策, 海洋法と海洋政策(日本外務省), 第5號, 1982, p.15.
- 56) Freland: Draft Article on Anadromous Species, Doc. A/CONF. 62/C. 2/L.4.
- 57) Canada: Working Paper on the special case of Salmon the most important Anadromous Species, Doc. A/CONF. 62/C. 2/L. 81.

- 58) 海洋法協約 제 124 조 1 항 (가)
- 59) D.P. O'Connell,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Vol.I
(Oxford: Clarendon Press), 1982. p.592.
- 60) 小田滋, 海洋法(上卷)(東京:有斐閣), 昭和 54年, p.219.
- 61) Burma, Territorial Sea and Maritime Zones Law (1977)
제 18 조 (b)항
- 62) 海洋法協約 제 33 조 2 항.

參 考 文 獻



1. Books

- 姜聲鶴譯，不平等한 世界，Tucker, Robert W. 著（서울：博英社），
1984.
- 金星鑰，第三世界와 非同盟運動（서울：高麗書籍株式會社），1978.
- 閔萬植，中南美의 政治와 經濟（서울：日新社），1982.
- 成均館大學校 社會科學研究所編，第三世界の 政治와 經濟（서울：成均
館大學校出版部），1985.
- 世界平和教授協議會，第三世界와 韓國（서울：一念），1984.
- 申正玄譯，國際政治經濟論，Spero, J. E. 著（서울：大學文化社），
1984.
- _____編，第三世界論（서울：日新社），1986.
- 유임수, 전형譯，新國際經濟秩序의 摸索（서울：평민사），1986.
- 張孝相，國際經濟法（서울：博英社），1985.
- 趙容範譯，第三世界の 經濟構造，湯淺越男著（서울：풀빛），1981.
- 崔佑吉，第三世界와 深海底，서울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4.
- 河環根，第三世界 政治論（서울：한길사），1983.
- 小田滋，海洋法（上卷）（東京：有斐閣），1979.
- 日本海洋協會，新海洋法條約의 締結에 伴우 國內法制의 研究，第3號，1984.
- Churchill, R.R., Lowe, A.V., The Law of the Sea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83.
- Dupuy, Rene-Jean, The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 the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Impact of Science on Society (Paris:UNESCO),1983.
- Hossain, Kamal, Legal Aspects of the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London: Frances Pinter Ltd.), 1980.
- Lay, S.H., Churchill, R., Nordquist, M. ed., New Directions in the Law of the Sea Vol.I, II (New York: Oceana Publications, Inc), 1973.
- Nordquist, Myron H. ed.,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 A Commentary Vol.I (Dordrecht: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5.
- O'Connell, D.P.,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Vol.I, II (Oxford: Clarendon Press), 1982.
- Oswaldo de Rivero B., New Economic Order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Law (Oxford: Pergamon Press), 1980.
- Oxman, Bernard H., Caron, David D., Buderl, Charles L.O., Law of the Sea-U.S. Policy Dilemma (San Francisco: ICS Press), 1983.
- Rembe, N.S., Africa and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Alphen aan den Rijn: Sijthoff & Noordhoff), 1980.
- Rozakis, C.L., Stephanou, C.A., The New Law of the Sea (Amsterdam: Elsevier Science Publishers B.V.), 1983.
- Smith, Robert W., Exclusive Economic Zone Claims-an Analysis and Primary Documents (Dordrecht: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6.

Szekely, Alberto, Latin America and the Development of the
Law of the Sea Vol.I (New York: Oceana Publications,
Inc.), 1976.

United Nations, The Law of the Sea - National Legislation o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the Economic Zone and
the Exclusive Fishery Zone (New York: Office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for
the Law of the Sea), 1986.

2. Articles

金 燦 奎, 經濟水域에 관한 考察, 司法行政, 第 14 卷 8 號, 1983.

8.

盧 尹 煥, 新國際經濟秩序와 그 對策, 진주교대논문집 (인문, 사회)
제 25 집, 1984.

李 長 熙, 新國際經濟秩序와 國際開發法, 安東大學論文集, 第 4 輯,
1982.

申 重 澈, 新國際經濟秩序運動의 展開過程과 開發途上國貿易의 將來,
崇田大學校論文集, 第 14 輯, 1984.

川 上 健 三, 國際漁業制度의 動向と對策, 海洋法と海洋政策, 日本外務省
第 5 號, 1982.

Alexander, Lewis M., Hodgson, Robert D., The Impact of the
200-Mile Economic Zone on the Law of the Sea, San
Diego Law Review, Vol.12 No.3, 19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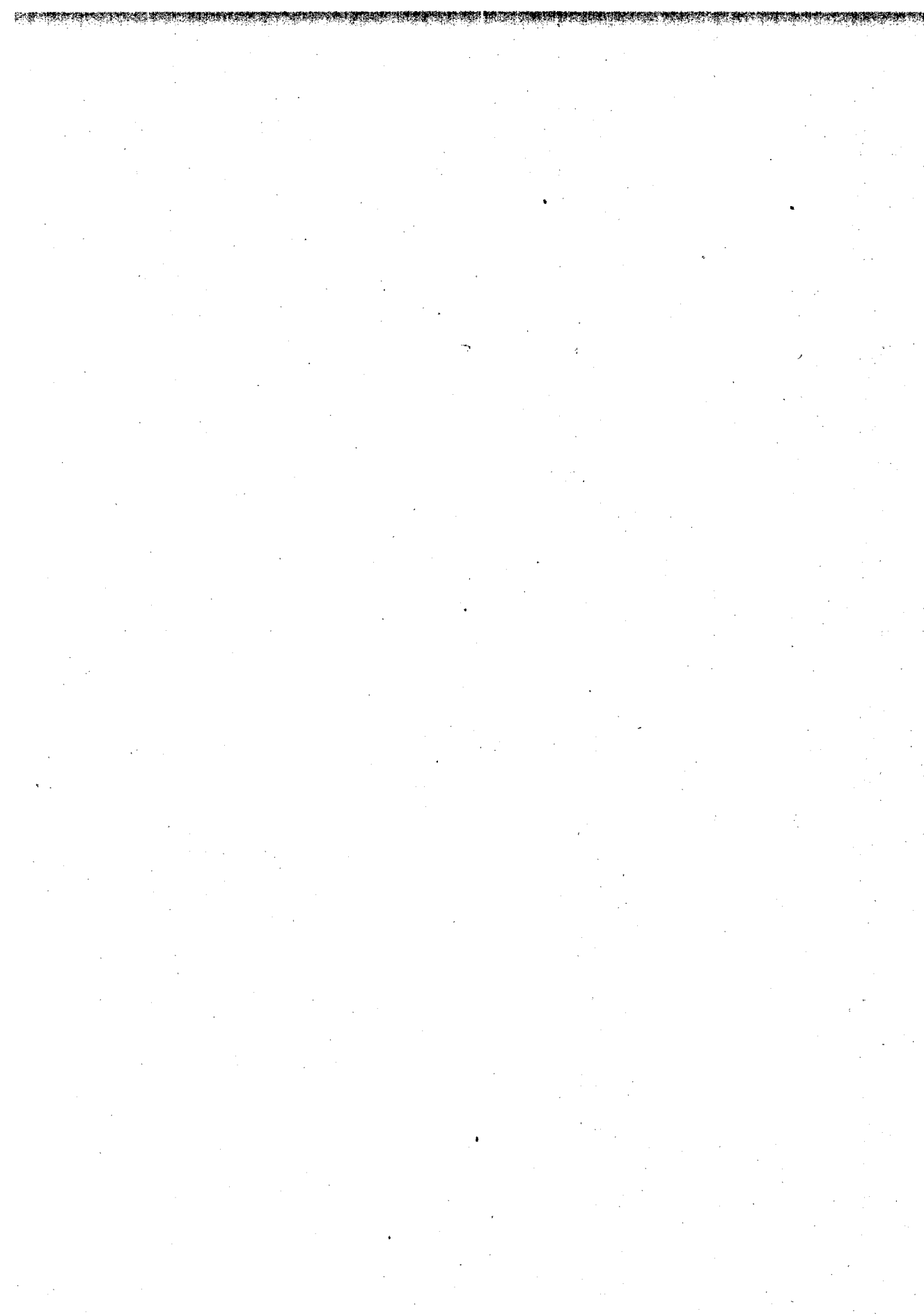
Alexander, Lewis M., The 'disadvantaged' States and Law of

- the Sea, Marine Policy, Vol.5, 1981.
- Burke, William T., Exclusive Fisheries Zones and Freedom of Navigation, San Diego Law Review, Vol.20, No.3, 1983.
- Buzan, Barry, Naval Power, the Law of the Sea, and the Indian Ocean as a Zone of Peace, Marine Policy, Vol.5, No.3, 1981.
- Clingan, Thomas A. Jr., Emerging Law of the Sea: The Economic Zone Dilema, San Diego Law Review, Vol.14, No.3, 1977.
- Fleischer, Carl A., The Right to a 200-Mile Exclusive Economic Zone or a Special Fishery Zone, San Diego Law Review, Vol.14, No.3, 1977.
- Friedman, Alan G., Williams, Cynthia A., The Group of 77 at the United Nations: An Emergent Force in the Law of the Sea, San Diego Law Review, Vol.16, No.3, 1979.
- Manley, Robert H., Developing Nation Imperatives for a New Law of the Sea: UNCLOS I & III as Stages in the International Policy Process, O.D.I.L., Vol.7, 1979.
- Morris, Michael A., Maritime geopolitics in Latin America, Political Geography Quarterly, Vol.5, No.1, 1986.
- Pohl, R.G., Latin America's Influence and Role in UNCLOS III, O.D.I.L. Vol.7, 1979.

Pollard, Duke E., The Exclusive Economic Zone - The Elusive
Consensus, San Diego Law Review, Vol.12, No.3,
1975.

Stevenson, J.R., Oxman, B.H., The Third United Nations Confer-
ence of the Law of the Sea: The 1974. Caracas
Session, A.J.I.L., Vol.69, 1975.

附 録



1. 아시아·아프리카會議의 最終聲明書

(1955年 4月 18日~24日, 반등에서 開催)

버마·실론·印度·인도네시아 및 파키스탄 政府의 招請에 의한 아시아·아프리카會議는 1955年 4月 18日부터 24日까지 반등에서 開催되었다. 主催國 이외에 다음 24個國이 本會議에 參加했다.

1. 아프가니스탄 2. 캄보디아 3. 中華人民共和國 4. 이집트
5. 이디오피아 6. 가나 7. 이란 8. 이라크 9. 日本 10. 요르단
11. 라오스 12. 레바논 13. 리베리아 14. 리비아 15. 네팔 16.
필리핀 17. 사우디아라비아 18. 수단 19. 시리아 20. 타이 21.
터어키 22. 越盟 23. 베트남 24. 예멘

아시아·아프리카 會議는 아시아·아프리카 諸國의 共同的 利害關係 및 共同關心의 問題를 檢討하고, 또한 각 國民이 經濟的, 文化的 協力を 보다 完全하게 達成할 수 있는 方法과 手段을 論議했다.

A. 經濟協力

1. 아시아·아프리카會議는 아시아·아프리카地域의 經濟開發을 促進시켜야 할 緊急性을 認定했다. 여기에서는 相互利益과 主權의 尊重을 基礎로 한 經濟協力에 대해 一般的인 欲望이 表明되었다. 參與國 내의 經濟協力에 관한 각 提案은 外資導入을 包含한 同地域 외의 諸國家와 協力할 欲求도 必要性도 否定하지는 않는다. 나아가서 國際的 協定 내지 雙務協定을 통해 同地域外部로부터 一部 國家가 받은 援助는 그들의 開發計劃을 實施하는데 貴重한 貢獻을

하였다는 것을 認定한다.

2. 參與諸國은 相互 다음과 같은 形態의 技術援助를 最大限으로 提供한다는데 合意했다. 즉, 專門家, 訓練生, 開發目的을 위한 試驗事業과 施設, 技術情報(knowhow)의 交換 및 既存 國際機關과의 協調로 技術知識 및 機能技術의 輸入을 위한 國家的 및 可能하면 地域的 訓練·研究機關의 設置 등이다.

3. 아시아·아프리카會議는 다음 事項을 勸告하였다. 즉, UN經濟開發特別基金의 早期 設立, 國際復興開發銀行의 아시아·아프리카諸國에 대한 그 資金의 大部分의 割當, 同等投資事業을 包含한 國際金融公社의 早期 設立, 그리고 아시아·아프리카諸國의 共同利益을 促進시키는 한에 있어서 이들 諸國間의 合作投資企業의 促進에 대한 獎勵 등이다.

4. 아시아·아프리카會議는 同地域에 있어서 商品貿易의 安定이 死活이 달릴 정도로 必要함을 認定했다. 多邊的인 貿易 및 支給의 範圍를 擴大하는 原則을 認定했다. 그러나, 一部 國家들이 그들의 慢延되고 있는 經濟事情에 비추어, 雙務貿易協定에 依支하지 아니할 수 없음을 認定했다.

5. 아시아·아프리카會議는 雙務的 및 多邊的 協定을 통해 1次 產品의 國際價格과 需要에 安定을 圖謀하기 위하여 參與國들이 集團的 措置를 취할 것과, 또한 UN 國際商品貿易常設諮問委員會 및 기타의 國際會議에서 可能하고 바람직하는 한, 이 問題에 대한 統一된 어프로우치를 採擇할 것을 勸告했다.

6. 아시아·아프리카會議는 이 이외에 또 다음 事項을 勸告했다. 즉, 아시아·아프리카諸國은 經濟적으로 可能한 경우, 輸出전에 原資

材를 가공함으로써 그들의輸出貿易을多樣化해야 하며,域內的商
品博覽會를促進하여貿易使節團 및實業家團體들의交換을獎勵하
여야 하며,域內貿易(intra-regional trade)을促進시키기 위해情報
및見本의交換을獎勵하여야 하며,그리고內陸國의通過貿易을
위해正常的인便宜를提供하여야 한다.

7. 아시아·아프리카會議는海運을 크게重視하여 船舶會社가 隨
時로 運費率을變更함으로써 各諸參與國의 損害를 주고 있는데
關心을 表明했다. 本會議는 이 問題를 研究하여, 그 후의 船舶會社
에 대해서 보다 合理的인 態度를 취하도록 誘導하는 集團의 行動
을 취할 것을 勸告하였다. 또, 通過貿易鐵道運賃의 削減에도 研究한
것을 示唆하였다.

8. 아시아·아프리카會議는 國家的, 地域的, 銀行 및 保險會社의 設
立도 獎勵해야 한다는 것에 同意하였다.

9. 아시아·아프리카會議는 利益金の 送金 및 課稅와 같은 石油
에 관련된 諸問題에 관한 情報交換이 궁극적으로 共同政策을 形成
하는데 先導役割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10. 아시아·아프리카會議는 平和的 目的을 위한 核에너지開發이 아
시아·아프리카諸國을 위해 특별한 重要性을 強調했다. 本會議는 平
和的 目的을 위한 原子力의 利用에 관한 情報을 利用·提供할 수
있는 立場에 있는 主要強大國의 主導權을 歡迎했으며, 行政事務局이
아시아·아프리카의 적절한 代表를 派遣할 수 있는 國際原子力委員
會의 조속한 設立을 促求했으며, 그리고 그와 같은 計劃을 支援하
는 諸國家가 提供하는 原子力의 平和的 利用에 관한 訓練 및 기
타 施設을 중본의 利用하도록 아시아·아프리카諸國의 勸告했다.

11. 아시아·아프리카會議는 相互利益의 問題에 관한 情報 및 意見을 交換하기 위해 各參與國이 指命하는 連絡官의 任命에 合意했다. 本會議는 既存 國際機構를 보다 충분히 利用해야 하며, 또한 그와 같은 國際機構의 會員國이 아니지만, 參加資格이 있는 參與國은 會員資格을 確保해야 할 것을 勸告했다.

12. 아시아·아프리카會議는 可能한 한, 既存 國際會議參與國의 相互利益을 위해 이들 諸國과 事前協議를 해야 한다고 勸告했다. 그러나, 本會議는 어떤 地域的 블록을 結成할 意圖는 없다.

B. 文化協力

1. 아시아·아프리카會議는 諸國家間의 理解를 促進하는 가장 強力한 方法의 하나가 文化協力の 開發에 있음을 確信했다. 아시아·아프리카는 偉大한 宗教와 文化의 發祥地로서, 한편 그 發展過程에서 스스로 豊富했었다. 이와 같이, 아시아·아프리카의 文化는 精神的 및 普遍的 基礎에 입각해 있다. 不幸하게도 아시아·아프리카諸國間의 接觸이 지난 數世紀 동안 中斷되었다. 아시아·아프리카諸國民은 이제 그들의 옛 文化的 接觸을 更生시켜, 現代世界의 脈絡속에서 새로운 文化的 接觸을 發展시키려고 하는 열렬하고도 眞摯한 欲望으로 活氣를 띠고 있다. 本會議에 參與한 모든 政府는 보다 密接한 文化協力を 위해 努力할 決意를 再次 強調했다.

2. 아시아·아프리카會議는 大部分의 아시아·아프리카地域에 있는 植民主義存在가 그 形態가 어떠한, 文化協力を 妨害할 뿐만 아니라, 國民의 民族文化도 抑壓할 수도 있다는 事實에 注目했다. 일부 植民強大國은 그들의 從屬國民에 대해 教育·文化分野에 있어서 基

本權을 否定하고, 그 從屬國民의 人格開發과 기타 아시아·아프리카國民과의 文化的 接觸을 妨害하고 있다. 이러한 일은 튀니지, 알제리 및 모로코에서 특히 현저하며, 이들 地域에서는 그들 國民自身の 言語와 文化를 研究하려는 國民의 基本權이 抑壓되고 있다.

아프리카大陸의 일부 地域에서는 아프리카人 및 有色人에 대해서 類似的한 差別待遇가 행해지고 있다. 本會議는 이러한 政策이 基本的人權을 否定하고, 이 地域에서의 文化的 發展을 沮害하며, 또한 보다 폭넓은 國際的 側面에 입각한 文化協力を 妨害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本會議는 이러한 形態 및 기타 形態의 文化的 抑壓에 의해 일부 아시아·아프리카地域의 教育·文化分野에 있어서 그와 같은 基本權의 否定을 非難했다.

특히, 本會議는 文化的 抑壓의 한 手段으로서 人種主義를 非難했다.

3. 本會議가 아시아·아프리카諸國間的 文化協力の 開發을 圖謀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國民集團과 다른 國家의 文明과 文化를 排斥하거나 敵對視하려는 어떤 意味에서 한 것은 아니다. 寬容과 普遍性的의 옛 傳統을 充實하게, 아시아·아프리카의 文化協력이 보다 넓은 世界的 協力の 脈絡에서 發展되어야 한다고 本會議는 確信했다.

아시아·아프리카文化協力の 開發과 併行하여, 아시아·아프리카諸國은 기타 地域과의 文化接觸을 發展시키고자 希望한다. 이것은 그들 自身の 文化를 豊富케 할 뿐만 아니라, 또한 世界的 平和와 理解를 促進시키는데도 돕게 된다.

4. 아시아·아프리카諸國에는 教育·科學·技術의 諸機關을 아직까지 發展시킬 能力이 없었던 國家들이 많다. 本會議는 아시아·아

프리카에 있어서 이러한 側面에서 보다 有利한 立場에 있는 諸國家들이 그와 같은 貧困한 國家로부터 그들의 諸機關에 留學生 및 訓練生의 入學을 위한 便宜를 提供해야 할 것을 勸告했다. 또한, 그와 같은 便宜는 現在 高等教育을 받을 機會를 가지지 못했던 아시아·아프리카國民에게도 提供되어야 한다.

5. 아시아·아프리카會議는 아시아·아프리카諸國間의 文化協力の 促進이 다음과 같은 方向으로 推進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 (1) 各國 相互間의 知識의 獲得
- (2) 相互 文化交流
- (3) 情報交換

6. 아시아·아프리카會議는 이 段階에서 文化協力の 最善의 結果는 가능하고 實施할 수 있는 경우, 그 勸告를 履行하는 雙務協定の 推進에 의해서, 또 各國이 스스로 취한 措置에 의해서 達成될 것이라는 見解를 나타냈다.

C. 人權과 自決

1. 아시아·아프리카會議는 UN憲章에 정해진 人權의 基本原則에 全般的인 支持를 宣言하고, 또한 世界人權宣言을 모든 國民과 國家가 이룩해야 할 共同의 基準으로 注目했다.

本會議는 UN憲章에 정해진 諸國民과 諸國家의 自決原則에 대한 全般的인 支持를 宣言하고, 또한 모든 基本的인 人權의 충분한 享有의 前提條件인 自決에 대한 諸國民과 諸國家의 權利에 관한 UN決議를 注目했다.

2. 아시아·아프리카 會議는 大部分의 아프리카地域과 기타 世界

地域에서 人種分離 및 人種差別의 政策과 慣例가 統治와 人間關係의 基礎를 形成하고 있는 것을 慨嘆했다. 이와 같은 處事는 人權은 全面的인 破壞일 뿐만 아니라, 文明의 基本的 價値와 人間의 尊嚴性을 否定하는 것이다.

本會議는 人種差別의 犧牲者, 특히 아프리카의 諸國民 및 南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印度·파키스탄系人의 勇敢한 立場에 따뜻한 同情과 支持를 계속 보내며, 그들의 主張을 견지하려는 모든 사람들을 성원하며, 自國 내에 存在할 수 있는 人種差別의 모든 흔적을 一掃하려는 아시아·아프리카國民의 決議를 再確認하며, 그리고 人種差別政策을 除去하려는 鬭爭 속에서 同一한 惡의 犧牲物이 될 危險을 막기 위해 道德的 影響力을 충분히 使用할 것을 誓約했다.

D. 從屬된 諸國民의 問題

1. 아시아·아프리카會議는 從屬된 諸國民 및 植民主義 그리고 外國人의 往服, 支配 및 搾取에 대한 諸國民의 服從으로부터 想起되는 惡의 問題를 論議했다.

本會議는 다음의 事項에 대해서 合意했다.

- (a) 모든 植民主義의 表現은 조속히 終熄되어야 할 惡이라는 宣言에,
- (b) 外國의 往服, 支配 및 搾取에 대한 諸國民의 服從은 基本的인 人權의 否定이며, UN憲章에 矛盾되며, 그리고 世界の 平和와 協調를 促進하는 데에 阻害要因이라는 것을 確認하는 데에,
- (c) 그와 같은 모든 國民을 위한 自由와 獨立의 主張에 대한

支援을 宣言하는데에, 그리고

(d) 그와 같은 諸國民에 대해 自由와 獨立을 賦與하도록 關係 強大國에게 要請할 것에,

2. 北아프리카에 있어서 未解決의 狀況과 北아프리카諸國民에 대해 그들의 自決權을 계속 拒否하고 있는 事態에 비추어 볼 때, 아시아·아프리카會議은 알제리, 모로코 및 튀니지 國民의 自決과 獨立의 權利를 支援할 것을 宣言하며, 또한 프랑스政府에 대해 지체없이 그 問題를 平和的으로 解決하도록 促求했다.

E. 기타 諸問題

1. 팔레스타인 事態에 의해 惹起된 中東의 既存緊張과 그 緊張이 世界平和에 끼칠 危險에 비추어, 아시아·아프리카會議은 팔레스타인의 아랍人의 權利에 대한 支持를 宣言하며,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관한 UN決議의 履行 및 同問題의 平和的 解決의 成就를 要請했다.

2. 아시아·아프리카會議은 植民主義의 撤廢에 대해 表明된 態度의 脈絡에서, 인도네시아와 네덜란드間의 關係協定에 입각한 西이리안問題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立場을 支持했다.

아시아·아프리카會議은 네덜란드政府에 대해 前記한 協定下에서 그들의 義務를 履行하기 위해, 可能한 한 조속히 協商을 再開할 것을 促求하고, 또한 UN이 關係當事國을 도와 同紛爭의 平和的 解決策을 講究해야 한다는 열렬한 希望을 表明했다.

3. 아시아·아프리카會議은 예멘 및 屬領으로 알려져 있는 南예멘 地方의 問題에 있어서 예멘의 立場을 支持하며, 그리고 關係當事國들이 同紛爭을 平和的으로 解決하도록 促求했다.

F. 世界の平和와 協調의 促進

1. 아시아·아프리카會議는 여러 國家가 아직도 UN에 加入되어 있지 못하다는 事實에 注目하고, 世界平和를 위한 效率的인 協調를 위해, UN加入資格이 普遍的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安全保障理事會에 대하여 UN憲章에 의해 會員資格이 있는 모든 國家의 加入을 支持하도록 要求했다. 아시아·아프리카會議의 意見에 의하면, 本會議參加國 중 다음 國家 즉, 캄보디아, 실론, 日本, 요르단, 리비아, 비련 및 統一된 베트남은 UN會員資格이 있었다.

本會議는 公平한 地域的 配分原則과 관련하여 安保리에 現在에 配定되어 있는 아시아·아프리카地域의 代表가 妥當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本會議는 非常任理事國 議席의 配定과 관련하여, 1964年 런던에서 締結된 協定下에서 選出이 除外된 아시아·아프리카諸國은 이들 諸國의 國際平和와 安全의 維持의 더욱 效果的으로 貢獻할 수 있도록 安保理의 奉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見解를 表明했다. 2. 아시아·아프리카會議는 既存 國際紛爭의 危險한 事態와 核·熱核武器를 包含한 모든 型의 武器의 破壞力이 使用될 世界大戰의 勃發로부터 全人類가 直面하는 危險을 考慮하고, 모든 國家의 對해 만일 그와 같은 戰爭이 일어난 경우, 隨件될 무서운 結果의 對해 서 注意를 要求했다.

本會議는 軍縮, 核·熱核武器의 生産, 實驗, 使用의 禁止가 人類의 文明을 全面的 破壞의 恐怖 및 展望으로부터 救濟하는데 絕對不可缺하다고 생각했다. 本會議는 여기에 參加한 아시아·아프리카諸國이 軍縮 및 上記한 武器의 禁止에 對한 支持를 聲明하고, 또한 主

要關係國 및 世界輿論에 대하여 이와 같은 軍縮과 核武器禁止를 實現하도록 人類와 文明에 呼訴할 義務가 있었다고 생각했다.

本會議는 이와 같은 軍縮과 核實驗禁止를 實施하기 위해 効率的인 國際管理가 樹立되고 維持되어야 하며, 또한 이 目的을 향해 신속하고도 確固한 努力을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本會議는 核·熱核武器製造의 全面禁止時까지, 모든 關係強大國에게 그와 같은 武器의 實驗을 中止할 協定을 締結하도록 呼訴했다.

本會議는 全面軍縮이 平和維持를 위해 必要하다고 宣言하고, UN에 대해 이러한 軍縮努力을 계속하도록 要請했으며, 그리고 모든 關係當事國에 대해 모든 大量殺傷武器의 製造, 實驗, 使用의 禁止를 包含한 모든 軍隊 및 軍備의 規制, 制限, 管理, 減縮을 조속히 實現하고 또 이러한 目的을 위해 効率的인 國際管理를 確立하도록 呼訴했다.

G. 世界の 平和와 協調의 增進에 관한 宣言

아시아·아프리카會議는 世界平和와 協調의 問題에 대해 憂慮의 뜻을 表示했다. 本會議는 世界核戰의 危險을 안고 있는 國際緊張의 現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觀察했다. 平和의 問題는 國際安全의 問題와 相關關係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모든 國家는 특히 UN을 통해 有効한 國際管理下에서 軍備의 減縮과 核武器의 廢棄를 實現하기 위해 協調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國際平和는 增進될 수 있으며, 또한 核에너지는 오로지 平和目的에만 使用될 수 있다. 이것은 특히 아시아·아프리카의 必要에 對應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왜냐 하면, 그들이 긴급히 要求하는 것이 보다 큰 自由

속에서 社會的 進歩와 向上된 生活水準이기 때문이다. 自由와 平和는 相互依存하여 있다. 自決權은 모든 國民이 享有해야 하며, 또 自由와 獨立은 아직도 從屬狀態에 있는 國民에서 可能한 한 지체없이 賦與되어야 한다. 사실, 모든 國民은 UN憲章의 目的 및 原則에 따라 그들 獨自의 政治·經濟體制와 生活方式을 自由로이 選擇할 權利를 가져야 한다.

諸國民은 不信과 恐怖로부터 解放되어, 相互間에 信賴와 善意를 가지고 다음의 原則에 依據하여 寬容性을 보이고 善良한 이웃으로서 서로 平和롭게 生活하며 友好的인 協調를 發展시켜야 한다.

- (1) 基本的인 人權 및 UN憲章의 目的과 原則에 대한 尊重
- (2) 모든 國家의 主權 및 領土保全에 대한 尊重
- (3) 모든 人種의 平等 및 모든 大小國家의 平等에 대한 認定
- (4) 他國家의 內政에 대한 介入 내지 干涉의 삼가
- (5) 各國이 UN憲章에 따라 個別的 또는 集團的으로 自衛할 수 있는 權利에 대한 尊重
- (6) a. 集團防衛協定을 어떠한 強大國의 特殊利益을 위해 使用하는 것의 回避
b. 어떠한 國家도 他國에 대한 壓力行使의 回避
- (7) 어떠한 國家의 領土保全 내지 政治的 獨立에 대해 侵略威脅 또는 武力使用의 回避
- (8) 모든 國際紛爭을 協商, 調整, 仲裁 또는 法的 解決과 아울러 UN憲章에 따라 關係當事國이 選擇하는 기타의 平和的方法과 같은 平和的 手段에 의한 解決
- (9) 相互利益과 協調의 促進

(10) 正義와 國際義務에 대한 尊重

아시아·아프리카會議은 이러한 諸原則에 따른 友好的인 協力이 國際平和와 安全의 維持·促進에 效果的으로 寄與하며, 한편 經濟, 社會, 文化分野에 있어서의 協力이 모든 國家의 共同的 繁榮과 福祉를 實現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確信을 宣言한다.

아시아·아프리카會議은 5個後進國이 參與國과 相議하여 本會議의 次期 모임의 開催를 檢討할 것을 勸告했다.

2. 國際聯合貿易開發會議의 最終議定書

(1964年 3月 23日~16日, 제네바)

第1部 前文

UN貿易開發會議는 다음과 같은 最終議定書를 採擇했다.

第1節 背景

1. 本會議에 參加한 諸國家는 「보다 큰 自由 속에서 社會的 進歩와 보다 훌륭한 生活水準을 促進한다」는 UN憲章에서 具現된 崇高한 目的을 成就하고, 또 世界가 貧困한 地域과 富裕한 地域으로 兩分되어 있는 狀態를 追放하여, 全人類가 繁榮을 누릴 수 있도록 보다 効率的이고 보다 훌륭한 國際經濟協調體制를 講究하도록 하고, 그리고 世界의 人的·物的資源이 모든 場所에서 貧困을 逐出하는데 利用될 수 있도록 하는 諸方案을 摸索할 것을 決議한다. 科學의 進歩가 人間의 能力範圍 내에서 前例없는 豐饒를 누리게 한 時代에 있어서, 流通되고 있는 世界貿易이 諸國民間의 廣範한 經濟的 不均衡을 除去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必須不可缺한 問題이다. 國際共同體는 規模, 富, 經濟·社會體制에 關係없이 모든 國家가 經濟發展과 社會的 進歩를 위해 國際貿易의 利益을 享有하도록 確保키 위해 그의 努力을 結속하지 않으면 안된다.

2. 全世界의 平和와 繁榮이 密接하게 連結되어 있으며, 또한 發展途上國의 經濟成長이 先進國의 經濟成長에 寄與할 것이라는 것을

認識하며, 그리고 發展途上國이 보다 높은 生活水準을 達成하도록 돕기 위해 國際協調의 利益을 確信하면서, 本最終決議文의 署名國은 人類紐帶의 精神으로 「모든 國民의 經濟的, 社會的 向上을 促進하기 위해 國際機構를 活用할 것」을 決議했다.

3. UN貿易開發會議의 開催決定을 確認함에 있어서 UN總會는 몇 가지 考慮事項에 입각하여 行動하였다. 즉, 世界全體에 걸친 經濟的 進歩는 國際貿易의 着實한 擴大에 大部分 달려 있다. 公平하고 相互有益한 國際貿易의 擴大開發은 諸國家間의 近隣關係確立을 위한 훌륭한 基礎를 造成하며, 諸國民間에 平和와 相互信賴 및 理解의 雰圍氣를 強化하는데 도움이 되며, 그리고 世界 모든 國家에 있어서 보다 높은 生活水準과 보다 급속한 經濟的 進歩를 促進한다. 마지막으로 發展途上國의 加速的인 經濟發展은 國際貿易에 있어서 發展途上國에 접하는 比重을 實質的으로 增大시키는데에 크게 依存하고 있다.

4. 人間이 生活하는 經濟·社會的 環境에 있어서 複雜한 構造的 變化를 뜻하는 開發이란 課業은 國民全體의 利益을 위하는데 있다. 發展途上國은 이미 그들 自身の 努力으로 社會的 進歩를 促進하는 自立經濟成長을 確立하기 위한 斷乎한 試圖에 着手하고 있다. 이러한 努力은 계속되고 擴大되어야 한다. 만일, 特權이나 극단적인 貧富 및 社會的 不義가 存續한다면, 開發의 目的은 喪失되는 것이다. 만일, 開發의 社會的, 文化的 次元이 無視된다면, 經濟的 向上만으로 永續的인 利益을 기할 수 없을 것이다.

5. 諸發展途上國은 그들 國民의 生活水準을 向上시키는데 第1次的인 責任이 있다는 것을 認定한다. 그러나, 이 目的을 위한 發展

途上國의 國民的 努力은 國民主權을 尊重하는 建設的인 國際的 措置에 의해 補充되고 強化되지 않는다면, 크게 沮害될 것이다. 이와 같은 措置의 本質的인 要因은 貿易과 開發分野에 있어서의 國際政策이 보다 合理的이고 公平하며, 또 世界의 生産과 貿易部門에서 必要한 調整에 의해 隨伴되는, 修正된 國際分業으로 이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結果로서 發展途上國의 生産性和 購買力의 增加는 역시 産業先進國의 經濟成長에도 寄與할 것이며, 또한 汎世界的 繁榮을 이룩하는 手段이 될 것이다.

6. 本會議에 提起된 諸問題들은 과거에 挑戰해 왔었고 緊急한 것들이었다. 開發의 程度는 多樣하지만, 世界人口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發展途上國의 共同所得은 先進産業國所得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더우기나, 發展途上國人口의 劇的인 增加는 그들 國民들을 最低의 人間다운 生活을 영위케 하는 데도 어려움을 倍加시키고 있다. 發展途上國의 目的은 共同의 繁榮을 함께 享有하도록 共同으로 새로운 貿易과 새로운 富를 創造하여, 거기서 開發에 이르는 閉鎖的인 方法으로 인한 浪費와 기타 不利한 要因을 회피하는데 두어야 한다. 國際社會는 全世界에 걸친 經濟的 進歩를 促進시키는 貿易과 開發을 위한 建設的이고 普遍的인 協調政策에 參加할 것을 要請한다.

7. 1960年代를 UN 開發 10年으로 指定한 것은 開發途上國의 生活水準을 向上시키려는 汎世界的인 깊은 關心의 認定이며, 또한 共同努力으로 이 課業을 成就하려는 UN의 眞摯한 決議였다. 1980년까지는 最低年 5%의 國民所得成長率을 達成한다는 開發 10年の 目標가 不適合하다는 것에 관해서 많은 관심이 表明된 바 있다.

이 成長率을 達成하기 위해서도, 先進國과 發展途上國은 다 같이, 發展途上國의 持續되고 있는 對外不均衡을 克服하는데 돕는 手段으로서, 發展途上國의 貿易收益의 水準을 向上시키고 또 그 成長率을 促進시키는 措置를 包含하여 諸措置와 方案이 講究되어야 한다는 것이 必須的이다.

8. UN 貿易開發會議는 國際協調의 手段으로서 모든 國民을 위한 世界貿易의 諸問題와 특히 發展途上國의 緊急한 貿易開發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開催되었다. 發展途上國은 開發商品의 輸入 및 技術知識의 必要性이 增大되고 있는 時期에 있어서, 그들의 輸出收益과 商品 및 用役을 輸入할 能力이 充分치 못하게 된 狀況에 直面해 왔다. 輸入所要量의 成長은 이와 相應한 輸出收益의 擴大를 隨伴하지 못했다. 이로 인한 貿易赤字는 金準備 또는 保有外貨 등으로 相殺할 수 없을 경우에는 大部分을 資本導入으로 充當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本質적으로 完全하거나 永久的인 解決策을 提供할 수 없으며, 또한 사실 對外債務의 支給과 기타 “보이지 않는” 項目에 대한 支出은 그 自體가 發展途上國에 深刻한 負擔을 加重시킨다. 더우기, 去來條件은 發展途上國에게 作用해 왔다. 최근 數年 동안에 많은 發展途上國들은 完製品, 특히 資本施設材의 輸入 價가 上昇해 온 때에, 그들의 1次 商品의 輸出價의 低下에 直面해 왔다. 이것은 개개 發展途上國의 1次商品輸出에 대한 過重한 依存도와 함께, 그들의 輸入能力을 크게 減少시켰다. 이러한 現狀과 기타 不利한 趨勢가 가까운 將來에 變化되지 않는 한, 發展途上國이 그들의 經濟를 開發하고 多樣化하며 産業化하려는 努力은 심각하게 妨害를 받게 될 것이다.

9. 本會議가 取扱한 問題點의 緊急性을 심각하게 意識한 本會議 參與國은 本會議의 諸勸告를 留意하면서, 보다 훌륭한 世界經濟秩序의 基盤을 確立하기 위해 最善을 다할 것을 決議한다.

第 2 節 構成과 節次

10. 1961年 12月の 第3週에 UN總會는 現 10年(1960年代)을 UN開發 10年으로 指定할 때에, 總會는 事務總長에게 國際貿易問題에 관한 國際會議開催 如否를 會員國들과 相議하도록 要請했다. 두 개의 決議案(1707/XVI/과 1710/XVI/)은 모두 UN憲章의 經濟目的이 國際經濟協調의 새로운 大膽한 計劃에 의해 가장 잘 促進될 것이라고 確信한 데서 비롯되었으며, 또한 이러한 確信 속에서 UN貿易開發會議가 그 起源을 가졌던 것이다.

11. 1962年 7월에 開催된 經濟開發問題에 관한 카이로會議는 貿易 및 開發에 관한 國際會議의 조속한 開催를 強力히 勸告하는 宣言(이것은 그 후 UN總會決議 1820(XVII)로 歡迎을 받았다)을 發表했다. 이와 같은 會議의 아이디어가 根據를 獲得함으로써, UN總會는 1962年 8月(決議 1785/XVII) 이 會議를 開催하여, 議題를 檢討하기 위해 準備委員會를 設立토록 決議했던 1962年 8月の 經濟社會理事會의 決定(決議 917/XXXIV/)을 支持했다. 事務總長은 모든 UN會員國과 專門機構 및 國際原子力機構의 會員國에게 本會議에 參席하도록 招請할 것을 要請받았다. 3次에 걸친 準備委員會의 討議는 有益하였다. 本會議를 위한 상세한 假議題가 作成되었고, 또한 檢討될 諸問題를 定義하여, 可能的 解決策을 모색할 수 있는 諸方針을 提示하는 報告書가 準備되었다. 準備委員會의 要

求에 따라, UN傘下 諸機關의 事務局은 關聯된 諸問題에 關해 많은 研究를 準備했다. 本會議의 事務總長은 各國政府 및 學者의 충고를 구하여, 「開發을 위한 새로운 貿易政策에 대하여」라는 標題를 한 報告書를 準備했다. 會員國은 또한 個人的으로 또 集團的으로 本會議에 有益한 提案과 試案을 提出했다.

12. 1963年 7月 18日 經濟社會理事會는 UN貿易開發會議을 1964年 3月부터 1964年 6月 15日까지 제네바에서 開催할 것을 決定하고, 準備委員會에서 作成한 假議題(經濟社會理事會決議 963/XXXVI)를 承認했다. UN總會는 1963年 11月の 決議(決議 1897/XVIII/)로 準備委員會 및 本會議事務局長의 作業을 注目하고 發展途上國의 共同宣言을 歡迎했으며, 또한 各國에 대해 이 宣言을 심각히 考慮하도록 要請했다. 地域經濟委員會 및 기타 地域機構들로 貿易開發問題를 考慮하여 重要한 決議 및 宣言들을 採擇했다. 한편, 本會議을 위한 實際的인 準備가 進行됨에 따라 總會 및 經濟社會理事會는 貿易 및 開發分野에 있어서 國際協調의 潛在的인 轉換點으로서, 本會議에 대한 UN會員國의 높은 希望을 表明하는 討論의 廣場이 되었다.

13. 이러한 崇高한 希望을 認識하여, 다음 120個國代表가 UN貿易開發會議에 參加하기 위해 1964年 3月 23日부터 6月 16日까지 제네바에서 모였다.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볼리비아, 브라질, 불가리아, 버마, 우룬디, 白러시아, 캄보디아, 카메룬, 캐나다, 中央아프리카, 실론, 차드, 칠레, 中國, 콜롬비아, 콩고(브라자빌), 자이레(舊 레오폴드빌 콩고), 코스타리카,

쿠바, 키프로스, 체코슬로바키아, 다오메이, 덴마크, 도미니카,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이디오피아, 西獨, 핀란드, 프랑스, 가봉, 가나, 그리스, 구아테말라, 가이아나, 아이티, 教皇廳, 온두라스, 헝가리, 에이레, 이스라엘, 이탈리아, 코트디부와르, 印度, 인도네시아, 이라크, 이란, 자메이카, 日本, 요르단, 케냐, 쿠웨이트, 라오스, 레바논, 리베리아, 리비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말라가시, 말레이지아, 말리, 모리타니, 멕시코, 모나코, 蒙古, 모로코, 네팔, 네덜란드, 뉴우지일랜드, 니카라과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파키스탄, 파나마, 파라과아이,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韓國, 베트남, 루마니아, 루안나, 산마리노,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시에라리온, 南아프리카, 스페인, 수단, 스웨덴, 스위스, 시리아, 탕가니카, 타이, 토고, 트리니다드 토바고, 튀니지, 터키, 우간다, 우크라이나, 蘇聯, 아랍聯合, 英國, 美國, 오토볼타, 우루구아이, 베네수엘라, 예멘, 유고슬라비아, 잔지바르(소말리아와 西사모아는 招請되었지만 不參했고, 탕가니카는 1964年 5月 27日 잔지바르와 統合, 單一聯合共和國으로 되었다.)

14. 스위스聯邦共和國大統領이 開會演說을 했다. UN事務總長이 또한 本會議에서 演說했다. 그리고, 수많은 國家元首들로부터 會議의 成功을 바라는 메시지 등을 받았다. 議題의 採擇 및 任員選出一議長 1名, 副議長 27名 및 報告者 1名—後 本會議에서는 議長の 演說, 本會議事務局長의 演說 및 12日間에 걸친 各國閣僚級 首席代表와 많은 政府間經濟機構代表者들의 政策演說이 行해졌다. 議題를 상세하게 研究하기 위해 5個全體委員會가 設置되었다. 本會議의 一般委員會는 議長, 副議長, 報告者 및 5個委員會委員長으로 構成되었다. 本會議는 또한 最終決議案의 起草委員會를 設置했다.

15. 本會議에 提出된 諸問題에 對해 合意에 到達할 目的으로, 各國代表團들은 많은 非公式會議을 開催하여 重要한 協議를 進行하였다. 특히, 本會議에 注目할 樣相은 發展途上國의 共同宣言의 署名國代表團들이 모든 代表團間의 一般的인 協調를 增進시키기 爲해 그들의 作業을 調整했다는 것이다.

第 3 節 見 解

本會議는 다음과 같은 見解에 따라 指導되었다.

16. 世界貿易은 最近에 實質적으로 擴大되었다. 世界輸出價値는 1950年 이후 倍加되었다. 이러한 成長의 主要刺戟은 巨大한 科學, 技術的인 進歩와 世界各國의 社會·經濟的 變化와 아울러, 國家的 活動에 따른 世界經濟의 全般的인 擴大에 의해서 提供되었다.

17. 世界的 諸國家들이 이러한 國際貿易의 擴大에 比例하여 參與하지는 못했다. 發展途上國의 輸出이 1950年과 1962年에 289億 달러로 50% 정도 增加하였지만, 이러한 增加率은 先進國의 輸出增加率에 비해 극히 낮게 進陟되었다. 이 結果로, 世界輸出에 있어서 發展途上國이 占하는 比重은 1950年代 약 3분의 1에서 1962년에는 5분의 1을 약간 넘는 정도로 점차 下落했다. 뿐만 아니라, 先進市場經濟國은 그들의 比重을 5분의 3에서 3분의 2로 增加시켰고, 또한 中央計劃經濟國은 그 比重을 8%에서 13%로 높였다. 世界輸出增加率이 1950年代 초의 年 8.4%에서 1960年初 5%로 下落된 理由중의 하나는 發展途上國들이 보다 高度의 輸出伸張率을 달성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8. 大部分의 高度工業國家의 市場에서 有利한 價格으로 그들 商

品販賣를 增加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發展途上國들은 先進國으로부터 資本財 및 機械類를 購入하는 데에 限界에 놓이게 되었고, 다음으로 이것은 發展途上國들이 보다 빠른 比率로 그들의 輸出을 增加시켰을 경우, 世界市場에 미쳤던 영향보다 훨씬 낮은 比率로 世界貿易을 增大시키는 役割을 했다. 이 이외에도 一部 先進國들에 의해 適用된 差別的 내지 保護主義的인 效果를 가진 諸措置로 말미암아, 發展途上國의 貿易과 世界貿易의 發展이 一般的으로 沮害되었다.

19. 發展途上國이 겪은 여러 가지 어려움은 1950年~1962年 期間 중에 交易條件의 惡化로 더욱 深化되었다. 發展途上諸國의 輸出量에 있어서 緩慢한 增大와 交易條件의 不利한 움직임은 그들 貿易에 있어서 現商品別構成을 거의 反映하였다. 發展途上國의 貿易은 壓到的으로 完製品의 輸入을 위해 1次商品의 輸出로 形成되어 있기 때문에, 世界市場에 있어서 兩者의 相對的 地位는 심각한 變化를 겪게 되었다. 完製品의 世界貿易은 1次商品의 貿易보다 倍以上의 年 增加를 보였다. 1次商品輸出을 停滯시킨 諸要因은 이미 所得과 食糧消費가 높은 水準에 있는 先進國에 있어서 消費者 所得의 增加에 비해 食糧需要의 伸張이 낮고, 또 代替品과 合成品의 廣範한 使用,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保護障壁으로 強化된 國內政策과 아울러, 技術發達로 인한 一般的인 生産性增大 등 兩結果로 말미암아 先進國에 있어서의 1次產品生産의 增加 등을 包含한다. 이러한 長期的인 傾向은 經濟의 後退 및 기타 要因에 의해서 惹起된 輸出收入의 短期的인 과동을 통하여 더욱 強化되었다.

20. 發展途上國의 交易條件의 惡화와 緩慢한 輸出의 增大는 이들

諸國의 經濟發展을 促進시키기 위해 輸入需要의 急増과 때를 같이 하여 나타났다. 經濟成長率과 投資財의 有利한 供給間에는 相互 密接한 關係가 있다. 發展途上國은 開發 10 年の 目標을 達成하기 위해 投資財供給에 있어서 特別한 増大를 要求한다. 이들 諸國은 이러한 投資財를 生産할 國內的 能力이 制限되어 있는 이상, 이와 같은 投資財의 實質的인 量을 輸入해야 한다. 輸入을 위한 資金調達은 輸出收益 및 海外資本의 導入을 통해서 이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高度成長에 要求된 財源은 분명히 追加的인 輸出收益과 長期的인 公共 및 民間資金의 導入의 増加로 摸索될 수 밖에 없다.

21. 1950 年に 있어서 發展途上國의 輸入에 대한 輸出超過는 1962 年に 23 億달러의 赤字를 나타냈으나, 그들의 投資所得 및 기타 貿易外去來에 대한 純支給額은 1960 年경에는 약 33 億달러였다. 이러한 赤字는 援助나 기타 資本導入으로 充當되었다. 그러나, 發展途上國의 輸入需要와 輸出收益間의 隔差는 더욱 擴大되었다. UN 事務局의 評價에 따르면, UN 開發 10 年の 目標로 정해진 年成長率 5% 를 前提로 하여 基準年度인 1950 年代의 趨勢에 如何한 變動도 없다고 假定했을 경우, 이러한 隔差는 1970 년에 年間 200 億 달러에 달할 것으로 推算된다.

22. 最近 發展途上國은 그들의 成長을 促進시키는 가장 效率的인 手段으로서 經濟的, 社會的 計劃으로 점차 方向轉換을 하고 있다. 그들의 計劃, 政策 및 制度는 그들의 經濟, 社會的 構造의 轉換을 成就하고, 또 目標인 成長率達成을 위해 事전에 決定된 優先順位에 따라 最大限의 貯蓄, 投資 및 生産을 提供할 수 있도록 考案되어 있다. 發展途上國의 諸計劃이 아무리 現實的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

도, 이들 計劃의 實現은 1次產品을 위한 國際市場의 不安定性에 의해서 또 1次產品·半製品·完製品의 先進國市場에의 接近制限 등에 의해서 阻害되고 있다. 價格이 과거에 下落해 왔던 單一產品 내지 小數商品의 輸出에 대한 계속적인 依存은 開發計劃의 實踐을 더욱 더 어렵게 했다. 發展途上國의 經濟·社會的 開發計劃을 實現키 위해서는 그들에게 충분하고 안정성 있게 外貨로 供給할 수 있도록, 現國際貿易構造의 적절한 變化를 要求한다.

23. 發展途上國의 輸出入貿易의 3분의 2 이상인 壓倒的 比率이 開發市場經濟國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950년부터 1962년까지 間에 發展途上國에 대한 先進市場經濟國의 輸出總額은 106億 5千萬달러에서 210億 6千萬달러로 98%까지 增加했다. 이것은 開發市場經濟國에 대한 發展途上國의 輸出이 132億 2千萬달러에서 206億 6千萬달러로 56%까지 增加한 것과는 좋은 對照였다.

24. 發展途上國의 輸出이 開發市場經濟國에 보다 빠른 比率로 擴大하지 못한 理由는 수많은 要因으로 들릴 수 있다. 一般的인 性格의 寄與要因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言及했다. 特殊政策은 價格支持計劃, 熱帶產品의 消費에 賦課되는 關稅, 內國稅, 財政課徵金, 發展途上國의 關係商品에 대한 輸出補助金, 그리고 天然產品이 輸出되는 경우, 그와 같은 產品에 適用되었던 것에 比例하여 加工產品에 賦課되는 보다 높은 關稅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要因들은 發展途上國의 產品에 대한 需要를 침체시키고, 또 一部商品에 대해서는 世界商品價格에 抑壓的인 影響을 미치는 경향이 있었던 過剩在庫備蓄에 기여하기도 했다. 發展途上國의 輸出收益을 增加시키기 위해서는 發展途上國의 1次產品·完製品의 輸出을 위해 市場接

近機會 및 市場擴大機會를 改善하도록 國家的 및 國際的 措置에 의해 이러한 障害를 除去할 필요가 있다.

25. 發展途上國과 中央計劃經濟國間의 貿易은 比較的 最近에 이루어진 關係로 지금까지는 相對적으로 少數의 國家에 限定되어 있고, 또 發展途上國 全體의 貿易收入의 적은 部分을 차지하고 있다.

1962 年에 發展途上國의 總輸出額중, 16 億 34 萬달러인 全體의 5.6%가 中央計劃經濟國에 輸出되었고, 한편 後者로부터 前者의 輸入은 21 億 54 萬달러로서, 總收入의 7.3%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貿易은 最近 數年 동안에 급격히 增加하는 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하여, 價値面에서 보면 中央計劃經濟國의 發展途上國에 대한 輸出은 1950 年부터 1962 年까지 5 億 5 百萬달러에서 21 億 54 萬달러로 430%까지 增加했다. 한편, 同一한 期間 중에 發展途上國으로부터 中央計劃經濟國에 輸入은 6 億 14 萬달러에서 16 億 34 萬달러로 167%까지 擴大를 나타냈다.

26. 이와 같은 貿易擴大는 주로 去來商品의 量과 金額 또는 그 兩者를 規定하는 中長期間의 雙務貿易協定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兩國家集團間의 급속한 貿易成長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擴大할 상당한 餘地가 있다. 이는 보다 신속한 成長率을 沮害하는 一定한 障害의 除去를 통해서 또 利害關係國들에 의해 취해진 훨씬 적극적인 措置에 의해서 確保될 수 있다. 貿易의 주된 障碍는 發展途上國과 中央計劃經濟國間에 貿易關係가 아직 確立되어 있지 않았다는 事實과, 몇 가지 경우, 개개의 發展途上國이 개개의 中央計劃經濟國과의 貿易均衡을 위해 당연히 締結되어야 할 雙務貿易體系의 必要性, 그리고 一部 發展途上國의 公共 및 民間貿易擔當機關間에 中央計劃

經濟國의 產品, 貿易政策 및 慣例 등에 관한 知識의 缺乏 등으로 부터 惹起된다.

27. 이러한 諸問題들은 解決될 수 있으며 또한 中央計劃經濟國 과 많은 發展途上國間에 貿易은 그 集團國家間에 正常的인 關係의 確立을 통해서, 發展途上國들에게 그들의 對外貿易政策의 테두리 안에서 그와 같은 貿易의 促進을 위해 特別한 便宜를 提供해줌으로써, 또 中央計劃經濟國들이 그들의 長期計劃의 테두리 안에서 發展途上國으로부터 1次產品, 半製品 및 完製品輸入의 多樣化와 均衡 있는 增大를 기할 수 있는 적절한 措置를 採擇함으로써, 그리고 中央計劃經濟國들이 雙務協定 이외에 모든 貿易對象國間에 相互利益이 된다고 생각되는 경우, 多角的 貿易 및 支給方式 등을 점차 活用함으로써 兩集團間的 貿易을 급격히 擴大시킬 수 있다. 發展途上國 들도 그들 쪽에서 中央計劃經濟國들에게도 先進市場經濟國들에게 正常的으로 許諾했던 것에 못지 않는 貿易條件을 許容해야 한다.

28. 中央計劃經濟國과 先進市場經濟國間的 貿易은 最近 급격히 增大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貿易의 潛在力은 行政的, 經濟的 및 貿易政策的 障礙로 말미암아 充分히 實現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問題를 解決하고, 關係當事國들의 相互利益을 위해 貿易을 擴大하여 實現 가능한 水準에까지 擴大 達成하기 위한 努力이 最近 數年 동안에 많은 進展을 보여 왔다.

29. 本會議에 勸告된 將來의 制度的 諸協定の 테두리를 포함하여 어떤 有益한 會議에서도 이와 같은 努力이 계속된다면, 經濟·社會 體制를 달리하는 諸國間的 貿易水準은 漸進적으로 보다 擴大해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은 發展이 世界貿易全體를 위한 것이라고 認定

한다.

30. 先進國間의 貿易은 增大되어 世界全體貿易에 있어서 이와 같은 交易의 比重도 또한 上昇하고 있는데 반하여, 發展途上國間의 貿易水準은 극히 낮고 또 世界貿易에 있어서 그 重要度도 점차 下落해 왔다. 地域間 및 地域內部間의 貿易擴大는 發展途上國에게 그들의 生産品을 위해 보다 넓은 市場을 提供해 주며, 또 그들 貿易을 더욱 더 多樣化하고, 貴重한 外貨를 節約할 수 있게 하는 한 發展途上國에게 重要하다. 그러므로, 發展途上國間에 더욱 密接하고 또 廣範圍한 貿易上 紐帶의 確立이 必要하다.

第 4 節 諸根據와 考察

本會議는 그의 勸告案을 作成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基本的인 諸根據와 考察을 指針으로 삼았다.

31. 公平하고 互惠的인 貿易의 發展은 世界 모든 國家의 보다 높은 生活水準, 完全雇傭 및 신속한 經濟發展을 促進시킨다.

32. 發展途上國의 基本的인 諸問題는 충분히 確認되어 있으며, 또한 現時點에서 要求되고 있는 것은 行動하고, 發展途上國의 輸出 및 輸出收益을 增大시키며, 또 그들의 經濟開發을 促進시키기 위한 實際的인 諸措置를 一般的으로 採擇하려는 普遍的인 覺悟이다.

33. 發展途上國 및 좁은 범위의 1次商品에 크게 依存하고 있는 기타 國家들이 直面하고 있는 對外貿易上の 困難한 根本問題는 그들 諸國 輸出의 90%를 점하는 1次商品의 輸出에 있어서 그 需要의 緩慢한 成長率, 1次商品世界市場에 대한 先進國 參與의 增加, 그리고 1950년부터 1962년까지 있어서 發展途上國 貿易條件의 惡

化 등이다.

34. 發展途上國經濟의 構造調整期間중 이들 諸國은 産業化와 多元化過程에서 發生하는 輸入需要增大에 對處하기 위해 여전히 商品輸出에 크게 依存할 것이다.

35. 특히, 發展途上國으로서는 經濟開發을 위해 商品貿易이 극히 重要하고 또한 1次商品貿易에 영향을 미치는 特別한 어려움 때문에, 國際商品問題에 대한 集中的인 攻擊을 가할 수 있도록 廣範한 前線에 걸쳐서 또 劇的이고 包括的인 方針에 입각하여 對策을 강구하는 것이 重要的인 긴급한 當面課題이다.

36. 따라서, 모든 産業國家側에서는 問題되고 있는 不利한 諸傾向을 시정하기 위해 慎重한 努力이 要求된다.

37. 이러한 包括的인 措置는 發展途上國들에게 그들의 經濟的, 社會的 開發을 위해 擴大財源을 提供할 수 있도록, 發展途上國의 實際輸出收入의 劇的이고 着實한 增大을 자극하며, 또한 1次商品市場의 綜合的인 安定化를 기하기 위한 手段의 하나로서, 國際商品協定을 包含해야 한다. 商品貿易에 대한 既存障害의 除去를 促進하고 새로운 障害의 發生을 豫防하는 것이 역시 必要하다.

38. 1次商品의 輸出價格과 收益의 短期的인 動搖로 말미암아 惹起된 심각한 殘存問題에 對處하기 위해서는 補償融資制度가 적절한 解決策이다. 長期的인 殘存問題에 대해서는 財政的인 解決策이 강구되어야 한다.

39. 發展途上國은 傳統的인 1次產品 및 原資材의 輸出에만 依存해서는 안된다. 發展途上國에 있어서 輸出潛在力이 있는 産業의 促進이 必要하다. 完製品 및 半製品輸出의 多元化 및 擴大는 發

展途上國이 조만간에 對外收支의 均衡을 達成하도록 돕는 重要한 手段에 속한다.

40. 發展途上國에 있어서 潛在力이 있는 產業의 確立 및 擴大는 綜合的인 計劃의 테두리 안에서 發展途上國側에 대해 先進國 및 國際機構에 의한 일련의 措置와 行動을 要求한다.

41. 發展途上國의 經濟開發에 있어서 公共部門의 役割이 國內外的 民間資本의 役割과 아울러 認定되고 있다.

42. 發展途上國은 先進國에서 完製品 및 半製品을 市場化하는 데 있어서 여러가지 障礙와 어려움에 直面한다. 發展途上國의 產業輸出을 促進하기 위해 그들의 產品이 특히 先進國이나 기타 發展途上國의 市場에 自由로이 接近토록 해야 한다.

43. 市場에 보다 容易하게 接近하려면, 既存의이고 傳統的인 完製品 및 半製品의 輸出 뿐만 아니라, 發展途上國에 있어서 技術的으로 進歩되고 高度로 複雜한 產業商品을 生産하는 보다 廣範圍한 産業을 確立할 機會를 改善하기 위해 보다 광범한 領域의 生産品을 提供해야 한다.

44. 完製品 및 半製品의 大量輸入은 先進國産業構造를 一部 調整할 수도 있다.

45. 貿易障壁을 낮추는 것은 各先進國市場에 있어서 國內生産業者와 關係되는 發展途上國의 競爭的 立場을 改善할 것이다. 그러나, 市場에서 기타 先進國으로부터의 輸出에 대해서는 그들의 競爭的 位置를 改善하지 못할 것이다. 發展途上國의 輸出을 위해서는 要求되는 그와 같은 輸出의 擴大를 촉발시킬 수 있는 特別한 措置가 必要하다.

46. 對先進國 完製品輸出擴大 이외에, 發展途上國相互間的 이와 같은 貿易의 擴大는 한편으로는 近代產業의 經濟的 技術要件과, 다른 한편으로는 各國의 制限된 國內市場으로 인한 딜레머를 해결하는데 寄與할 것이다. 經濟協力の 여러가지 形態와 이러한 形態들이 일 으킬 수 있는 問題點 때문에, 약간의 伸縮性이 必要할 것으로 考 慮된다.

47. 本會議는 貿易과 國際協調를 통한 開發問題를 處理하는데에 國際社會가 焦點을 맞추어야 할 一般的인 目標을 檢討했다. 國際的인 財政的, 技術的 協調의 諸分野에 있어서 政策에 對한 建設的인 指 針을 提供하는데 目的을 두었던 수많은 原則과 基準이 策定되었다. 그 主要한 問題點은 다음과 같다.

- (a) 發展途上國을 위한 보다 높은 成長率의 必要性, 外換利用度를 增加시킬 措置를 包含하여 先進國과 發展途上國이 취할 措置
- (b) 國際的인 財政, 技術的 協調를 위한 指針, 援助의 條件 및 健全한 開發計劃 내지 施策의 持續性을 維持하기 위한 貿易과 援助의 關係
- (c) 對外債務問題
- (d) 發展途上國으로 財源의 流通을 增加시킬 必要성과 그 方案
- (e) 補償融資, 補充融資措置
- (f) 海運 및 기타 모든 貿易外收支項目의 諸側面
- (g) 定期的인 檢討의 必要性

48. 開發融資로 惹既된 많은 複雜한 分野의 諸問題에 對한 重要 性을 널리 認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認識은 이 分野에 있 어서 계속적인 檢討와 行動의 基礎를 形成해야 한다.

49. 또한 國家的, 地域的, 國際的인 水準의 必要한 協調努力을 形成시키기 위해, 先進國과 發展途上國間에 公正한 責任分擔과 함께, 모든 關係當事國에 의한 보다 많은 體系的인 努力을 할 必要性을 認定한다.

50. 좀 더 具體的으로 말하면, 다른 制限된 범위이기는 하지만 前進을 이룩한 몇가지 重要한 分野에 있어서는 廣範한 合意를 이룩한 바 있다. 이러한 分野는 發展途上國의 加速化된 成長과 外換利用度의 增加를 위한 措置, 國際的인 財政的, 技術的 協力, 補償融資 및 補充的인 融資措置를 위한 指針, 그리고 發展途上國의 貿易과 關聯된 海運의 一部側面을 包含한다.

51. 마지막으로 기타 分野에서는 이미 提案되었던 具體的 措置를 더욱 더 考察하거나 또 적당한 國際機構가 研究해야 할 것에 合意한 바 있다.

52. 制度的 協定の 問題에 接近함에 있어서, 本會議는 모든 國家에 있어서 生活水準을 向上시키고, 또 發展途上國의 經濟成長을 促進하기 위해서는 持續的인 努力이 必要하며, 그리고 國際貿易이 經濟開發을 위한 重要한 手段이라는 事實을 考慮하였다. 本會議는 貿易 및 經濟開發에 關係되는 問題, 특히 發展途上國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問題들을 綜合的으로 檢討할 수 있는 唯一한 機會를 提供했다. 만일, 發展途上國의 加速化된 成長에 國際貿易의 充分한 寄與가 必要한 政策의 策定 및 履行을 통해 成功的으로 達成할 수 있다면, 적절하고도 効率的으로 機能하는 組織的인 諸協定이 必須不可缺한 要素라는 것을 認定한다.

53. 이를 위해, 本會議는 既存 國際機構의 作用을 審査하고, 모든

貿易問題와 開發에 관련된 諸問題를 處理함에 있어서, 이들 機構의 貢獻도와 그 限界를 모두 認定했다. 本會議는 參加한 諸政府가 當事國이거나 當事國이 될 수도 있는 諸機構 및 諸協定을 最大限 效率的으로 利用해야 할 것을 믿으며, 또한 동시에 現存 및 提案된 制度的 諸協定을 公히 그들의 事業과 活動의 경험에 비추어, 再檢 討되어야 할 것으로 確信한다. 本會議는 發展開途國間에 綜合的인 貿易機關의 設立에 대한 廣範한 要望을 한층 더 注目하며, 또한 本會議가 着手한 事業을 계속하여, 本會議의 勸告와 結論을 實踐하기 위해서는 制度的 協定이 더욱 必要하다는 것을 認定했다.

第 2 部 本會議勸告의 強化

第 1 節 原 則

54. 本會議는 開發을 위한 國際貿易關係 및 貿易政策을 規制하는 다음과 같은 一般原則을 勸告하였다(附屬書類 A. I. 1 參照).

原則(1) 貿易關係를 包含한 諸國家間的 經濟關係는 諸國家의 主權平等, 諸人民의 自決 및 他國의 內政不干涉原則의 尊重을 基礎로 한다.

原則(2) 經·社會體制의 差異에 입각한 어떠한 差別도 하지 않는다. 貿易方法을 採擇함에 있어서는 이 原則에 一致해야 한다.

原則(3) 모든 國家는 他國家와 自由로이 貿易하고 自國의 天然資源을 經濟開發 및 自國國民의 福祉를 위해 自由로이 處分할 主權을 가진다.

原則(4) 經濟開發과 社會的 進歩는 國際社會全體의 共通의 關心事이

어야 하며, 經濟的 繁榮 및 社會福祉의 增進으로 諸國家間의 平和的 關係 및 協調와 強化를 도와야 한다. 따라서, 모든 國家는 全世界에 걸친 經濟成長을 促進하고, 특히 發展途上國에서 先進國과 生活水準의 隔差를 縮小시키기 위해, 平均所得을 着實하고 실질적으로 增加시킬 必要성과 一致하는 成長率을 促進하도록 對內外的인 經濟政策을 追求할 것을 誓約한다.

原則(5) 國內的, 國際的 經濟政策은 특히 發展途上國과 全世界의 必要와 利益에 調和되는 國際分業의 達成에 置重되어야 한다. 先進國은 發展途上國의 經濟的, 社會的 進歩를 加速化하려는 그들의 努力을 支援하고, 그들의 經濟를 多樣化하기 위해 發展途上國이 취한 措置에 協調하며, 이 目的을 위해 自國經濟의 적절한 調整을 자극해야 한다.

原則(6) 國際貿易은 經濟開發의 가장 重要한 要素의 하나이다. 國際貿易은 經濟的, 社會的 進歩와 一致하는 그러한 規則에 의해서 支配되어야 하며, 이에 반하는 政策에 의해 沮害되어서는 안된다. 모든 國家는 특별히 發展途上國의 輸出收益의 급격한 增大에 寄與하며, 그리고 一般的으로 發展段階가 類似하거나, 서로 다른 國家 또는 經濟, 社會體制를 달리하는 國家들을 不問하고, 모든 國家間의 貿易擴大 및 多元化의 促進에 寄與하는 國際貿易條件을 造成하는데 協調해야 한다.

原則(7) 國際貿易의 擴大와 多元化는 市場接近機會의 增大와 有利한 1次產品輸出價格에 달려 있다. 先進國은 發展途上國產品의 貿易 및 消費를 沮害하는 貿易障壁과 기타 制限을 漸進적으로

縮小하여 除去하며, 동시에 發展途上國의 輸出市場을 創設, 擴大하는 것과 같은 積極的인 措置를 취해야 할 것이다. 모든 國家는 적당한 國際協定을 통해 특히 發展途上國의 1次 産業의 輸出收益을 公正하고 有利한 價格으로 增大하고 安定化하며, 또한 完製品價格과 1次產品價格間에 相互 受諾可能한 關係를 維持하기 위한 措置를 實踐하는데 秩序있는 基盤에 입각하여 協調해야 한다.

原則(8) 國際貿易은 最惠國待遇에 입각하여 相互 有益하게 遂行되어야 하며, 他國의 貿易利益을 해치는 施策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先進國은 모든 發展途上國에 讓步를 하여 先進國相互間에 許容된 모든 讓步를 發展途上國에 擴大해야 하며, 이와 같은 讓步의 代價로 어떠한 讓步를 發展途上國에 要求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特惠的인 讓步는 關稅 또는 非關稅를 莫論하여 發展途上國 全體에게 賦與되어야 하며, 동시에 그와 같은 特惠는 先進國에 擴大되어서는 안 된다. 發展途上國은 發展途上國 相互間에 運用되고 있는 特惠를 先進國에 擴大시킬 必要는 없다. 現在 一部 發展途上國이 一部 先進國에서 享有하고 있는 特殊한 特惠가 過渡的인 것으로 看做되어야 하며, 漸進的으로 緩和되어야 한다. 이러한 特惠는 關係國에 대해 적어도 對等한 利益을 保證하는 効率的인 國際措置가 實施될 경우 廢止되어야 한다.

原則(9) 地域經濟集團에 參加하고 있는 先進國은 經濟統合이 第3國과 특히 發展途上國으로부터 輸入擴大를 個別的으로나 集團的으로 沮害하거나 또는 逆效果를 일으키지 않도록 保障하는데

最大限의 努力을 해야 한다.

原則(10) 地域經濟의 集團化, 統合 내지 기타 形態의 經濟協調는 發展途上國間에 域內, 域外貿易을 擴大하고, 그들의 經濟成長, 工業 및 農業의 多元化를 獎勵하는 한 手段으로써, 여러 關係諸國의 開發의 特殊性 및 經濟, 社會體制의 相異性を 당연히 勘案하면서 推進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經濟協力は 關係諸國의 經濟開發에 效果的으로 貢獻해야 하며, 또한 이러한 集團化에 加擔하지 않는 다른 發展途上國의 經濟開發을 沮害하지 않도록 保障되어야 한다.

原則(11) 國際機構와 先進國은 發展途上國의 輸出收益을 補充시켜 줌으로써, 發展途上國의 國家經濟開發政策, 經濟計劃 및 施策에 입각한 多元化, 產業化 및 生産性向上을 통한 經濟成長을 促進시키려는 努力을 支援하고 強化하도록 國際的 財政·技術·經濟援助의 純額을 增加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援助는 여하한 政治的, 軍事的 條件도 結付해서는 안된다. 이 援助는 外國의 公共 및 民間借款과 資本을 包含하여 그 形式 및 出處가 어떠한 間에, 發展途上國의 貿易 및 開發의 必要性을 충분히 維持하는 條件으로 提供되어야 한다. 國際財政, 通貨政策은 發展途上國의 貿易 및 開發의 必要性을 충분히 考慮하여 考案되어야 한다.

原則(12) 모든 國家는 效率的인 國際管理下에서 全面完全軍縮協定을 締結한 結果로서 解放된 財源의 重要部分을 發展途上國의 經濟開發促進을 위해 配當되어야 한다는 것을 認定한다.

原則(13) 本會議는 附屬書類 A. I. 2 下에 揭示된 內陸國의 通過貿易

에 관한 諸原則을 本會議가 採擇한 原則의 一部分으로서 包
含시킬 것을 決定했다.

原則(14) 植民地諸國, 諸人民에 대한 獨立賦與에 관한 UN宣言에 입
각한 完全한 脫植民地化 및 各種植民地主義의 殘滓一掃는 經
濟開發 및 天然資源에 대한 主權行使를 위해 必要한 條件이다.

原則(15) 發展途上國의 經濟開發을 위한 國際的인 政策 및 措置의 採
擇은 各發展途上國에 公平한 機會를 賦與하여, 持續的인 成長
을 기할 수 있는 効果的인 手段으로서, 後發發展途上國에게 特
別한 注意를 기울여야 하므로, 各發展途上國의 特性 및 相異
한 發展段階를 勘案해야 한다.

55. 本會議는 開發을 造成하는 國際的인 貿易關係 및 貿易政策을
規制하는 수많은 特別原則을 勸告하였다(附屬書類 A.I.1 參照).

56. 本會議는 內陸國의 通過貿易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勸告를 採
擇했다.

本會議는

內陸國의 通過貿易問題의 여러 側面을 注目하면서

內陸國의 經濟開發의 促進을 위하여 內陸國의 位置가 그들의 貿
易에 미치는 效果를 克服할 수 있도록 可能한 便宜를 提供하는
것이 緊要하다는 것을 考慮하면서 解釋上의 註와 함께 다음과 같
은 原則을 採擇한다.

原則(I) 各內陸國의 海洋에 대한 自由로운 出入의 認定은 國際貿易
의 擴大 및 經濟開發을 위해 本質的인 原則이다.

原則(II) 領海 및 內海에서 內陸國의 國旗를 揭揚한 船舶은 領海國
(territorial state) 이외의 沿岸國의 國旗를 揭揚한 船舶과

同一한 權利를 가지며, 동시에 同一한 待遇를 享有해야 한다.
原則(III) 沿岸國과 同等한 條件으로 海洋의 自由를 享有하기 위해서
沿岸을 가지지 않는 國家는 海洋에 自由롭게 接近해야 한다.
이를 위해, 海洋과 沿岸을 가지지 않은 國家 사이에 位置한
國家는 後者와의 一般協定에 따라, 또한 既存 國際慣例에 따
라 그 國家의 國旗를 揭揚한 船舶에 대해 海港接近 및 그
러한 港口의 使用에 관하여, 自國船舶 내지 기타 國家에게 賦
與했던 待遇와 同一한 待遇를 해야 한다.

原則(IV) 內陸國의 經濟發展을 충분히 促進하기 위해, 上記한 內陸國
은 相互主義에 입각하여 모든 環境에서 모든 商品에 대하여
地域的, 國際的 貿易에 自由롭게 接近할 수 있는 方法으로 自
由, 無制限的 通過를 認定해야 한다. 通過中の 商品들은 어
떠한 關稅義務에도 따르지 않아도 된다. 通過運送手段은 通
過國의 輸送手段을 使用하는데 賦課하는 特別稅金 내지 賦課
金 이상의 것에 따라서는 안된다.

原則(V) 通過國은 그 領土에 대한 完全한 主權을 維持하는 반면,
自由롭고 無制限的인 通過權의 行使가 그의 어떠한 種類의 正
當한 利害關係도 결코 侵害당하지 않도록 모든 不可缺한 措
置을 취할 權利를 가진다.

原則(VI) 相異한 地理的 位置에 있는 內陸國의 貿易 및 開發에 관
한 特別한 問題를 解決하는데에 普遍的인 어프로우치의 發展
을 促進시키기 위해, 이와 關聯된 地域的 및 기타의 國際協
定을 모든 國家들이 獎勵해야 한다.

原則(VII) 特殊한 地理的 位置를 勘案하여, 內陸國에 認定된 便宜 및

特殊한 權利는 最惠國條項의 運用에서 除外된다.

原則(VII) 內陸國의 海洋에 自由로운 接近을 支配하는 諸原則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問題에 관한 2個國 또한 그 이상의 締約國間에 存在하는 既存의 諸協定을 廢棄하지 않는다. 더우기 後者가 前記한 諸規定보다 不利하거나 또는 反對하는 體制를 確立하지 않는 한, 이러한 原則들은 將來의 그와 같은 協定 締結에 관한 障礙로서 提起되지 않는다.

(註釋) : 이러한 諸原則은 相互聯關되어 있으며, 또한 各原則은 他原則과 聯關되어 解釋되어야 한다.

57. 開發을 造成하는 國際貿易關係 및 貿易政策을 規制하는 諸原則의 採擇을 勘案하여, 本會議는 일련의 諸原則을 可及的 가장 빠른 時間내에 가장 廣範하게 合意에 到達하는 措置를 취할 必要性을 認識했으며, 또한 本會議에서 提案된 制度的 機構가 이를 위한 努力을 계속해야 할 것을 勸告하였다(附屬書類 A.I.3 參照).

第 2 節 國際商品問題

58. 發展途上國의 1次商品貿易問題를 處理하기 위해서, 本會議는 一般措置와 아울러 개개의 商品에 關聯된 特殊措置에 의해 發展途上國의 輸出收益을 增加시키기 위한 手段으로서 이하에 概設된 諸規定을 考慮해야 하며, 또한 이 目的을 위해 關係政府가 發展途上國의 緊急한 諸問題의 解決策으로서 다음 規定 중 某種의 考慮(附屬書類 A.II.1 參照)에 비추어 適用可能한 事項을 可能한 빠른 時日 內에 實施하도록, 實際的인 措置를 취해야 할 것을 勸告했다.

(a) 發展途上國의 經濟, 社會開發을 위해 擴大되는 資源을 提供

하도록 發展途上國의 實質輸出輸入의 劇的이고 着實한 成長을 刺戟하고 合理的인 豫測可能性을 기하는데 基本目的을 가진 國際商品協定の 諸規定을 適切하고 公正, 安定된 1次商品의 價格을 통해 輸入國消費者의 利益도 考慮하고 또한 輸入國의 購買力도 當연히 考慮하는 한편, 만족할 만한 市場接近과 增加된 輸入과 消費 뿐만 아니라, 生産과 市場政策의 協調를 確保하였다(附屬書類 A.Ⅱ.1 및 A.Ⅱ.2 參照).

(b) 先進國에 있어서 貿易障礙(關稅·非關稅 및 기타)와 差別政策의 撤廢, 1次商品輸出市場機會의 擴大와 그들의 消費 및 輸入增大를 위한 措置 및 行動計劃에 대한 諸規定(附屬書類 A.Ⅱ.1 과 A.Ⅱ.2 參照).

59. 本會議는 UN貿易·開發會議 후에 設立되는 常設機構의 테두리 안에서 商品協定 및 政策委員會의 設立에 대해 全般的으로 찬성했다. 또한, 本會議는 새로운 委員會를 위한 委任條項을 대체로 策定하고, 常設機構가 이들을 적극적으로 有利하게 考慮할 것을 要求했다(附屬書類 A.Ⅱ.1 參照).

60. 本會議는 1次商品輸出에 따른 市場機會를 促進시키는 積極적인 措置와 先進國 및 發展途上國에서 公히 消費 및 輸入의 增大를 위한 勸告를 또한 採擇했다. 本會議는 食糧援助가 UN과 UN食糧農業機構傘下에서 綜合的이고 持續적으로 提供되는 國際援助의 一環이 되어야 한다는 信念을 表明하였다. 本會議는 또한 發展途上國에 의해 輸出되는 天然產品이 合成品 및 기타 代替品과 競爭될 경우에 對處할 國內的이고도 國際的인 特殊措置를 勸告하였다. 또한, 本會議는 그 중에서도 商品貿易의 組織化를 위한 行動計劃의 研

究와 準備를 勸告하였다(附屬書類 A.Ⅱ.3, A.Ⅱ.4, A.Ⅱ.5, A.Ⅱ.6, A.Ⅱ.7 및 A.Ⅱ.8 參照).

61. 本會議는 一部發展途上國이 鑛物 및 燃料의 輸出로부터 얻어지는 外換收益에 크게 依存하고 있음을 注目하여, 先進國들이 이러한 輸出로부터 發展途上國의 實質收入을 增大시키기 위해, 이들 產品의 貿易과 消費에 대한 障壁과 差別, 특히 內國稅를 效率적으로 削減 또는 撤廢해야 할 것을 勸告하였다. 本會議는 또한, 鑛物 및 燃料을 生産하는 發展途上國에 대해서 이러한 天然資源輸出의 結果로서 생기는 收益을 增加시키는 措置를 勸告하였다(附屬書類 A.Ⅱ.9 參照).

第3節 完製品·半製品의 貿易

62. 本會議(UN貿易開發會議)는 發展途上國의 經濟開發과 生活水準向上을 促進시키는 한 手段으로서, 이들 諸國의 完製品·半製品의 輸出多元化 및 擴大에 대한 緊急한 必要性을 認定한다. 本會議는 先進國과 發展途上國이 公히 個別的 및 共同行動으로, 完製品·半製品의 國際貿易成長에 대한 發展途上國의 參與를, 이들 諸國의 開發 必要性和 比例하여 增大시키는 것이 必要하다고 생각한다.

63. 本會議는 發展途上國의 輸出潛在力を 가지고 있는 產業의 振興과 完製品·半製品 輸出擴大를 돕는 일련의 勸告를 採擇했다. 이러한 勸告는 다음 問題를 取扱한다.

(a) 產業開發을 위해 專門機關의 設立을 取扱하는 產業開發
(附屬書類 A.Ⅲ.1 參照)

(b) 部分的 分業에 관한 產業部門協定(附屬書類 A.Ⅲ.2 參照)

(c) 輸出潛在力이 있는 産業의 設立 및 擴大(附屬書類 A.Ⅲ.3 參照)

64. 本會議는 發展途上國의 完製品·半製品輸出을 安定的이고 持續的인 基盤 위에서 增大시키고 多樣化시킬 수 있도록, 本會議參加政府가 發展途上國에 利益이 되는 完製品·半製品市場에 最大한 接近할 수 있는 對外貿易, 援助政策 및 計劃에 대한 一定한 指針을 採擇할 것을 勸告하였다. 이러한 諸指針에는 發展途上國에 있어서 輸出産業의 確立을 위해 各政府和 民間團體間的 協調에 대한 發展途上國과 先進國에 의한 적절한 規定이 包含된다(附屬書類 A.Ⅲ.4 및 A.Ⅲ.6 參照).

65. 本會議는 開發途上國에 有利한 特惠의 擴大로 이들 國家의 産業開發을 支援한다는 原則에 대하여, 모든 發展途上國과 大多數先進國이 署名한 協定과 또 一部 先進國이 表明했던 反對를 公히 注目했다. 本會議는 UN事務總長이 發展途上國에 대해 非互惠主義에 입각한 이와 같은 特惠를 施行할 最善의 方案을 導出하고, 아울러 關係된 原則에 관한 相異點을 더욱 더 論議하기 위해 政府派遣代表委員會를 設立할 것을 勸告하였다(附屬書類 A.Ⅲ.5 參照).

66. 本會議는 적절한 措置를 통해, 發展途上國으로부터 完製品·半製品의 輸入을 增加시키기 위한 措置를 취하려는 中央計劃經濟國의 用意에 입각한 勸告를 採擇하였다(附屬書類 A.Ⅲ.7 參照).

67. 本會議는 發展途上國間的 完製品·半製品貿易의 促進을 위한 實際的인 措置를 約述한 勸告를 採擇하였다(附屬書類 A.Ⅲ.8 參照).

68. 本會議는 또한 先進國에 대하여 특히 輸入促進과 産業調整에 관한 某種의 措置를 취하도록 要求한 勸告를 採擇하였다

(附屬書類 A . III . 6 參照) .

第 4 節 國際貿易擴大를 위한 財政支援과 發展途上國의 貿易外去來의 改善

69 . 開發, 貿易 및 貿易外去來에 관한 財政支援에 대하여 本會議에 提出된 主要한 問題點에 대해서는, 반드시 完全한 合意는 아니지만, 大幅 意見의 合致를 보았다.

70 . 本會議는 UN開發 10 年을 위해 設定된 年 5 %의 成長目標가 不充分하다는 廣範圍한 意見을 認定한다. 本會議는 發展途上國과 先進國雙方이 實現可能한 경우, 開發 10 年 동안에 計劃했던 것보다 더 높은 比率로 發展途上國의 成長促進을 위해 國內外資源을 動員함과 동시에, 各發展途上國의 經濟狀況, 經濟政策 및 計劃을 關係國의 同意下에서 檢討하기 위해 취해져야 할 措置의 必要性을 認定한다. 本會議는 또한 이러한 關係에서 輸出收入, 貿易外所得 및 資本流入의 總合計로서 惹起되고, 또 價格上昇을 考慮하여, 發展途上國 自體에 의해 취해진 諸措置가 이러한 보다 높은 成長率을 達成할 수 있도록 妥當해야 하며, 또한 先進國 및 發展途上國을 망라한 모든 國家들이 이러한 것을 確保하기 위해 必要視되는 그와 같은 措置를 個別的 및 集團的으로 취해져야 할 것을 認定한다. 本會議는 또한 各經濟先進國이 附屬書類 A . V . 1에 規定된 諸原則의 見地에서 資本의 純輸入國이라는 特殊한 立場을 考慮하여, 最小限度 國民所得 1 %의 資金을 開發途上國에게 財源으로 提供하도록 努力할 것을 勸告하였다 (附屬書類 A . IV . 2 參照) . 本會議는 또한 특히 發展途上國에 대한 政府借款의 利率이 正常的으로 3 %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規定한 勸告를 採擇하였다 (附屬書類 A . IV . 3 參照) .

71. 本會議는 産業國이 發展途上國에게 雙務的 및 多邊的 援助計劃을 통해 提供하는 財政, 技術協調의 條件에 관한 勸告를 採擇하였다(附屬書類 A.IV.A, A.IV.3 및 A.IV.4 參照).

72. 本會議는 保證되고 適切한 條件下에서는 언제나 적당한 期間의 支拂猶豫, 償還 및 妥當한 利率로 債務延長 또는 整理를 促進할 目的으로 發展途上國의 累積債務의 償還負擔增大를 處理하는 一定한 措置를 提案하였다(附屬書類 A.IV.5 參照). 本會議는 또한 商品으로 상환될 수 있는 産業施設借款에 관한 引渡可能性을 찬성하였다(附屬書類 A.IV.6 參照).

73. 本會議는 發展途上國에 대한 財政支援의 量的 增大와 條件改善에 관한 措置 및 研究를 提案하는 다음과 같은 勸告를 採擇하였다.

(a) UN資本開發基金(附屬書類 A.IV.7 參照) 및 UN特別基金의 漸進的 轉換에 관한 勸告(附屬書類 A.IV.8 參照)

(b) 地域的 基盤에 입각한 開發援助提供(附屬書類 A.IV.9 및 A.IV.10 參照)

(c) 發展途上國에 公共, 民間部門에 公共, 民間資本의 流入促進(附屬書類 A.IV.11, A.IV.12 및 A.IV.13 參照).

(d) 信用, 輸出金融과 市場化 및 保險의 利用條件의 檢討(附屬書類 A.IV.14, A.IV.15 및 A.IV.6 參照).

74. 이 이외에 本會議는 發展途上國에 있어서 輸出收益의 惡化가 開發을 阻害하고 있음을 認識했다. 따라서, 本會議는 一般的인 輸出低下로 인한 支拂惡化에 관해서는 1963年 2月 이후 國際通貨基金에 의해 運營되는 補償信用制度의 諸條件을 緩和하도록 共同基金

會員國으로 하여금 某種의 措置를 研究할 것을 勸告하였다 (附屬書類 A.IV.17 參照). 보다 長期的인 問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勸告했다 (附屬書類 A.IV.18 參照).

(a) 國際復興開發銀行은 輸出收益이 合理的인 豫想에 未達하는 發展途上國에 대하여 補助資金을 提供하는 가능한 計劃案을 研究하도록 要求될 것. 適切한 經濟環境을 考慮한다면, 이는 輸出價格의 大幅的인 上昇으로 인한 惡影響도 包含할 것이다.

(b) 本會議에서 勸告된 常設機構는 輸出收益의 低下 및 去來條件惡化의 影響 등을 考慮하면서, 本會議에 參加한 發展途上國 代表들이 強力히 主張한 바 있는 補償融資의 概念과 提案을 研究하고 이에 관한 討議를 더욱 組織化 할 것.

75. 本會議는 이 會議의 目的에 따라 貿易 및 開發問題와 關聯된 國際金融問題點에 관한 研究를 역시 勸告하였다 (附屬書類 A.IV.19 參照). 本會議는 또한 國際財政, 金融機關에 있어서 政策作成過程에 發展途上國 國民의 參與에 관한 勸告를 承認하였다 (附屬書類 A.IV.20 參照).

76. 本會議는 海運問題點에 關해 共同諒解事項을 包含한 草案에 合意하고, 또한 必要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 어떤 委員會를 包含하여, 適切한 政府間의 節次가 海運分野에서 理解와 協調를 促進하고 또 그 經濟的 側面을 研究하고 報告하기 위해 設立되어야 할 것을 勸告하였다 (附屬書類 A.IV.21 및 A.IV.22 參照).

77. 本會議는 또한 發展途上國의 貿易外去來를 改善할 必要性을 考慮하여, 保險, 觀光, 技術援助 및 技術移轉에 관한 措置를 檢討하고 勸告하였다 (附屬書類 A.IV.24, A.IV.25 및 A.IV.26 參照).

第 5 節 制度的 協定

78. 本會議은 第 19 次 UN 總會에 대해서 특히 다음의 規定을 採擇할 것을 勸告하였다.

(a) 現 UN 貿易開發會議은 UN 總會의 한 機關으로 設立되어, 會期는 3 年으로 하며, 會員資格은 UN 專門機構 또는 國際原子力委員會의 會員國으로 構成되어야 한다.

(b) 本會議의 主要機能은 다음과 같다.

(I) 既存 國際機關의 機能을 參酌하여 특별히 促進하기 위한 國際貿易, 특히 發展段階를 달리하는 國家間, 發展途上國間 및 經濟, 社會體制를 달리하는 諸國家間的 貿易을 促進할 것.

(II) 國際貿易 및 經濟開發에 關聯된 諸問題에 관한 原則 및 政策을 形成할 것.

(III) 經濟體制와 發展段階의 相異性を 考慮하여, 上記한 諸原則 및 政策을 實施하도록 提案하고, 또 그것의 能力 내에서 이 目的에 適合한 기타 措置를 취할 것.

(IV) 一般적으로 國際貿易 및 經濟開發의 關聯問題分野에 있어서 UN 體制 내의 기타 機構와 活動을 檢討하여 促進하고 또한 이와 關聯하여, 協調에 대한 憲章上的 責任을 履行하는데 있어서 總會 및 經濟社會理事會와 協調할 것.

(V) 適節한 경우, UN의 主務機關과 協調하여, 既存 交涉機關의 正當性を 충분히 考慮하고, 또 그 活動의 重複을 避하면서, 貿易分野에 있어서 多邊的인 法的機構의 交涉 및 採擇을 위한 行動에 着手할 것.

- (VI) UN憲章 第1條를 遂行하는데 있어서, 各國政府 및 地域經濟集團들의 貿易政策 및 이와 관련된 開發政策을 調和시키기 위한 中樞機關으로서 利用할 것.
- (VII) 權限 내의 기타 問題를 處理할 것.
- (c) 貿易開發理事會라고 알려진 本會議의 常設機關은 經濟分野에 있어서 UN機構의 一環으로 設立되어야 하며, 同理事會는 公正한 地域的 配分 및 主要貿易國을 계속 代表하고자 하는 願望을 충분히 考慮하여, 本會議會員國 중에서 本會議가 選出한 55個國으로 構成한다.
- (d) 同理事會는 그 機能을 効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해서 必要할 경우, 下部機關을 設立하며 또한 특별히 3個委員會—商品, 完製品 및 貿易外去來 및 貿易과 關聯된 金融—를 設立한다.
- (e) 本會議에 代表로 參席했던 各國은 1票의 投票權을 所有한다. 第19次 UN總會가 決定한 諸規定에 따라, 總會는 UN事務總長이 任命하는 特別委員會에 의해서 行해진 報告와 提案을 考慮한 후에, 實質事項에 관한 本會議의 決定은 出席代表 3分之 2의 投票로 또 同理事會의 決定은 單純多數決에 의해서 行하여져야 한다. 特別委員會의 任務는 投票 전 이루어져야 할 調整過程을 確立하고, 또 特別한 性格의 提案에 관해서 特定國의 經濟 내지 財政的 利益에 크게 影響을 미치는 措置에 대한 勸告를 採擇하는데 적절한 基盤을 提供하기 위해 考案된, 當設機構 내에서의 節次에 관한 提案을 準備하는 것이다.
- (f) 憲章 第101條에 따라 本會議, 理事會 및 그 下部團體의 積

절한 業務를 위해 UN事務局 내에 適當한 常設專任事務局을 設立하기 위해 즉시 諸措置가 講究되어야 한다.

(g) 本會議는 經驗에 비추어,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變更과 改善을 勸告하기 위해 制度上的 諸措置의 效率性 및 改革을 考察해야 한다. 이를 위해 本會議는 貿易問題와 開發에 關係되는 貿易을 取扱하기 위해, UN機構의 全會員國에 基盤을 둔 包括的인 機構의 設立에 關係되는 問題를 包含하여 모든 關聯事項을 研究해야 한다(附屬書類 A.V.1 參照).

79. 本會議는 또한 制度上的 暫定協定에 관한 措置와 貿易開發理事會의 下部機關의 關係條件을 勸告하였다(附屬書類 A.V.2 및 A.V.3 參照).

第 6 節 特殊問題

80. 本會議는 UN事務總長에게 內陸國, 通過國 및 기타 利害關係國을 代表하는 24 個會員國으로 構成되는 委員會를 政府專門家로서, 또 公平한 地域的 配分에 입각하여 任命하도록 要請하였다. 前記한 委員會는 1964 年 중에 開催되어, 內陸國의 通過貿易을 取扱하는 새로운 協定草案을 準備할 豫定이다. 本會議는 1965 年 中旬에 UN에 의해 開催되는 全權代表會議에 考察 및 採擇을 위해 提出할 것을 勸告하였다(附屬書類 A.VII.1 參照).

81. 本會議는 再生不可能한 天然產品의 主要輸出國인 發展途上國에 의해 設立된 諸國際機構들이 그들 諸國의 利益을 擁護하기 위해 承認되고 獎勵되기를 勸告하였다(附屬書類 A.VI.2 參照).

82. 本會議는 또한 長期貿易協定の 擴大利用에 관한 勸告를 採

擇하였다(附屬書類 A.VI.3 參照).

83. 本會議는 對外貿易에 있어서 政府貿易機構의 無差別待遇를 勸告하였다(附屬書類 A.VI.4 參照).

第 7 節 作 業 計 劃

84. 前記한 諸勸告에 包含되어 있는 作業計劃 이외에, 本會議는 다음 事項에 대해 勸告하였다.

(1) 過去 10年 동안에 大部分의 國家들이 個別的으로 經驗했던 것보다 높고, 심지어 UN開發 10年을 위해 設定한 比率보다 높은 經濟成長率을 달성할 수 있는 實現可能性과, 또한 先進國 및 發展途上國이 이러한 成長率을 成就하기 위해 취해야 할 措置에 관한 研究(附屬書類 A.IV.2 參照).

(2) 發展途上世界 중 貧困地域에 관한 綜合的인 經濟的, 社會的 調査와 또한 그러한 地域住民의 生活水準을 大幅 改善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는 特殊措置에 관한 綜合的인 經濟, 社會的 研究(附屬書類 A.VI.5 參照).

(3) 商品協定, 政策委員會 또는 常設機構 내에 設立될 수 있는 類似團體를 위한 作業計劃, 商品協定에 대한 적절한 指針 및 節次의 開發과 一定한 條件이 適用되는 商品에 관해서 商品 交涉 및 輸出研究를 위한 作業計劃(附屬書類 A.II.1 및 A.II.3 參照).

(4) 1次商品分野에 있어서 市場協定에 관한 보다 많은 研究, 그리고 代替商品問題對策과 發展途上國의 1次產品輸出을 위한 市場擴大를 目的으로하는 各種研究(附屬書類 A.II.4, A.II.7

- 및 A.Ⅱ.8 參照).
- (5) 1次產品·完製品·半製品에 의한 發展途上國의 輸出收益을 위한 經濟, 技術援助의 規定과 關聯되는 作業(附屬書類 A.Ⅱ.5, A.Ⅱ.7, A.Ⅲ.2, A.Ⅲ.3, A.Ⅲ.4, A.Ⅲ.6, A.Ⅲ.7, A.Ⅲ.8, A.Ⅳ.1, A.Ⅳ.3, A.Ⅳ.4, A.Ⅳ.12 및 A.Ⅳ.25 參照).
- (6) 發展途上國間의 貿易促進을 支援하는 支拂方式에 관한 研究(A.Ⅱ.5 및 A.Ⅳ.19 參照).
- (7) 發展途上國問題와 特別히 關聯된 世界貿易에 必要한 經濟的, 統計的 研究(附屬書類 A.Ⅵ.6 參照).
- (8) 相異한 經濟·社會體制를 가지고 있는 諸國家間의 貿易擴大를 위한 諸措置에 關해, 체코슬로바키아가 提出했던 勸告草案을 더욱 審査하고 實踐하기 위해 設立提案 중에 있는 常設 UN 貿易機構에 移牒(附屬書類 A.Ⅵ.7 參照).
- (9) 先進國間의 地域經濟集團 및 發展途上國間의 地域經濟集團의 促進에 關하여, 수많은 發展途上國이 提出했던 勸告草案을 더욱 審査하고 實踐하기 위해 常設貿易機構에 移牒(附屬書類 A.Ⅵ.8 參照)
- (10) 發展途上國의 完製品·半製品의 競爭改善을 위한 補助金利用에 關한 提案의 第3部를 더욱 研究하기 위해 本會議에 의해 設立될 機關에 移牒(本會議의 報告, 附屬書類 E.24節 參照).
- (11) 軍縮經濟計劃의 貿易側面檢討(附屬書類 A.Ⅵ.10 參照).

3. 新國際經濟秩序 樹立에 관한 宣言

(第 6 次 UN 特別總會 採擇, 1974 年 5 月
1 日 滿場一致 UN 決議 3201(S-VI))

UN 總會는 다음과 같은 宣言을 採擇한다.

新國際經濟秩序樹立에 관한 宣言

우리 UN 會員國은 原資材 및 開發에 관한 諸問題를 처음으로 研究하기 위해 特別總會를 召集하여, 世界共同體가 直面하고 있는 가장 重要한 經濟問題를 考慮하는데 寄與했으며, 모든 國民의 經濟的 發展과 社會的 進歩를 促進하기 위해 UN 憲章의 精神, 目的 및 原則을 留意하면서, 經濟, 社會體制와는 關係없이, 모든 國家의 平等, 主權平等, 相互依存, 共同利益 및 協調에 입각하여, 不平等을 是正하고, 現在의 不義를 一掃하며, 先進國과 發展途上國間의 擴大되고 있는 隔差를 除去하며, 그리고 現在 및 將來世代를 위해 平和와 正義 속에서 着實하게 經濟, 社會發展을 促進시키는 新國際經濟秩序의 樹立을 위해, 緊急히 對處하려는 우리의 團合된 決意를 엄숙히 宣言한다.

1. 지난 數 10 年 동안에 이룩한 가장 偉大하고 意義있는 業績은 수많은 國民과 國家들이 植民地 및 外國支配로부터 獨立하여, 그들이 自由로운 諸國民共同體의 會員이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技術上的 發展이 또한 지난 30 年 동안에 經濟活動의 모든 分野에서 이룩되어, 모든 國民의 福祉를 改善시키는데에 건고한 潛在力을 提供했다. 그러나, 外國 및 植民地支配, 外國의 占領, 人種差

別, 人種隔離政策 (apartheid) 및 新植民主義 등 一切의 形態에 있어서 殘存하는 痕跡은 發展途上國과 모든 關係國民의 完全한 解放과 進歩에 대해 最大의 障礙가 되고 있다. 技術上의 進歩에 의한 諸惠擇이 國際共同體의 全會員國에게 平等하게 分配되지 않고 있다. 世界人口의 70%를 점하고 있는 發展途上國은 겨우 世界所得의 30% 정도만을 얻고 있는 데에 不週하다. 現存 國際經濟秩序下에서 國際共同體의 平等하고 均衡된 開發을 이룩한다는 것은 거의 不可能하다고 判明되었다. 先進國과 發展途上國間의 隔差는 大多數의 發展途上國이 獨立國으로 存立하지 않았던 時期에 이미 成立되어 不平等을 永久化시킨 現體制下에서, 계속 擴大되고 있다.

2. 現國際經濟秩序는 國際的인 政治, 經濟關係에 있어서 現行發展과 對立되고 있다. 1970年 이후, 世界經濟는 심각한 反應을 불러 일으켰던 일련의 重大한 危機를 體驗했다. 특히, 發展途上國은 外部의 經濟衝擊에 대해 一般的으로 弱하기 때문에, 그 影響은 심각했다. 發展途上國은 모든 國際活動分野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意識케 하는 強力한 要素가 되었다. 世界의 勢力關係에 있어서 이러한 不可抗力的인 變化는 國際共同體에 關係되는 모든 決定을 定式化하고 適用하는 데 있어서 發展途上國의 活動과 充分하고도 對等한 參與를 不可避하게 要求하고 있다.

3. 이러한 모든 變化는 世界共同體의 모든 構成員이 相互依存되어 있다는 現實을 뚜렷이 浮刻시켰다. 現事態는 先進國과 發展途上國의 利害關係는 이 이상 더 相互間에 孤立되어 存在할 수 없으며, 先進國의 繁榮과 發展途上國의 成長 및 發展은 相互間에 密接한 依存關係에 있으며, 그리고 國際共同體 全體의 繁榮은 그 構成

員의 번영에 依存하고 있다는 現實에 뚜렷이 焦點이 맞추어졌다. 開發을 위한 國際協調는 모든 國家가 分擔해야 할 目標이며 共同의 義務이다. 그리하여, 現世代 및 다음 世代의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福祉는 어느 때보다도 더욱 主權平等과 各國間에 存在하는 不平等의 除去에 입각한 國際共同體 全構成員間의 協調에 依存하고 있다.

4. 新國際經濟秩序는 다음의 諸原則을 충분히 考慮하여 確立되어야 한다.

(A) 諸國家의 主權平等, 모든 國民의 自決, 武力에 의한 領土獲得의 不容認, 領本保全 및 他國의 內政不干涉

(B) 公平의 原則에 基盤을 둔 國際共同體 全構成員의 最大의 폭넓은 協調, 그것에 의하여 世界이 만연하고 있는 不平等이 解消될 수 있으며, 또한 繁榮이 모든 國家를 위해 保障될 수 있다.

(C) 모든 發展途上國의 共同利益 속에서 世界經濟問題를 解決하는데에 모든 國家의 平等性에 입각한 全面的이고도 効率的인 參與, 한편 經濟危機 및 自然災害에 의해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았던 發展途上國과 아울러, 後發發展途上國, 內陸國 및 島嶼發展途上國을 위해, 기타 發展途上國의 利害關係를 잊지 않은 特別措置의 適用에 特別한 注意를 기울인다.

(D) 모든 國家는 各者 獨自的인 發展을 위해 가장 適合하다고 생각되고, 또 그 結果로서 어떠한 種類의 差別에도 隸屬되지 않는, 經濟·社會體制를 採擇할 權利가 있다.

(E) 天然資源과 모든 經濟活動에 대한 모든 國家의 完全한 永久主權, 이러한 資源을 保護하기 위해서, 各國은 그들의 資源에 대

해 効率的인 管轄權을 行使하고, 그 自身の 狀況에 적합한 手段을 가지고 그 資源을 開發할 資格이 있다. 이러한 權利는 國家의 完全한 永久主權의 表現이기 때문에, 國有化의 權利 또는 所有權을 國民에게로 移轉할 權利를 包含한다. 여하한 國家도 이 不可讓의 權利의 自由롭고 충분한 行使를 妨礙하려는 經濟的, 政治的 내지 어떤 다른 形態의 強制力에도 服從하지 않는다.

(F) 外國占領, 外國支配 및 植民地支配 또는 人種隔離政策 (apartheid) 下에 있는 諸國家, 諸領土 및 諸國民은 이러한 諸國家, 諸領土 및 諸國民의 天然資源 및 기타의 모든 資源의 擄取, 枯渴, 損害에 대한 原狀回復과 충분한 補償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G) 多國籍企業이 그러한 當該 國家의 完全한 主權에 입각하여 活動하도록, 諸國家의 國民經濟的 利益을 위해 諸措置를 취함으로써 多國籍企業의 活動에 대한 規制와 監視

(H) 發展途上國, 植民地 支配와 人種的 支配, 그리고 外國占領下에 있는 領土의 諸國民이 그들의 解放을 成就하고 또 그들의 天然資源 및 經濟活動에 대한 効率的 管理權을 회복할 權利

(I) 植民支配와 外國支配, 外國占領, 人種差別, 人種隔離政策 下에 있거나 또는 그들의 主權的 權利의 行使조차도 從屬되어 그들에게서 모든 種類의 利益을 確保하기 위해서 政治的, 經濟的 내지 形態의 強制措置下에 있고, 또한 모든 種類의 新植民主義下에 있는 諸發展途上國, 諸國民 및 諸領土 그리고 지금까지 外國支配下에 있거나 또는 外國支配를 받아 왔던 그들의 天然資源 및 經濟活動에 대한 効率的인 管理權을 確立했거나 또는 確立코자 努力하고 있는 이러한 諸國家, 諸國民, 諸領土에 대한 援助의 擴大

(J) 發展途上國의 滿足스럽지 못한 貿易條件을 持續적으로 改善하고, 또한 世界經濟의 擴大를 도모할 目的으로, 發展途上國이 輸出한 原資材, 1次產品, 完製品 및 半製品의 價格과 그러한 發展途上國이 輸入한 原資材, 1次產品, 完製品, 資本材 및 施設資材의 價格間의 公正하고 平等的 關係

(K) 여하한 政治的 내지 軍事的 條件이 없이, 全國際共同體에 의한 發展途上國에의 積極적인 援助擴大

(L) 改革된 國際通貨體制의 主要目的의 하나로서, 發展途上國의 開發과 發展途上國에의 實際資源의 적절한 流入을 促進할 것에 대한 確保

(M) 合成代用品과의 競爭에 直面하고 있는 天然資源의 競爭力을 改善하는 것

(N) 國際經濟力의 모든 分野에 있어서 可能한 한 發展途上國에 게 特惠的 非互惠的 待遇

(O) 發展途上國들에게 財源移轉에 有利한 條件의 保障

(P) 發展途上國에게 近代科學·技術의 成果에 接近할 수 있는 機會를 賦與하며, 또 發展途上國의 利益을 위해 그들의 經濟에 적합한 形態와 節次에 따라 技術移讓 및 土着的인 創造를 促進할 것

(Q) 모든 國家가 食糧生産을 包含한 天然資源의 浪費를 終熄할 必要性

(R) 發展途上國이 開發을 促進시키기 위해 그들의 모든 資源을 集中할 必要性

(S) 個別的 措置 및 集團的 措置를 통해 주로 特惠措置에 입각한 發展途上國 相互間의 經濟, 貿易, 財政 및 技術協調를 強化할 것

(T) 生産者協會는 國際協調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役割을 促進하고, 그의 目的을 追求하는 데 있어서, 특히 世界經濟의 持續的인 成長의 促進을 助長하며, 그리고 發展途上國의 開發을 促進할 것.

5. 第2次 UN開發 10年을 위한 國際開發戰略이 滿場一致로 採擇된 것은, 公平하고 平等한 基盤에 입각한 國際經濟協力を 推進하는데 있어서 重要的 一段階였다. 이 戰略의 테두리 안에서 國際共同團가 受任한 義務와 公約의 조속한 履行은, 특히 發展途上國의 緊迫한 開發必要성과 관련하여, 本 宣言의 目的과 目標을 履行하는데에 크게 寄與할 것이다.

6. 普遍的인 國際機構의 하나로서 UN은 國際經濟協力問題를 包括的인 形態로 對處하고, 또 모든 國家의 利害關係를 平等하게 保障할 수 있어야 한다. UN은 새로운 國際經濟秩序를 確立하는 데 있어서 보다 커다란 役割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諸國家의 經濟權利義務憲章은 이 宣言이 또 다른 追加的인 着想의 原泉을 提供하는데 對備하기 위해서 이러한 側面에서 重大한 役割을 할 것이다. 따라서, 全 UN會員國은 本 宣言의 履行을 確保하기 위해 最大의 努力을 경주하도록 要求된다. 本 宣言은 모든 國民이 人間의 尊嚴性을 維持할 만한 生活에 도달하는 보다 훌륭한 條件을 創造하기 위한 基本的인 保證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7. 新國際經濟秩序確立에 관한 本 宣言은 모든 國民과 모든 國家間의 諸經濟關係의 가장 重要的 基盤의 하나다.

4. 新國際經濟秩序 樹立에 관한 行動綱領

第6次 UN特別總會에서 採擇, 1974年5月1日 總會는 이하의 行動綱領을 採擇한다.

序 說

先進國과 發展途上國과의 關係에 심각한 經濟的 不均衡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고 그리고 發展途上國 經濟의 不均衡이 계속적으로 惡化되고 있는 것과 이들 여러나라의 現在의 經濟的 困難을 緩和할 必要에 있어서 國際共同體가 發展途上國을 援助하기 위하여 緊急하고도 效果的인 諸措置를 취할 必要가 있으나 한편으로는 後進 發展途上國, 內陸 發展途上國과 島嶼 發展途上國 및 經濟危機와 自然災害로 가장 심각한 영향을 입은 發展途上國의 開發過程에 심각한 落後가 생기지 않도록 특히 注意를 기울일 必要가 있다.

I. 貿易과 開發에 關聯한 原材料 및 1次產品의 基本問題

1. 原材料

이하의 제점에 대하여 모든 努力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a) 天然資源에 대한 永久主權의 行使를 통해서 모든 形態의 外國占領, 人種差別, 人種隔離政策, 植民地, 新植民地 外國支配 및 擄取를 終식시킬 것.

(b) 天然資源 특히 發展途上國의 天然資源의 發見, 採取開發, 販賣 및 市場化가 이들 여러나라의 國益에 도움이 되고 이들 諸國家間의 集團的 自力更生을 促進하고 發展途上國의 開發促進을 가져오는

것을 目的으로 한 서로의 利益이 되는 國際的 經濟協力을 強化하기 위한 諸措置를 취할 것.

(c) 共同販賣 決定, 秩序있는 商品去來, 發展途上國의 輸出收入과 交易條件의 改善, 모든 利益을 위해서 世界經濟의 持續的 成長을 包含한 生産者聯合의 機能을 造成하고 그 目的을 促進할 것.

(d) 發展途上國이 輸出하는 原材料, 1次產品, 半製品, 製品의 價格과 이들 여러 나라가 輸入하는 原材料, 1次產品, 食糧製品, 半製品, 資本財 사이의 價格에 公正하고도 正當한 關係를 發展시키고 發展途上國의 輸出價格과 이들 여러 나라의 先進國으로부터의 輸入價格을 連繫시키기 위하여 努力할 것.

(e) 商品價格의 全般的 上昇에도 불구하고 發展途上國이 輸出하는 몇가지 商品의 實質價格이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或은 下落하고 있다고 하는 傾向이 계속되고 이를 發展途上國의 輸出收入이 減少한다고 하는 結果를 낳고 있기 때문에 이 傾向을 역전시키기 위한 措置를 취할 것.

(f) 發展途上國의 利益을 고려에 넣어서 合成品에 대한 天然產品의 市場을 擴大하고 이들 製品의 環境上의 利點을 完全히 活用하기 위한 措置를 취할 것.

2. 食糧

이하의 제점에 대하여 모든 努力을 해야 할 것이다.

(a) 食糧問題에 關한 國際的 努力에 있어서 發展途上國의 特定한 問題 特히, 食糧不足을 심분 考慮하여 볼 것.

(b) 諸手段의 缺如 때문에 開懸하고 實用하려고 할 경우에는 食糧

危機의 解決에 상당히 功獻할 수 있는 未利用 또는 利用度가 낮은 土地의 거대한 潛在的 可能性을 일부의 發展途上國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考慮에 넣을 것.

(c) 약간의 發展途上國 특히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들 諸國의 農業生産성에 重大한 影響을 끼치고 있는 사막화, 鹽分에 의한 汚染, 메뚜기에 의한 損害 내지는 다른 모든 동종의 현상을 저지하기 위하여 國際共同體가 具體的이고도 快速한 措置를 취할 것. 다시 國際共同體는 이 現象의 影響을 받은 發展途上國이 이들 諸國의 食糧問題 解決에 貢獻할 目的으로 影響을 받은 地域을 開發하는 것을 원조해야 할 것이다.

(d) 天然資源과 食糧資源 특히 海洋에서 얻은 이들 資源의 損害나 惡化를 汚染防止와 이들 資源의 保護와 복원을 위한 적절한 諸措置에 의해서 防止할 것.

(e) 先進國은 食糧生産, 備蓄, 輸入 및 輸出에 관한 政策을 作成할 때

(i) 높은 輸入價格을 支給치 못하는 發展途上輸入國 및

(ii) 그 輸出을 위한 市場機會의 增大를 필요로 하는 發展途上 輸出國의 利益을 充分 考慮에 넣을 것.

(f) 發展途上國이 外貨準備에 과도한 壓迫을 받지 않고 또한 國際收支에 예기치 않는 惡化를 일으키지 않고 필요량의 食糧을 輸入할 수 있도록 保證할 것. 이와 관련하여 後發發展途上國, 內陸發展途上國, 島嶼發展途上國 및 經濟危機와 自然災害로 가장 심각한 影響을 입은 發展途上國에 관해서 특별한 措置를 취할 것.

(g) 發展途上國에 있어서의 食糧生産과 貯藏施設 增大를 위한 措

置를 특히 先進國으로부터 有利한 條件으로서의 比료를 포함한 모든 有効必須品の 投入의 増大에 의해 保證할 것.

(h) 發展途上國의 食糧製品 輸出을 특히 (그중에서도) 不公正한 競争을 구성하는 保護措置 및 다른 措置의 점진적 除去에 의해 促進할 것.

3. 一般貿易

이하의 제점에 대해서 모든 努力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a) 發展途上國의 交易條件의 改善을 위해서 이하의 諸措置를 취하고 또 發展途上國의 만성적인 貿易赤字를 해소하기 위한 具體的인 諸措置를 취할 것.

(i) UN 貿易開發會議와 UN開發戰略에서 이미 이루어진 公約의 實施

(ii) 關稅, 非關稅障壁, 制限的 商價行의 점진적 除去에 의해 先進國市場에의 接近을 改善할 것.

(iii) 原材料와 1次產品의 世界市場을 필요에 따라 통제하고 安定시키기 위해 適當한 경우에 商品協定을 빨리 締結할 것.

(iv) 廣範圍하게 發展途上國의 輸出關心이 있는 商品 全般에 대해 指導原則을 設定하고 또 이 分野에 있어서의 現在의 活動을 考慮에 넣은 全面的인 綜合프로그램을 準備할 것.

(v) 發展途上國의 商品이 先進國의 國內生産과 競合할 경우 各 先進國은 發展途上國으로부터의 輸入을 促進하고 市場의 成長에 發展途上國이 가담하기 위한 公正하고도 合理的인 기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vi) 關稅, 租稅 其他 이들 製品의 輸入에 適用되는 保護措置에서 先進輸入國이 收入을 올릴 경우에는 이들 收入은 發展途上輸出國에 全額 반제하거나 또는 이들 諸國의 開發의 필요를 充足시키기 위해서 追加資金 公여를 위해 돌려 주어야 한다는 發展途上國의 主張을 고려할 것.

(vii) 先進國은 發展途上國으로부터의 輸入擴大와 多樣化를 促進하고 이에 의해서 合理的이고도 公정하고 公평한 國際分業을 可能하게 하기 위해서 經濟를 적절히 調整해야 한다.

(viii) 發展途上國에 있어서 滿足할 수 있는 貿易條件을 수정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發展途上國의 商品輸出에 대한 價格政策의 一般原則을 確立할 것.

(ix) 모든 發展途上國이 滿足할 수 있는 貿易條件을 修正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당해 發展途上國의 開發의 필요를 充足시키기 위한 補償融資制度를 包含한 대체수단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x) 發展途上國의 農業一次產品·完製品·半製品의 輸出에 대한 一般特惠制度를 實施하고, 改善하고, 擴大해서 이것을 加工 내지 半加工商品을 包含한 商品으로 擴大할 것을 고려한다. 一般特惠 制度의 導入과 그후 생기는 擴大의 結果로서 一部の 先進國에 있어서 現行 關稅上의 利益을 받고 或은 받게 될 發展途上國은 緊急한 問題로서 타의 先進國市場에 새로운 기회를 認定받게 되어야 할 것이며 先進國은 이들 發展途上國에 적어도 이들 利益의 환수를 確保하기에 족한 輸出機會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xi) 商品決定의 테두리 안에서 完충재고를 設定하고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國際金融制度 그리고 可能한 경우에는 先進國 및 그

리해야 할 처지에 있는 發展途上國이 이것을 融資하나 그 目的은 生産과 消費의 發展途上國을 援助하고 世界貿易 全體로서의 擴大에 기여하는 데 있다.

(xii) 天然材料가 市場의 필요를 充足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合成材料 및 대체품의 生産性 擴大를 위한 새로운 投資는 할 것이 아니다.

(b) 先進國과 發展途上國 間의 다각적 貿易交涉에 있어서는 發展途上國의 非互惠的, 特惠待遇의 諸原則을 指導原理로 할 것과 發展途上國의 外貨輸入의 大幅增加, 輸出의 多樣化, 經濟成長率의 加速化를 달성하도록 發展途上國의 國際貿易을 위한 特惠的 追加利益을 追求할 것.

4. 輸送 및 保險

이하의 제점에 대하여 온갖 努力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a) 世界海運 輸送量에 있어서의 發展途上國의 增大와 公平한 參加를 促進할 것.

(b) 發展途上國의 輸出入價格을 減少하기 위해 끊임없이 상승하여 가고 있는 貨物運賃率을 저지하고 끌어 내릴 것.

(c) 發展途上國의 保險, 再保險費用을 최소한으로 하고 發展途上國에 있어서의 國內保險, 再保險市場의 成長을 援助하고 適切한 때에는 이 目的으로 이들 諸國에 있어서 或은 地域次元에 있어서의 制度를 確立할 것.

(d) 定期船同盟의 行動規準의 早期實施를 保證할 것.

(e) 특히 後發 發展途上國의 輸送·通過費用에 관해서 이들 諸國

의 輸出入能力을 增大하고 內陸 發展途上國과 마찬가지로 島嶼 發展途上國의 불리한 地理的 立地條件에 의한 不利益을 尙쇄하기 위한 緊急措置를 취할 것.

(f) 先進國은 發展途上國으로부터 商品을 公정한 價格으로 輸入하는 것을 妨害하는 措置를 취하거나 그러한 政策을 實施할 것을 參加할 것. 或은 發展途上國이 이러한 商品의 價格을 改善하고 輸出을 促進하기 위해서 취한 合法的인 諸措置나 政策의 實施를 無效로 하는 것을 中止할 것.

II. 國際通貨 體制와 發展途上國의 開發金融

이하의 제점에 대해서 모든 努力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 國際通貨를 특히 이하의 目的을 가지고 改革할 것.

(a) 先進國이 이미 經驗한 인플레이션을 抑除하고 이것이 發展途上國으로 移轉하는 것을 防止하고 先進國 인플레이션이 發展途上國 經濟에 미치는 影響을 輕減하기 위한 決定의 可能性을 國際通貨基金 안에서 검토하고 作成하기 위한 諸措置.

(b) 國際通貨制度의 不安定, 특히 換率의 不安定이 商品貿易에 惡影響을 끼치기 때문에 換率의 不安定을 除去하는 諸措置.

(c) 發展途上國의 通貨準備의 實質價値가 인플레이션과 準備通貨의 減價에 의해서 침식되는 것을 防止하는 것에 의한 이들 諸國의 通貨準備의 實質價値의 維持.

(d) 公正하고도 恒久的인 通貨體制를 형성하기 위한 作成에 대하여 全段階에 있어서 發展途上國의 充分하고도 效果的인 參加와 이

改革을 委任받은 모든 機關 특히 總務委員會에 發展途上國의 適切한 參加.

(e) 새로운 國際環境에 비추어서 적절히 展開되는 世界의 流動性 需要의 概念을 基礎로 한 特別引出權의 追加, 該當 發展途上國의 필요에 특히 留意한 追加流動性的 적정하고도 秩序있는 創出.

國際 流動性的 어떠한 創出도 國際的·多角的 매카니즘을 通해서 行해져야 할 것이다.

(f) 特別引出權의 通貨的 特性에 합치한 發展途上國에 보탬이 되는 特別引出權과 追加開發金融間的 連繫의 早期設定.

(g) 國際通貨基金은 發展途上國이 決定過程에 效果的으로 參加하는 것을 保證하기 위해서 關聯規定을 再檢討해야 할 것이다.

(h) 先進國에서 開發途上國에의 實質資產의 순이전의 增加를 促進하기 위한 決定.

(i) 國際通貨基金의 運營方法, 특히 借款返濟와 Stand-by 約定의 雙方的 條件, 補償融資制度 및 商品緩衝在庫, 融資條件 등을 發展途上國이 보다 效果的으로 利用할 수 있게 하기 위한 再檢討.

2. 發展途上國의 開發에 대한 融資와 發展途上世界의 國際收支 危機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하의 緊急措置를 취할 것.

(a) 第2次 UN開發의 10年을 위한 國際開發戰略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것과 같이 先進國이 發展途上國에의 순자금 이전의 總額에 대해서 先進國에 의한 時間에 棼인 計劃의 實施를 加速化할 것. 國際開發 戰略目標를 채우고 또는 뛰어넘기 위해서 發展途上國

에의 순자금 이전의 公的 要素의 增大.

(b) 國際金融制度는 어떠한 加盟國에 대해서도 政治, 經濟 體制를 理由로 差別하는 일이 없이 원조에 끈(꼬리)을 달지 않고 開發 金融銀行으로서의 役割을 效果的으로 수행할 것.

(c) 보다 公正한 投票權의 形式을 確立하는 것에 의해서 發展途上國이 收益國이건 支出國이건 간에 世界銀行, 國際開發協會의 各機關의 決定過程에의 그 效果的 參加.

(d) 可能한 경우 先進國에 의한 일체의 輸入制限과 資本流動制限에서의 發展途上國의 免除.

(e) 收益國이 決定하는 그 經濟部分의 需要와 필요에 應하고 先進國의 公的, 民間 雙方의 發展途上國에 대한 對外投資의 促進.

(f) 嚴한 條件으로 契約한 對外投資의 重荷에 기인한 發展途上國의 現在와 將來의 開發에 대한 惡影響을 완화하기 위해서 國際的 行動을 包含한 適切한 緊急措置.

(g) 債務取消, 凍結, 返済延期 또는 利子補助에 관한 協定을 締結하기 위한 事例別 債務再交渉.

(h) 國際金融制度는 이들 緊急의 필요를 充足시키기 위해 그 대 부정책을 改正함에 있어서 各 開發途上國의 特別한 情세를 고려에 넣는다.

國際金融制度의 특히 開發途上國 및 國際通貨問題에 관련된 業務를 改善할 需要가 있다.

(i) 보다 유리한 條件을 包含시켜 開發目的의 借款을 행함에 있어서는 後發 發展途上國, 內陸 發展途上國 및 島嶼 發展途上國과 아울러 經濟危機와 自然災害에 의해 가장 심각한 影響을 입은 諸國

을 최우선하기 위한 適切한 措置를 취한다.

Ⅲ. 工 業 化

發展途上國의 工業化를 促進하기 위한 措置를 취하도록 國際共同體가 모든 努力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目的을 위해서

(a) 先進國은 各己 公的 援助와 國際金融制度의 테두리 안에서 工業計劃에의 融資에 대한 發展途上國의 要請에 호의적으로 應해야 할 것이다.

(b) 先進國은 發展途上國의 동의에 의해서 先進國 法規의 範圍內에서 發展途上國의 工業生産事業計劃, 특히 輸出을 위한 生産에 대한 融資를 投資家에게 勸獎해야 할 것이다.

(c) 世界の 工業生産에 있어서의 發展途上國의 占有率을 높이는 것과 같은 새로운 國際經濟構造를 실현할 것을 目標로 하여 先進國과 UN 體制의 諸機關은 發展途上國과 協力하고 原材料와 產品을 生産하는 發展途上國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들 原材料와 產品을 製品化하는 施設을 包含한 새로운 工業力의 創設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d) 先進國과 國際制度의 支援을 얻어서 發展途上國의 開發의 필요에 따라 그 職業訓練과 人才開發을 包含한 實用的이고 指導中心의 技術援助計劃을 계속하고 擴大한다.

IV. 技術移轉

이하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a) 發展途上國의 필요와 事情에 副應한 技術移轉을 規制하는 國際的인 行動規準을 作成할 것.

(b) 改善된 條件으로 近代技術을 取得할 것을 許與하고 이 技術을 發展途上國의 特殊한 經濟的·社會的·生態學的 條件이나 各기 다른 開發의 정도에 應해서 알맞게 適應시킬 것.

(c) 適切한 固有技術에 관한 調査, 開發創造計劃에 대해서 先進國으로부터 發展途上國에의 援助를 大幅 擴大할 것.

(d) 技術移轉을 規制하는 商慣行을 發展途上國의 필요에 應하여 適合시키고 販賣者의 權利 濫用을 防止할 것.

(e) 天然資源과 모든 에너지源의 調査, 開發, 保護와 合法的 利用에 관한 國際協力을 促進할 것.

이상의 措置를 취함에 있어서 後發 發展途上國과 內陸 發展途上國의 特別한 要求를 명기해 두어야 한다.

V. 多國籍企業의 活動에 關한 規制와 管理

이하의 目的을 위하여 多國籍企業의 行動에 관한 國際的인 行動規準의 採擇과 實施를 具體化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a) 多國籍企業이 그 活動하는 나라의 國內問題에 간섭하고 人種主議政府 및 植民地政府와 合作하는 것을 막을 것.

(b) 制限的 상관행을 廢止하고, 發展途上國의 國家開發計劃과 目標

에 합치하고 이 方向에서 필요에 따라 이전에 締結된 約定을 再檢討하고 修正시키도록 받아들이는 나라에 있어서의 多國籍企業의 活動을 規制할 것.

(c) 發展途上國에 대해서 公正하고 有利한 條件으로 援助, 기술이전 및 經營技術을 가져다줄 것.

(d) 多國籍企業의 活動에서 생기는 利益의 本國 送金を 모든 關係當事者의 合法的 理解를 考慮에 넣어서 規制할 것.

(e) 發展途上國에의 利益의 再投資를 促進할 것.

VI. 諸國家의 經濟的 權利義務憲章

UN의 作業그룹이 現在 초안을 準備하고 總會가 이미 第29次 總會에서 採擇의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는 諸國家의 經濟的權利義務憲章은 公平·主權의 平等 및 先進國과 發展途上國間의 理解의 雙方依存에 기한 새로운 國際關係體系의 樹立을 向하여 有效한 길잡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憲章이 次期 通常會期에서 採擇되는 것이 극히 重要하다.

VII. 發展途上國間의 協力の 促進

1. 發展途上國間의 集團的 自力更生과 協力增大는 새로운 國際經濟秩序에 있어서의 그 役割을 다시 強化할 것이다. 發展途上國은 自己地域·他地域次元에서의 協力の 擴大를 目的으로 특히 아래와 같은 手段을 취해야 한다.

(a) 發展途上國의 輸出可能 商品價格을 방위하고 市場에의 接近을 改善하고 市場을 安定化시키기 위한 適切한 機構를 確立하고 또는

改善하는 것을 지지할 것. 이 關係에 있어서 石油輸出國 全體에 의한 效果的인 天然資源의 동원은 환영된다. 同時에 이 合法的이고 完全히 正當한 行動에서 생긴 當面問題에 發展途上國이 對抗하기 위해 緊急과 團結精神에 따라 모든 可能한 手段을 만들어 내는 것이 最大의 과제이다. 이 점에 관해서 이미 취해진 措置는 發展途上國間에서 協력이 展開되어 가고 있다는 積極的인 징조이다.

(b) 發展途上國의 天然資源에 대한 永久主權의 本源的 權利를 옹호할 것.

(c) 自己地域, 他地域 次元에서의 經濟統合을 促進하고 確立하고 強化할 것.

(d) 다른 發展途上國으로부터의 輸入을 大幅 增加할 것.

(e) 發展途上國은 다른 發展途上國으로부터의 輸入에 주고 있는 이상의 好條件의 대우를 先進國으로부터의 輸入에 주어서는 안된다. 既存의 國際協定, 現在의 制限이나 可能性, 다시 장래의 發展 등을 考慮에 넣어서 다른 發展途上國으로부터의 輸入調達에는 特惠待遇를 주어야 할 것이다. 可能한 發展途上國으로부터의 輸入과 그들 제국의 輸出에는 特惠待遇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f) 優先的이고도 好意的 條件의 信用關係設定을 包含해서 金融信用關係·通貨問題의 分野에서 緊密한 協助를 促進할 것.

(g) 投資, 輸出指向 내지 緊急計劃에 의한 融資 및 他的 長期援助를 통해서 發展途上國의 開發融資를 위해 使用可能財源을 利用한다고 하는 종래에 이미 發展途上國이 취해온 努力을 強化할 것.

(h) 工業·科學·技術·運輸·海運·매스커뮤니케이션·미디어 分野에서의 協力を 위해 效果的인 措置를 促進하고 協力할 것.

2. 先進國은 특히 商業政策의 分野에서 보다 效果的이고 具體的인 行動을 통해서 財政, 技術援助를 擴大함으로써 發展途上國의 自己地域, 他地域間 協力の 이니셔티브를 지지해야 할 것이다.

Ⅷ. 天然資源에 대한 國家의 永久主權의 行使에의 支援

이하를 위해 모든 努力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a) 天然資源에 대한 國家의 完全한 永久主權의 自由롭고 效果的인 行使를 방해하는 시도를 배제할 것.

(b) 고유화된 生産手段의 運用에 關해서 發展途上國으로부터의 援助要請에 UN의 關聯機關이 應할 것.

Ⅸ. 國際的 經濟協力の 分野에 있어서의 UN의 役割 強化

1. 國際開發戰略의 目的을 達成함에 있어서 新國際經濟秩序의 樹立에 관한 宣言의 目標과 目的에 따라 全加盟國은 新國際經濟秩序의 樹立을 위해서 共同으로 採擇한 이 行動綱領을 實施함에 있어서 UN體制를 최대한 活用할 것.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經濟·社會開發의 世界的인 規模의 協力分野에서 UN의 役割을 強化해 갈 것을 서약한다.

2. UN總會는 우선적 의제로서 行動綱領의 全體的 再檢討를 行하는 것으로 한다. 行動計劃에 의해서 着手되는 모든 UN體制의 諸活動과 아울러 世界人口會議, 世界食糧會議, 第2回 UN工業開發總會 및 國際開發戰略의 審査 등에서 이미 計劃되어 있는 活動은 總會決議 3172(XXVIII)하에 초래된 開發에 관한 特別總會가

新國際經濟秩序의 樹立에 最大限의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全加盟國은 그 努力과 政策을 이 特別會期의 成功에 들리도록 共同으로 그리고 個別的으로 要請된다.

3. 經濟社會理事會는 政策의 테두리를 명시하고 이 計劃 實施의 義務를 맡겨진 UN 體制內的 모든 諸機構, 機關, 下部組織 및 會議은 이 行動綱領 實施를 위임받는다.

經濟社會理事會로 하여금 그 任務를 遂行시키기 위해서

(a) UN 體制內的 모든 關係의 諸機構, 諸機關, 下部 組織은 各己의 權限內에서 이 計劃의 實施狀況에 관해서 進行狀況의 報告를 필요에 따라 年 1回 이상 適切히 經濟社會理事會에 提出하는 것으로 한다.

(b) 經濟社會理事會는 이 進行에 관한 報告를 緊急한 問題로 檢討하고 이를 위해 동 理事會는 필요하면 特別總會를 열든가 或은 繼續的으로 機能하는 것으로 한다. 同 理事會는 이 計劃의 實行에 관해서 생기는 問題나 困難에 대해서 總會의 주의를 환기하는 것으로 한다.

4. UN 體制內的 모든 諸機構, 機關, 下部組織 및 會議은 이 行動綱領 實施를 위임받는다.

UN 貿易開發會議(總會決議 1955 [XIX]로 創設되었다)의 活動은 他的 資格있는 機構와 共同으로 이하의 世界중의 原資材 國際貿易의 發展을 위해 強化되어야 한다.

5. 個個의 發展途上國의 特殊狀況을 고려해서 그 緊急의 필요에

맞도록 國際金融制度의 대부정책을 再檢討하기 위해 다시 특히 開發融資나 國際通貨問題에 관한 이들 제도의 관행을 改善하고 또 投票權의 알맞는 改正을 통해서 發展途上國 - 收領者이거나 出資者 거나에 불구하고 - 이 決定過程에 의해 效果的으로 參加할 수 있는 것을 確實하게 하는 緊急하고도 效果的 措置가 취해져야 한다.

6. 先進國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할 처지에 있는 다른 諸國은 發展途上國의 經濟·社會開發을 빨리 할 目的으로 UN體制內的 여러 機構, 計劃, 基金에 充分한 出捐을 행하여야 한다.

7. 이 行動綱領은 國際開發戰略에 재현된 目標와 目的, 그리고 이들 目標와 目的을 달성하는 위에서의 缺陷을 보충하기 위한 第28次 總會에서 具體화된 새로운 措置를 補完하고 強化하는 것이다.

8. 第2次 UN開發의 10年을 위한 國際開發戰略의 審査를 할 때에는 行動綱領의 實施狀況이 考慮되어야 한다. 新國際經濟秩序의 樹立에 관한 宣言 및 行動綱領을 考慮해서 國際開發戰略은 새로운 委任, 變更, 追加, 採擇을 가지고 적합되어야 한다.

X. 特別計劃

總會는 後發 發展途上國과 內陸 發展途上國의 特殊한 問題를 유 의하면서 특히 經濟危機에 의해서 심각한 影響을 입은 發展途上國의 困難을 緩和하는 緊急措置를 包含해서 이하의 特別計劃을 採擇 한다.

總會는 이하의 일을 고려하고

(a) 食糧, 肥料, 에너지製品, 資本材, 運送運搬 經費를 包含한 기재와 역무화 같은 輸入必需品의 急激한 價格上昇은 점차 惡化되고 있는 많은 發展途上國의 貿易條件을 다시 惡化시키고 對外債務의 중압을 한층 더 무겁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누적되어서 만약 방치되면 開發途上國의 必需輸入과 開發에의 資金調達이 不可能하게 되고 이들 諸國의 生産水準과 條件을 다시 惡化하는 狀況을 만들어 내고 있다. 現在의 危機는 長期間에 걸쳐 蓄積된 모든 問題의 結果이며, 貿易, 通貨改革, 世界的 인플레이션狀況, 財政援助의 不充分하고도 연체하기 쉬운 것 등 經濟開發 分野에 있어서의 여러 問題가 그것이다. 이 위기에 직면해서 國際共同體가 채택한 特別計劃은 가장 심각한 影響을 입은 諸國에 緊急救濟와 시의를 得한 원조를 줄 것을 확보한다고 하는 이러한 복잡한 狀況이 明記되지 않으면 안된다.

同時에 世界經濟體制의 基本的 再編成을 통해서 이들 여러 나라가 現在의 困難을 解決하는 한편 용인할 수 있는 開發의 水準에 달성되도록 이들의 未解決의 問題를 解決할 措置가 취해져 있다.

(b) 가장 심각한 影響을 입은 諸國을 援助하기 위해서 취해지는 特別한 措置는 이들 諸國의 輸入의 필요를 維持하는데 緊急히 필요한 구제조치뿐 아니라 그 이상으로 이들 제국의 生産性과 所得向上을 의식적으로 促進하는 措置를 包含하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그러한 包括적인 方法이 採用되지 않는 한, 가장 심각한 影響을 입은 諸國의 困難은 存續할 公산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國際共同體의 가장 緊急한 任務는 이들 諸國의 國際收支의 赤字解

消를 可能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經濟開發의 速度를 維持하고 加速化하기 위한 開發援助를 추가하는 것에 의해서 보충되지 않으면 안된다.

(c) 가장 심각한 影響을 입는 것은 世界經濟속에서 가장 불리한 條件을 가진 諸國이다. 다시 現在의 經濟危機나 自然災害, 外國의 侵略이나 占領에 의해서 經濟가 현저히 混亂당한 開發途上國이 그것이다. 이러한 影響을 받은 諸國의 징후, 經濟에 대한 충격의 정도 그것들이 필요로 하는 구제와 원조의 種類는 특히 이하와 같은 基準에 따라 評價된다.

(i) 相對的 貧困, 低生活性, 技術·開發水準의 반영으로서의 個人所得의 地位

(ii) 輸出所得에 대비해서 必要物資의 輸入經費의 急上昇

(iii) 輸出에 의한 所得에 對備해서 債務比率이 높은 것.

(iv) 輸出所得이 不充分的인 것. 輸出所得이 相對적으로 伸縮性이 缺如되는 것. 輸出 가능한 餘분이 없는 것.

(v) 外貨準備水準의 低水準 또는 필요에 대해 不充分的인 것.

(vi) 높은 運送經費에 의한 惡影響

(vii) 開發過程에 있어서의 外國貿易의 相對的 重要性

(d) 가장 심각한 影響을 입은 諸國의 經濟에 대한 충격의 범위와 狀況의 評價는 世界經濟에 있어서의 現在의 不安定性, 先進國이 취하는 調整政策 및 資本과 投資의 흐름에 유의해서 유연성을 가진 것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들 諸國의 支拂狀況과 必要의 짐작은 몇해에 걸친 平均的 業積을 根據로 해서 비로소 信賴할 수 있는 評價와 展望을 세울 수가 있다. 長期的 展望은 現時點에

서는 不確定일 수 밖에 없다.

(e) 가장 심각한 影響을 입은 諸國의 困難을 緩和하기 위한 特別措置에서는 모든 先進國 및 發展途上國이 그 開發의 水準, 經濟의 能力과 強度에 따라서 기여하는 것이 重要하다. 일부의 發展途上國이 自國의 困難이나 開發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보다 貧困한 諸國이 直面하고 있는 困難을 경감하기 위해서 具體的이고도 유용한 役割을 遂行할 의향을 보이고 있음은 주목할만하다. 다른 開發途上國의 困難을 緩和하기 위해서 최근 충분한 資源을 가진 일부의 發展途上國이 2國間 및 多國間에 여러가지 이니셔티브와 措置를 취하고 있으나 이것은 發展途上國의 公約의 반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f) 影響을 입은 諸國이 놓여 있는 現在의 困難을 극복하는 원조를 행하는 뒤에서 훨씬 큰 能力을 가진 先進國의 反應은 그 責任에 比例할 것이 아니면 안된다. 先進國에 의한 원조는 現在 얻을 수 있는 원조의 水準에 다시 부가하는 것으로 해야 할 것이다. 先進國은 發展途上國에 대한 財政援助에 관한 國際開發戰略의 目標 특히 公的 開發援助의 目標를 충족시키고 可能하면 이것을 넘어야 한다. 先進國은 또 가장 심각한 影響을 입은 諸國의 對外債務의 취소에 관해서 이것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影響을 받은 諸國에 간절하고도 신속하게 구제를 퍼는 方法인 것이다. 다시 債務凍結과 支拂計劃의 再調整에도 호의적 考慮를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現在의 危機를 惡化시키는 것과 같은 自損行爲를 工業國이 취하는 일이 없도록 現在의 事態를 이끌어 가야 한다. 이란 황제폐하와 와리 부메디엔 알제리인민민주공화

국 大統領閣下の 建設的 提案을 상기하면서

1. 가장 심각한 影響을 받은 諸國이 당면의 困難을 극복하고 自立的 經濟開發을 達成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期間, 적어도 第2次 開發의 10年の 마지막까지 緊急한 問題로 이들 諸國에 緊急救濟와 開發援助를 주는 特別計劃의 발족을 決定한다.

2. 特別計劃의 第1段階로서 今後 12個月間の 필요물자 수입의 維持를 目標로 하고 전 c항에 定義된 가장 심각한 影響을 받는 諸國에 시의를 得한 구원을 펴기 위한 緊急活動을 發足시키도록 事務總長에 要請하고 그리고, 일부의 나라가 이미 표명했거나 이미 着手한 援助의 公約 및 措置를 考慮해서 工業國 및 其他의 潛在的 支出能力이 1974年6月15日까지 2國間 또는 多國間的 經路를 통해서 提供되는 緊急援助에의 支出 및 그 의도를 분명히 하도록 要請할 것을 決定하고 다시 事務總長에 대해서 第57次 經濟社會理事會를 통해서 第29次 總會에 緊急活動의 進行狀況을 報告하도록 要請한다.

3. 工業國과 其他의 潛在的 支出能力國에 대해서 가장 심각한 影響을 입은 諸國에 대해 즉시 구제하고 援助를 펴도록 호소하나 이것은 이들 影響을 받은 諸國의 필요에 應하는 最重要事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들 援助는 既存의 援助水準에 다시 추가한 것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서 극히 빨리 可能한 限 증여로 해서 그것이 不可能한 경우는 될 수 있는대로 緩和된 條件으로 주어져야 할 것이다. 支拂과 이에 관련하는 수속과 條件은 例外的

事態를 反映한 것이 아니면 안된다. 援助는 既設 후는 新設豫定の 機關, 施設을 包含한 2 個國 또는 多國間的 經路를 동역시 공인된 다. 特別措置는 이하를 包含하는 것으로 한다.

(a) 必要物資, 商品의 補助金 및 그 供給確保를 包含한 特惠 條件의 關한 特別決定

(b) 必要物資, 商品輸入의 全部 또는 一部의 支拂 延期

(c) 開發途上國의 輸出의 不利한 影響을 免지키 않을 것을 念

頭의 두고 公의 및 自國通貨의 以한 年分의 食糧 援助를 包含한

物資援助

(d) 供給側의 以한 緩和된 條件의 長期借款

(e) 양보적 條件의 以한 長期的 財政援助

(f) 양보적 條件의 以한 國際通貨基金 特別機關의 以한 引出

(g) 가장 심각한 影響을 受는 諸國의 財政上의 추가요청을 考

慮에 及고 特別引出權의 創設과 開發援助의 進業을 確立할 것.

(h) 가장 심각한 影響을 受는 諸國의 商業條件으로 借入하고

있는 資金의 利子에 對한 2 國間 또는 多國間的 補助金

(i) 影響을 受는 諸國의 工業化의 促進을 爲한 以한 以한 多國間的 提供

條件의 以한 資本財, 技術援助의 提供

(j) 債務의 取消, 凍結 및 支拂計劃의 再調整의 關한 協定을

맺기 爲한 事例別 債務再交渉

(k) 工業開發計劃에 對한 以한 以한 條件의 以한 投資

(l) 特別 內陸間의 輸送, 運搬의 通商經費의 以한 補助金

4. 가장 심각한 影響을 受는 諸國의 重大하고 緊急한 困難을

緩和하는 가운데 중대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서 各國의 要請에 따라 그들 諸國의 債務의 取消, 凍結 및 再調整을 호의적으로 考慮하도록 先進國에 호소한다.

5. 特別計劃의 일환으로 工業國 및 其他의 潛在的 支出能力國으로부터의 자발적 기금에 기하여 緊急救濟와 開發援助를 提供하기 위한 特別基金을 UN의 주재하에 設立할 것을 決定한다. 이 基金은 늦어도 1975年 1月 1日에는 발족하는 것으로 한다.

6. 特別基金의 目的 내지 委託條件에 유의해서 적절한 協議後에 總會議長이 指名하는 36個國으로 構成되는 特別計劃에 관한 임시 위원회를 設置한다.

(a) 특히 이하와 같은 必要性을 考慮하면서 特別基金의 範圍, 機構, 活動樣式 등에 대한 勸告를 作成할 것.

(i) 管理基金에의 公正한 代表

(ii) 그 資金에의 公正한 分配

(iii) 既存 國際機構의 역무와 施設의 充分한 活用

(iv) UN 資本 開發基金과 特別基金의 運營을 融合시킬 可能性

(v) 2國間 혹은 多國間에 취해지는 여러가지 措置를 監視할 中央統合機構. 다시 이 目的을 위해서 이란으로부터 提出된 것(文書 A/AL/166/L15) 및 第 2208次 정례회의에서 있었던 것. 아울러 이에 관한 論評을 包含시켜 第 6次 特別總會에서 提出되었던 여러 意見과 提案을 念頭에 두고 또 緊急事態가 지난 뒤 通常의 開發援助用 代替的 經路를 設定하기 위해 特別基金의 利用可能性도 考慮에 넣는다.

(b) 特別基金의 活動이 開始될 때까지의 期間中 가장 심각한 影響을 입은 諸國을 援助하기 위해 2國間 혹은 多國間에서 행해지는 여러 措置를 統合할 것.

(c) 關係當事國과 UN體制의 UN機關에 의해서 提供되는 情報에 기하여 이하에 관한 廣範圍한 評價를 準備한다.

(i) 가장 심각한 影響을 입은 諸國이 直面한 困難의 程度

(ii) 이들 諸國이 基本的으로 必要로 하고 있는 商品의 種類와 量

(iii) 財政援助의 必要性

(iv) 특히 技術에의 接近을 包含한 技術援助의 要件

7. UN事務總長, 國際貿易開發會議事務局長, 國際副興開發銀行總裁, 國際通貨基金事務理事, UN開發計劃理事長 및 其他 國際機關의 長에 대해 임시위원회가 전체 第6項에서 주어진 機能을 이룩할 수 있도록 이것을 支援하고 特別基金의 運營面에서 適切히 이에 조력을 주도록 要請한다.

8. 國際通貨基金에 대해 이하에 대한 決定을 서두르도록 要請한다.

(a) 가장 심각한 影響을 입은 諸國이 有利한 條件으로 參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擴大한 特別制度를 設立할 것.

(b) 特別引出權의 創出. 아울러 特別引出權의 配分과 開發融資의 連繫의 早期 確立.

(c) 開發途上國의 理解와 특히 가장 심각한 影響을 입은 諸國의 財政援助 追加의 必要에 留意하고 借款의 擴大, 加盟國이 차입

한 商業資金의 利子補及을 피하는 새로운 特別制度를 設立하고 發
足시킬 것.

9. 世界銀行그룹과 國際通貨基金에 대해 緊急救濟金 出資政府가
必要로 하는 制度上·수속상의 節次를 變更하여 그 資金이 迅速히
輸入國에 流入되게 하기 위해서 그 管理, 財政, 技術上의 役무를
各國 政府에 提供하도록 要請한다.

10. 特別計劃의 틀안에서 要請되는 追加援助에는 특히 國家單位
로 緊急에 應해서 必要한 措置를 請求하도록 UN 開發計劃에 勸告
한다.

11. 임시위원회에 대해 그 報告와 勸告를 第57回 經濟社會理
事會에 提出하도록 要請하고 經濟社會理事會가 이 報告를 檢討한
뒤에 第29次 總會에 적당한 報告書를 提出토록 要請한다.

12. 新國際經濟秩序의 틀안에서 가장 심각한 影響을 받는 諸國
에 대한 特別措置의 問題를 第29次 總會에서 最重要 議提로 檢
討할 것을 決定한다.

5. 國家의 經濟的 權利義務憲章

(1974 年 12 月 12 日 贊成 120, 反對 6, 棄數 10 으로 UN 決議 3281 (XXIX) 로 採擇되었다. 여기서는 總會決議前文만 除外하고 憲章 全文을 번역했다.)

前 文

UN 總會는 UN 의 基本目的, 특히 國際平和와 安全의 維持, 諸國家間的 友好的인 諸關係의 開發 및 經濟·社會的 分野에 있어서 國際問題解決을 위한 國際協調의 達成을 再確認하고, 이러한 諸分野에 있어서 國際協調를 強化할 必要性을 確認하고, 또 開發을 위한 國際協調의 必要性을 再確認하고, 經濟·社會體制와는 關係없이, 모든 國家間的 公正, 主權平等, 相互依存, 共同利益 및 協調에 입각한 新國際經濟秩序의 確立을 促進하는 것이 本 憲章의 基本目的임을 宣言하면서, 다음과 같은 條件의 造成에 寄與할 것을 念願한다.

(a) 모든 國家間的 보다 폭넓은 繁榮과 모든 國民을 위한 보다 높은 生活水準의 達成

(b) 國際社會全體에서 모든 國家, 특히 發展途上國의 經濟的, 社會的 進步의 促進

(c) 本 憲章의 諸規定을 自發적으로 實施코자 하는 모든 平和愛好國을 위해 相互 利益과 平等한 惠澤을 基礎로 하여 政治, 經濟, 社會體制에 關係없이 經濟, 貿易, 科學 및 技術分野에 있어서 協調의 獎勵

(d) 發展途上國의 經濟開發過程에 있어서 主要障礙의 除去

(e) 發展途上國과 先進國間의 經濟的 隔差를 縮小하기 위한 發展途上國의 經濟成長促進

(f) 環境의 保護, 保存 및 改善

다음 事項을 통하여 公正하고 平等한 經濟社會秩序를 確立하고 維持할 必要性을 留意한다.

(a) 보다 合理的이고 平等한 國際經濟關係의 達成 및 世界經濟의 構造的 變化的 鼓吹

(b) 모든 國家間의 貿易擴大 및 經濟協調의 強化를 위한 諸般條件의 創出

(c) 發展途上國의 經濟的 獨立의 強化

(d) 發展途上國의 開發에 있어서 意見의 不一致와 그 特殊한 必要性을 考慮한 國際經濟關係의 確立 및 促進

各國의 主權平等을 嚴格히 尊重하고 國際社會全體의 協調를 통해 특히 發展途上國의 發展을 위한 集團經濟保障을 促進할 것을 決議하면서, 國際經濟問題에 관한 共同考慮와 協調的 行動에 입각한 眞正한 國際間의 協力은 世界 모든 地域의 公正하고도 合理的인 開發을 達就하려는 國際社會의 共通된 念願을 이룩하는 데 必須不可缺의 要素임을 考慮하고, 社會經濟體制의 差異에 關係없이, 모든 國家間의 正常的인 經濟關係의 維持와 모든 國家利益을 위해 平和를 확고히 하기 위한 手段으로서, 國際經濟協調機構의 強化와 아울러, 모든 國民의 權利를 충분히 尊重할 수 있는 적절한 條件을 確保해야 할 重要性을 強調한다.

모든 國家의 主權平等, 互惠의이고 公平한 利益 및 諸國家利益의 密接한 相互關係에 입각하여 國際經濟關係制度를 發展시켜야 할 必

要性を 確立하고, 모든 國家의 開發을 위한 責任이 주로 當事國에 있지만, 各國의 開發目標를 충분히 達成하기 위해서는 이에 隨伴되어야 할 効率的인 國際協調가 本質的인 要素라는 것을 再強調하면서, 諸國際經濟制度의 實質的인 改善을 促進할 緊急한 必要性을 굳게 確信하고, 現 諸國家의 經濟的 權利義務憲章을 엄숙히 採擇한다.

第 1 章 國際經濟關係의 基礎

諸國家間的 經濟, 政治 및 기타의 諸般關係는 특히 다음 原則에 의해 規制된다.

- (a) 諸國家의 主權, 領土保全 및 政治的 獨立
- (b) 모든 國家의 主權平等
- (c) 不可侵
- (d) 不干涉
- (e) 互惠的이고 公平한 利益
- (f) 平和共存
- (g) 諸國民의 平等權과 自決權
- (h) 紛爭의 平和的 解決
- (i) 武力에 의해 惹起되거나 또 國家에게서 그의 正常的인 發展에 必要한 自然手段을 剝奪하는 不正의 除去
- (j) 國際義務의 誠實한 履行
- (k) 人權과 基本的 自由에 대한 尊重
- (l) 霸權 및 勢力圈擴大를 위한 어떠한 試圖를 拋棄
- (m) 國際的 社會正義의 促進
- (n) 開發을 위한 國際協調

(o) 上記한 諸原則의 범주내에서의 內陸國의 海洋에 대한 出入의 自由로운 接近

第 2 章 諸國의 經濟的 權利義務

第 1 條 모든 國家는 어떠한 形態이든 外部로부터 干涉, 強制 내지 威脅을 받음이 없이, 그 國民의 意思에 따라 그 政治的, 社會的 및 文化的 體制와 아울러 經濟體制를 選擇할 絕對的이고 讓渡할 수 없는 權利를 가진다.

第 2 條 (1) 모든 國家는 그의 모든 富, 天然資源 및 經濟活動에 대해 所有, 使用 및 處分을 包含하는 完全한 永久主權을 가지며, 또한 이를 自由로이 行使한다.

(2) 各國은 다음의 權利를 가진다.

(a) 自國의 法令 및 規則에 따라, 또 自國의 國家的 目的과 政策의 優先順位에 따라 自國의 國家管轄權의 範圍 내에서 外國投資을 規制하고 또 이에 대한 權限을 行使할 수 있다. 어떠한 國家도 外國投資에 대해 特權을 強要 당하지 않는다.

(b) 自國의 管轄權의 範圍 내에서 多國籍企業의 活動을 規制, 監督하고, 또한 그와 같은 活動이 그 國家의 法令, 規律 및 規制에 따르며, 또 自國의 經濟·社會政策에 合致하도록 保障하는 措置를 취할 수 있다. 多國籍企業은 駐在國의 內政에 干涉해서는 안된다. 모든 國家는 그 國家의 主權을 충분히 尊重해야 하며, 本 項에 정한 權利를 行使하는權에 있어서 다른 國家와 協調해야 한다.

(c) 外國人所有資産을 國有化하거나, 收用 내지 移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그와 같은 措置를 취하는 國家는 적절한 法令, 規則 및 그 國家의 實情을 감안하여 적당한 補償을 해야 한다. 補償問題로 인해 紛爭이 發生했을 경우에는 國有化를 행한 國家의 國內法下에서 그 國家의 法庭에 의해 解決되어야 한다. 단, 關係國이 諸國家間的 主權平等의 基礎 위에서, 또 手段選擇의 自由原則에 따라, 기타의 平和的 方法으로 해결할 것을 相互 自由롭게 合意했을 경우에는 此項에 不在한다.

第 3 條 2個國 또는 그 이상의 國家가 共有하는 天然資源을 開發함에 있어서, 각 國家는 他國家의 正當한 利益을 侵害함이 없이, 그와 같은 資源이 最適使用을 위해 情報 및 事前 協議制度에 입각하여 協調하지 않으면 안된다.

第 4 條 모든 國家는 政治, 經濟 및 社會體制의 어떠한 差異에도 關係없이, 國際貿易 및 기타 經濟協調形態를 행할 權利를 가진다. 여하한 國家도 그와 같은 差異로 인해 어떠한 種類의 差別도 받지 않는다. 國際貿易 및 기타 經濟協調形態를 모색함에 있어서 모든 國家는 自由로이 그의 對外經濟關係機構形態를 選擇할 수 있으며, 또한 國際的 義務와 國際協調의 必要性에 따라 雙務 및 多邊協定에 加入할 수 있다.

第 5 條 모든 國家는 開發에 대한 安定된 財政支援을 獲得하여, 그들의 國民經濟를 發展시키고 또한 世界經濟의 接續的인 成長에 助力하며, 특히 發展途上國의 開發을 가속화하는 目的을 追求함에 있어서, 1次產品生産機構에 參加할 權利를 가진다. 마찬가지로, 모든 國家는 이러한 權利를 制限하는 經濟的, 政治的 對應措置를 참가함으로써 그 權利를 尊重할 義務를 가진다.

第 6 條 특히, 諸協定에 의해서 또 必要的인 경우, 長期的인 多邊商品協定の 締結에 의해서, 그리고 生産國과 消費國의 利益을 考慮하여 國際商品貿易의 發展에 寄與하는 것은 모든 國家의 義務이다. 모든 國家는 安定되고 採算이 맞는 公平한 價格으로 去來되는 모든 商品의 正規的인 流通 및 接近을 促進하며, 그리하여 특히 發展途上國의 利益을 감안한 世界經濟의 均衡된 發展에 寄與할 責任을 共同으로 가지고 있다.

第 7 條 모든 國家는 그 國民의 經濟的, 社會的 및 文化的 發展을 促進할 第 1 次的인 責任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위해 各 國家는 그 開發의 手段과 目標을 選擇하고, 그의 資源을 動員·利用하며 進步的인 經濟·社會的인 改革을 實施하여 그 國民이 開發過程과 惠澤에 충분히 參與할 수 있도록 確保할 수 있는 權利와 責任을 가지고 있다. 모든 國家는 個別的 및 集團的으로 그와 같은 動員과 利用을 妨害하는 障害要素를 除去하기 위해 協力할 義務를 가지고 있다.

第 8 條 諸國家는 보다 合理的이고 公平한 國際經濟關係를 促進하고 모든 國家 특히 發展途上國의 必要性 및 利益과 調和되어 均衡된 世界經濟關係로 構造的 變革을 鼓吹하도록 協調해야 하며, 또한 이를 위해 적절한 措置를 취해야 한다.

第 9 條 모든 國家는 經濟, 社會, 文化, 科學 및 技術의 諸分野에 있어서, 世界全體 특히 發展途上國의 經濟的, 社會的 進步를 促進하기 위하여 協調해야 할 責任이 있다.

第 10 條 모든 國家는 法律上 平等하며, 또한 國際社會의 平等的한 構成員으로서 世界的인 經濟, 財政 및 金融問題를, 특히 現代 및

改革 중인 規則에 따라 적절한 國際機構를 통해 解決하는 國際政策過程에 充分하고도 効率的으로 參加하여, 그 結果로 인한 利益을 公平하게 分配받을 權利를 가지고 있다.

第 11 條 모든 國家는 모든 國家, 특히 發展途上國의 一般的인 經濟的 進歩를 자극하는 諸措置를 實施하는 데 諸國際機構의 能率을 強化하고, 또 계속 改善하는 데 協調해야 하며, 또한 따라서 적절한 경우 이러한 國際機構들을 변모하고 있는 國際經濟協力の 要求에 適應하도록 協調해야 한다.

第 12 條 (1) 諸國家는 關係當事國과의 合意에 따라 그들의 經濟·社會的 發展을 追求하는 데 있어서 小地域的, 地域的 및 地域間 協調에 參加할 權利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協調를 행하는 모든 國家는 그들이 所屬해 있는 諸集團의 政策이 本 憲章의 諸條項에 一致하도록 하고, 또한 外部指向的으로 國際義務 및 國際經濟協調의 必要성과 一致되게 하며, 그리고 第 3 國, 특히 發展途上國의 正當한 利益을 충분히 尊重하도록 措置할 義務가 있다.

(2) 關係諸國은 本 憲章의 범위 내에 있는 諸問題에 관해 特定한 權限을 移讓했거나 또는 移讓할 수 있는 諸集團의 경우에 있어서 本 憲章의 諸條項은 上記한 諸問題에 관해 그와 같은 集團의 構成員으로서 그러한 國家의 責任에 따라 그러한 集團에도 適用된다. 그러한 諸國家들은 그 集團이 本 憲章의 諸條項을 遵守하도록 協力한다.

第 13 條 (1) 모든 國家는 그의 經濟的, 社會的 開發을 促進하기 위해 科學, 技術上的 向上 및 發展의 惠澤을 받을 權利가 있다.

(2) 모든 國家는 특히 技術의 所有者, 供給者 및 受益者의 權利,

義務를 포함한 모든 正當한 利益을 적절히 配慮하여, 國際的인 科學, 技術協力 및 技術移轉을 促進해야 한다. 특별히 모든 國家는 發展途上國의 經濟와 그 必要性에 相應한 形式과 節次에 따라 發展途上國의 利益을 위해 近代科學, 技術의 成就에 대한 이들 諸國의 接近, 技術移轉 및 固有技術의 創造를 促進해야 한다.

(3) 따라서, 先進國은 發展途上國의 經濟를 擴大하고 轉換시키는데 돕도록 發展途上國의 科學, 技術의 下部構造 및 科學的 研究와 技術活動을 確立, 強化, 發展시키는 데에 協調해야 한다.

(4) 모든 國家는 發展途上國의 利益을 충분히 考慮하여, 國際적으로 認定된 指針 또는 規則을 더욱 發展시키기 위해 探究하는데 協力해야 한다.

第 14 條 모든 國家는 世界貿易의 擴大와 自由化 그리고 모든 國民, 특히 發展途上國 國民의 福祉와 生活水準의 改善을 促進하는데 協力할 義務가 있다. 따라서, 모든 國家는 특히 貿易障害의 漸進的인 撤廢와 世界貿易管理를 위한 國際構造를 改善하는데 協調해야 하며, 또한 이를 위해 發展途上國의 特殊한 貿易問題를 考慮하여, 모든 國家의 貿易問題를 公平한 方法으로 解決하도록 對等한 努力을 해야 한다. 이와 關聯하여 諸國家는 發展途上國의 外貨收入의 實質的인 增大, 그 輸出의 多樣化, 開發의 必要性을 감안한 그 貿易成長率의 促進, 世界貿易擴大에 이들 諸國이 參與할 수 있는 可能性의 改善, 그리고 可能한 最大의 措置로서 發展途上國에 有利한 商品의 市場接近條件의 實質的인 改善과 必要한 경우, 1次產品의 安定되고 公平하며 有利한 價格達成을 위한 措置를 통해서 이러한 貿易擴大로 인한 利益分配에 있어서 發展途

上國에 보다 有利한 均衡을 達成하도록, 發展途上國이 國際貿易에 있어서 追加的인 利益을 確保하는데 目的을 둔 諸措置를 취해야 한다.

第 15 條 모든 國家는 効率的인 國際管理下에서 一般完全軍縮의 達成을 促進하고, 또한 効率的인 軍縮措置로 解放된 資源을, 그 相當한 部分은 發展途上國의 開發을 위한 追加的인 必要手段으로서 配分하여, 諸國家의 經濟社會開發에 利用할 義務가 있다.

第 16 條 (1) 모든 國家는 開發을 위한 前提條件으로서, 植民主義, 人種隔離政策 (apartheid), 人種差別政策, 新植民主義, 모든 形態의 外侵, 占領, 支配 및 이로 인한 經濟的, 社會的 結果를 個別的 結果를 個別的 및 集團的으로 除去할 權利와 義務가 있다. 그와 같은 強權政策을 實施한 國家는 그로 인해 影響을 받은 諸國家, 領土 및 國民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 諸國, 領土 및 國民의 天然 및 기타 모든 資源의 搾取, 枯渴 및 損害에 대해서 返還 및 充分한 補償을 행할 經濟的 責任이 있다. 그들에 대한 援助 擴大는 모든 國家의 義務이다.

(2) 어떠한 國家도 武力에 의해 占領된 領土의 解放에 障礙가 되는 投資를 促進 또는 獎勵할 權限은 없다.

第 17 條 開發을 위한 國際協調는 모든 國家의 共通된 目的이며 權利이다. 모든 國家는 發展途上國의 開發의 必要성과 그 目標에 따라, 諸國家의 主權平等을 엄격히 尊重하고 主權을 侵害함이 없이 發展途上國에 有利한 對外的 條件을 賦與하고, 또 積極的인 援助를 擴大함으로써 그들의 經濟社會開發을 促進하는 開發途上國의 努力에 協調해야 한다.

第 18 條 先進國은 本 主題에 입각하여 採擇된 적절한 合意事項 및 決定事項에 따라 管轄國際機構의 範疇 내에서 發展途上國에 대한 一般非互惠的 및 無差別的 特惠關稅制度를 擴大, 改善해야 한다.

先進國은 發展途上國의 貿易 및 開發을 充足시키기 위해 이러한 特惠關稅가 가능하고 적절한 領域에서 또 特殊하고 有利한 待遇를 提供할 수 있는 側面에 있어서, 기타 相異한 措置를 採擇하는 데에 慎重한 考慮를 해야 한다. 國際經濟關係를 處理함에 있어서 先進國은 一般特惠關稅 및 發展途上國에 有利하게 合意된 기타의 相異한 措置에 의해 促進됨으로써, 發展途上國의 國民經濟 發展에 否定的인 影響을 주는 措置를 回避하도록 努力해야 한다.

第 19 條 發展途上國의 經濟成長을 促進하고, 先進國과 發展途上國 間의 經濟的 隔差를 縮小시키기 위해, 先進國은 可能한 경우, 國際 經濟協力分野에서 發展途上國에게 一般特惠의 非互惠的이고 無差別 的인 待遇를 許諾해야 한다.

第 20 條 發展途上國은 그들의 全般的인 貿易을 增大하려는 努力에 있어서, 先進市場經濟國에게 通常적으로 許諾했던 貿易條件보다 不利하지 않은 條件을 社會主義諸國에 賦與함으로써, 그들과의 貿易 擴大可能性에 당연히 留意해야 한다.

第 21 條 發展途上國은 그들 相互間의 貿易擴大를 促進하도록 努力 해야 하며, 또한 이를 위해 適用possible한 現行 및 改善중인 諸國 際協定の 條項 및 節次에 따라, 이러한 諸協定이 一般貿易自由化 와 擴大를 沮害하지 않는다면, 先進國에 그와 같은 特惠를 擴大 하도록 強要됨이 없이 기타 發展途上國에게 貿易特惠를 賦與할 수 있다.

第 22 條 (1) 모든 國家는 發展途上國의 經濟的, 社會的 開發을 促進 하려는 努力을 強化하기 爲해, 關係諸國에 依해 취해진 어떠한 義務와 公約도 考慮하면서, 모든 資金源으로부터 開發途上國에 增加된 國際的인 資源流通量을 促進함으로써, 一般的으로 認定되었거나 또는 相互合意된 發展途上國의 開發必要성과 目標에 副應해야 한다.

(2) 이와 關聯하여 前記한 諸目的 및 目標에 따라, 또 이 점에 서 취해진 어떠한 義務와 公約도 考慮하여, 先進國은 發展途上國에 政府資金源으로부터 純財政流通量을 增加시키고, 그 條件을 改善하도록 努力해야 한다.

(3) 開發援助資源의 流通量에는 經濟技術援助가 包含되어야 한다.

第 23 條 發展途上國 自身の 資源을 效率的으로 動員하기 爲해, 發展途上國은 그들의 經濟, 社會開發을 促進하도록 經濟協力を 強化하고 그들 相互間의 貿易을 擴大해야 한다. 모든 國家, 특히 先進國은 個別的으로 또 그들이 構成員인 管轄國際機構를 통해서, 適切하고도 效果的인 支援과 協力を 提供해야 한다.

第 24 條 모든 國家는 他國의 利益을 考慮하는 方式으로 相互經濟關係를 處理할 義務가 있다. 특별히, 모든 國家는 發展途上國의 利益을 沮害하는 것을 回避해야 한다.

第 25 條 世界經濟開發을 促進시킴에 있어서 國際社會, 특히 先進國은 後發發展途上國, 內陸發展途上國 및 島嶼發展途上國들의 특별한 어려움을 克服하고, 그들의 經濟·社會開發에 寄與하도록 돕기 爲해서, 이들 國家의 특수한 必要성과 諸問題에 대해 各별히 注意해야 한다.

第 26 條 모든 國家는 經濟的, 政治的, 社會的, 文化的 體制의 差異에 關係없이 寬容과 平和속에서 共存하며, 또한 經濟的, 社會的으로 相異한 體制를 가지고 있는 國家間에도 貿易을 圓滑히 促進할 義務가 있다. 國際貿易은 互惠, 公平한 利益 및 相互最惠國待遇에 입각하여, 發展途上國에 有利한 一般 無差別의 및 非互惠의 特惠를 沮害함이 없이 行해져야 한다.

第 27 條 (1) 모든 各國은 世界貿易外去來의 惠澤을 충분히 享有하고, 또 그와 같은 去來의 擴大에 關與할 權利가 있다.

(2) 効率的이고 互惠的이며 公平한 利益에 입각한 世界貿易外去來는 世界經濟의 擴大를 促進함으로써, 모든 國家의 共同目標이다. 世界貿易外去來에 있어서 發展途上國의 役割은 發展途上國의 특수한 必要性을 各別히 留意하여, 上記한 諸目標에 따라 高揚되고 強化되어야 한다.

(3) 모든 國家는 各發展途上國의 潛在力과 必要에 따라, 또한 上記한 諸目標에 一致하여 發展途上國이 貿易外去來에서 外換을 獲得하는 그들의 能力을 增大시키려는 努力에 發展途上國과 協調해야 한다.

第 28 條 모든 國家는 生産國으로서 採算이 맞고 또 生産者와 消費者에게도 公平한 方式으로, 正當하고 公平한 交易條件을 促進시키도록, 發展途上國의 輸入價格과 關聯하여 輸出價格을 調整하는데 協調할 義務가 있다.

第 3 章 國際共同體嚮 指向한 共同責任

第 29 條 國家管轄權 밖의 海底, 海床 및 그의 下層土는 그 地域의 資源과 아울러 人類共同的 遺産이다. 1970年 12月 17日 第 25次 UN總會의 決議 2749에서 採擇된 原則에 입각하여, 모든 國家는 發展途上國의 특별한 利益과 必要性을 考慮하여, 當該地域의 探查 및 그 資源開發이 오직 平和的 目的을 위해서만이 實施되고, 또 거기서 얻어지는 利益이 모든 國家에게 公平하게 配分되는 것을 保證한다. 當該地域과 資源에 適用되고 또 그 規定을 實施할 적절한 國際機構를 包含한 國際制度는 全般的으로 合意된 普遍的 性格의 國際條約에 의해 設立된다.

第 30 條 現在와 未來의 世代를 위한 環境의 保護, 保存 및 強化는 모든 國家의 責任이다. 모든 國家는 이와 같은 責任에 따라 그들 自身の 環境 및 開發政策을 樹立토록 努力한다. 모든 國家의 環境政策은 發展途上國의 現在 및 將來의 發展潛在力을 高揚해야지, 惡影響을 미쳐서는 안된다. 모든 國家는 그들의 管轄 내지 支配下에서의 活動이 他國 내지 그의 管轄權外 領域의 環境을 沮害하지 않도록 保障할 責任이 있다. 모든 國家는 環境分野에서 國際規範과 規則을 發展시키는 데 協調해야 한다.

第 4 章 最終規定

第 31 條 모든 國家는 先進國의 福祉와 發展途上國의 成長 및 開發과의 間에 密接한 相互關係와 또한 國際社會全體의 繁榮이 그 構成員의 繁榮에 달려 있음을 당연히 考慮하여, 均衡있는 世界經

濟의 擴大에 寄與할 義務가 있다.

第 32 條 어떠한 國家도 他國의 主權行使를 從屬시키기 위해 經濟的, 政治的 및 기타의 어떤 形態의 強制措置를 使用하거나, 또는 그 利用을 獎勵해서는 안된다.

第 33 條 (1) 現憲章의 어떠한 것도 UN 憲章의 諸規定 또는 이에 의해서 취해진 措置를 損償하거나 侵害하는 것으로 解釋되어서는 안된다.

(2) 現憲章의 諸規定의 解釋 및 適用에 있어서 각 規定은 相互 關聯되어 있으며, 또한 기타 規定과 連結하여 解釋되어야 한다.

第 34 條 諸國의 經濟的 權利, 義務에 관한 憲章이라는 議題는 第 30 次 UN 總會와 그 이후 每 5 會期마다 議事日程에 上程된다. 이러한 方式으로 그 進陟狀況과 必要한 規定의 어떤 改善 및 追加事項을 包含하여, 本 憲章의 履行狀態를 體系的이고 綜合적으로 考察하고 또한 적절한 措置를 勸告한다. 이와 같은 檢討는 經濟的, 社會的, 法律的 및 現憲章의 基礎가 되고 또 目的이 되는 諸原則과 關聯된 其他 要因 등 모든 發展現狀을 考慮해야 한다.

6. Summary of Ocean Claims of the World's Nations (March, 1986)

(distances in nautical miles)

T Sea: Territorial Sea
 EFZ : Exclusive Fisheries Zone
 EEZ : Exclusive Economic Zone
 S : Special claim
 * : Defined by its bilateral maritime boundaries
 or by an equidistant line

STATES	T Sea	EFZ	EEZ
Albania	15	-	-
Algeria	12	-	-
Angola	20	200	-
Antigua and Barbuda	12	-	200
Argentina	200	-	-
Australia	3	200	-
Bahamas, The	3	200	-
Bahrain	3	-	-
Bangladesh	12	-	200
Barbados	12	-	200
Belgium	3	200*	-
Belize	3	-	-
Benin	200	-	-
Brazil	200	-	-
Brunel	12	200*	-
Bulgaria	12	-	-

STATES	T Sea	EFZ	EEZ
Burma	12	-	200
Cambodia	12	-	200
Cameroon	50	-	-
Canada	12	200	-
Cape Verde	12	-	200
Chile	3	200	-
China	12	-	-
Colombia	12	-	200
Comoros	12	-	200
Congo	200	-	-
Costa Rica	12	-	200
Cuba	12	-	200
Cyprus	12	-	-
Denmark	3	-	200
Djibouti	12	-	200
Dominica	12	-	200
Dominican Republic	6	-	200
Ecuador	200	-	-
Egypt	12	-	200
El Salvador	200	-	-
Equatorial Guinea	12	-	200
Ethiopia	12	-	-
Fiji	12	-	200

STATES	T Sea	EFZ	EEZ
Finland	4	12	-
France	12	-	200
Gabon	12	-	200
Gambia, The	200	-	-
German Democratic Republic	12	200*	-
Germany, Federal Republic of	3	200	-
Ghana	200	-	-
Greece	6	-	-
Grenada	12	-	200
Guatemala	12	-	200
Guinea	12	-	200
Guinea-Bissau	12	-	200
Guyana	12	200	-
Haiti	12	-	200
Honduras	12	-	200
Iceland	12	-	200
India	12	-	200
Indonesia	12	-	200
Iran (Islamic Republic of)	12	50*	-
Iraq	12	-	-
Ireland	3	200	-
Israel	6	-	-
Italy	12	-	-

STATES	T Sea	EFZ	EEZ
Ivory Coast	12	-	200
Jamaica	12	-	-
Japan	12/3	200	-
Jordan	3	-	-
Kenya	12	-	200
Kiribati	12	-	200
Korea, North	12	-	200
Korea, Republic of	12/3	12	-
Kuwait	12	-	-
Lebanon	12	-	-
Liberia	200	-	-
Libya	12	-	-
Madagascar	12	-	200
Malaysia	12	200	-
Maldives	S	S	S
Malta	12	25	-
Mauritania	70	-	200
Mauritius	12	-	200
Mexico	12	-	200
Monaco	12	-	-
Morocco	12	-	200
Mozambique	12	-	200
Nauru	12	-	200

STATES	T Sea	EFZ	EEZ
Netherlands	12	200	-
New Zealand	12	-	200
Nicaragua	200	-	-
Nigeria	30	-	200
Norway	4	-	200
Oman	12	-	200
Pakistan	12	-	200
Panama	200	-	-
Papua New Guinea	12	-	200
Peru	200	-	-
Philippines	S	-	200
Poland	12	200	-
Portugal	12	-	200
Qatar	3	-	B
Romania	12	-	-
St. Christopher and Nevis	12	-	200
Saint Lucia	12	-	200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12	-	200
Sao Tome and Principe	12	-	200
Saudi Arabia	12	-	-
Senegal	12	200	-
Seychelles	12	-	200
Sierra Leone	200	-	-

STATES	T Sea	EFZ	EEZ
Singapore	3	*	-
Solomon Island	12	-	200
Somalia	200	-	-
South Africa	12	200	-
Spain	12	-	200
Sri Lanka	12	-	200
Sudan	12	-	-
Suriname	12	-	200
Sweden	12	200	-
Syria	35	-	-
Tanzania	50	-	-
Thailand	12	-	200
Togo	30	-	200
Tonga	12	-	200
Trinidad and Tobago	12	200	-
Tunisia	12	-	-
Turkey	6/12	-	-
Tuvalu	12	-	200
(Ukrainian SSR)	12	-	200
United Arab Emirates	3/12	-	*
United Kingdom	3	200	-
Uruguay	200	-	-
United States of America	3	-	200

STATES	T Sea	EFZ	EEZ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12	-	200
Vanuatu	12	-	200
Venezuela	12	-	200
Viet Nam	12	-	200
Western Samoa	12	-	200
Yemen Arab Republic	12	-	200
Yemen, People's Democritor	12	-	-
Yugoslavia	12	-	-
Zaire	12	200	-

Source: Ocean Policy Dept., Korea Ocean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